

통합적 관점에서 본
가정법원 아동 사건 실무의 개선과제
- 사건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2025. 12.

장애인권법센터

통합적 관점에서 본
가정법원 아동 사건 실무의 개선과제
- 사건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본 연구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리걸임팩트 법제정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방법	5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
II.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1
1. 아동학대사건의 이해와 절차	13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17
3. 개선방안	33
III. 이혼재판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45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47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57
3. 개선방안	66
IV.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83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85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93
3. 개선방안	97

V. 소년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07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109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118
3. 개선방안	125
VI. 보론 : 미성년후견사건에서의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31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133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136
3. 개선방안	138
VII. 결론 및 향후과제	143
• 참고문헌	149
• 부 록	153
부록 1. 대전가정법원(2016),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	155
부록 2.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발동한 사례	167
부록 3.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예	168
부록 4. 미성년후견사무 보고서 양식	170
부록 5. 소년사건 집행상황 보고서	176
부록 6. 보건복지부(202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178
부록 7.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183
부록 8. 안원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190
부록 9. 보고서에 대한 간담회 영상 큐알코드	297

〈표 1〉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1	17
〈표 2〉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2	18
〈표 3〉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21
〈표 4〉 보호조치 유형별 피해아동 상황	24
〈표 5〉 법원별 가사 조사관 현황	61
〈표 6〉 영국의 아동 면접교섭센터 지원 서비스	71
〈표 7〉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 보호시설	91

[그림 1]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개입	14
[그림 2]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감독	16
[그림 3] 현재 이혼재판의 흐름도	57
[그림 4] 면접교섭센터 이용 절차	65
[그림 5]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흐름도	85
[그림 6] 소년사건 절차 흐름도	11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연구의 배경

현재 법체계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피해 아동과 소년범으로 이분화하여 아동 자체에 대한 분리와 보호조치를 분절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아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보호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아동들은 원가정 보호원칙에 반하여 시설로 분리되거나 소년원에 격리되는 경우가 많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장 전문적이면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가정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사후적 기록검토 및 결정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표는 현행 가정법원 제도의 아동에 대한 법적 개입 권한 및 한계를 살살이 분석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제안을 수립하고 아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통합적 관점’이라 함은 ‘하나의 가정에 대한 모든 시안을 한 법원에서 일괄처리한다’는 제도형 통합의 구호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다루는 각기 다른 아동 관련 절차(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보호) 속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해야 할 아동 중심의 원칙과 실무기준을 사건별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규범적·실무적 통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동보호형 가정법원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아동은 다양한 삶의 문제로 인해 법원과 관계를 맺게 된다. 특정 소년범의 강력사건의 경우 형사법원을 만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이 가장 많이 접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을 통해 부모의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및 면접교섭권의 결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러 명령과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은 위기상황의 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가정법원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은 이혼 과정에서의 객체,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범죄의 가해자, 후견인이 필요한 고립상태의 존재로 단순히 분류될 뿐이다. 한편 가정법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아동보호 및 가정회복의 역할을 하고자 하여도¹⁾ 현행 법률은 그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고 사실상 주도적 역할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분절적인 법체계의 문제는 수차례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가정법원²⁾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형 법원 제도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과 가족 관련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체계와 운영 방식은 미국과 차이가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직접적 도입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³⁾. 따라서, 아동을 위한 가정법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모든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가정법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하여 절차 안의 아동 인권 신장을 위한 개선점 마련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가정법원이 다루는 개별 절차의 목적과 특징을 존중하면서도,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이 모든 사건유형에 보다 더 잘 투영되도록 하는 실무·법제의 연결조직을 설계하고자 함이다. 특히, 실제 구체적인 입법안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하며, 개정이 필요한

- 1) 관련 연구로,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안문희(2019),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안문희(2018),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등
- 2) 주로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가정법원”이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이 급증하고, 여러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가족(이른바 ‘단골손님’)이 늘어나면서 심판대상을 ‘개별 법률문제’가 아닌 ‘가족 그 자체’로 보고 모든 가정문제에 대하여 한 재판부에 포괄적인 관할권을 부여한 법원을 말한다[한 가족에 한명의 판사(one family, one judge)].
- 3) 2022년에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발표된 “통합가정법원”의 모델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한편 아동학대, 가정폭력, 연인폭력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사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의미하였다. 통합가정법원 신설...‘가사전문 조사관 확충’ 필수적(2022. 7. 7.), 법률신문

각 법률별로 유기적 연결 및 법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개정 제언을 마련한다.

첫째, 아동의 의견을 법원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 제출 권한을 의무화. 아동 자신이 겪는 상황과 문제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 제시.

둘째, 통합가정법원 제도 도입의 한계를 인식하는 전제에서, 현행 법체계 안에서 통합형 가정법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의 열개를 마련. 이를 통해 아동 및 가족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깊은 조사를 바탕으로 단일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셋째, 법률 개정 시 아동복지법, 가사소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관련 법령을 조정하여 아동 보호에 대한 일관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아동을 단순한 피해자나 객체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동 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가정법원의 실무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정성적·정량적 연구기법을 병행하였으며, 국내외 제도 비교, 사례 분석, 판례 검토,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 실증적 데이터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아동 보호에 대한 실질적 가정법원의 법적 개입 기준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문헌연구

(1) 선행연구 검토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와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역할 재고 측면의 연구로서, 안문희(2019)는, 미국 통합가정법원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가족법 사건 해결을 위한 팀(team)제 운용, 법원의 후견복지서비스 제공, 외부기관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의 도입을 제하였고,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통합가정법원의 정책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개시를 활성화 하고,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에 학대 피해자에게 개입이

가능한 조항을 넣도록 하며,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조의 보호위탁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권재문(2012)는 미국의 통합가정법원과 같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과 삼권분립 원칙, 적법절차 원칙과의 긴장관계 등에 비추어 타당한지 의문이며, 가정법원 기능의 지나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되, 외부의 별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22)은, 최근에 들어 전통적인 법 적용 방식으로는 가족들이 직면하는 문제(소년비행, 학대, 가정폭력 등)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해결법원 또는 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법원이 ‘국친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절차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후까지 다양한 국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법원의 복지적 기능의 확대는 지역간 법률서비스 질에서 큰 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를 지원하는 전담지원기구를 개별 가정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2021)는,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감독업무를 법원 외의 외부기관에 이관 또는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은,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연계가 주요하다고 보고, 외부기관 연계와 연계 담당자 운영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외부기관 대상으로 한 연수, 교육 평가의 표준화, 가정법원 외부기관 협의체 설립을 통한 서비스 인증평가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상용(2008)은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로서 위기에 처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재구성을 돕는 데 있다고 하면서,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가정법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한편으로, 아동이 대상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독일 아동청이 아동의 복리를 촉진하고 자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항상 개입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상용(2013)}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에 있어 주요역할을 하는 가사조사관에 대한 연구로서, 안문희(2018)는,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있어 조사관의 선발 및 조직 체계의 개선, 지역단위의 순환보직 및 신규채용자 단독배치 금지, 조사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활용, 가사조사기간의 효율적 이용방안 등을 제안하고, 가정법원 조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관 채용

후 실시되는 신규 연수 및 임용 후 연수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하여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전문화를 제안하였다. 송실대학교 산학협력단(2023)은, 한국형 가정법원 조사관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가사사건에서 고갈등 사건 등 사법적 관여 에너지가 집중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가정법원 조사관이 관여하는 서비스 양과 질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의 증가 추세를 예상하였다. 이혼과 이혼 가정의 문제, 성년후견 관련 노인문제, 소년비행 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 등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질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관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사관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의견 청취 등 아동의 복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직무를 추가 또는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 보호사건 별로 가정법원의 역할에 있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7)은, 촉법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재범 위험성, 사건 경중을 고려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촉법소년을 조기에 절차에서 해방시키고, 소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등 효율화 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초기에 법원과 경찰의 협력관계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8)은, 2017. 3. 입법예고 되었던 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중 절차보조인에 대한 운영방안에 있어,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능력이 출중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발하고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허민숙(2020)은,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의 복리' 판단에 가정폭력을 명시하고,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대상자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하고,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시 부부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아동보호형 가정법원과 관련된 기존 법령과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수의 법령, 판례와 결정문, 정책 문서, 학술 논문, 사례 연구,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는 현행 법체계의 장단점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법원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구축된 이론적 기틀은 후속 연구의 방향성과 심화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 비교법적 연구

본 연구는 국내 가정법원의 아동 관련 실무를 보다 아동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외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 및 실무 운영 사례를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분석 대상국으로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미국 일부 주에서 운영 중인 ‘One Family, One Judge’ 원칙에 따른 통합형 가정법원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복지, 가정폭력, 소년사건 등 다양한 아동 관련 사안들을 법원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다루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은 특정 제도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어떻게 아동 중심의 사법처리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중 우리나라의 실무 개선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법령, 정책보고서, 관련 판례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통합형 가정법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특성과 운영상의 기준을 정리하였다. 해외 제도는 전체적으로 이식하기보다는, 아동의 권리 보장, 절차 참여 확대, 다학제적 접근 등 우리 법체계 안에서도 적용 가능한 요소를 선별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 실증연구

본 연구는 국내 가정법원의 아동 관련 사건 처리 실무를 보다 아동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정성적 전문가 면담을 병행하는 실증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1) 아동 관련 사건 데이터 분석

먼저, 아동이 법원을 접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 유형 (이혼 및 친권·양육권 다툼, 면접교섭, 아동학대, 가정폭력,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법체계의 실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사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주요 자료는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의 공공기관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집된 통계와 사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판례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주요 판례와 결정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구체적 경로와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은, 아동 중심 실무 구축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로 기능하였다.

(2) 전문가 심층 면담

정량적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무상의 맥락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아동 사건의 판단과 조사, 변론,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 현직 법원 부장판사 1인: 장기간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 아동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의 결정 과정과 제도적 제약에 대한 실제적인 견해를 제공함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로펌 파트너 변호사 1인: 판사에서 변호사로 전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당사자의 시각과 제도의 현실 간 간극을 지적함
- 경력 15년 이상 가사조사관 2인: 고위기 가족의 실태와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의 조사 실무와 제도적 한계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제공함
- 경력 10년 이상 가사조사관 1인: 다양한 가족 유형과 사건 유형을 다룬 경험을 토대로, 아동의 의견 청취 및 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보완 필요성을 지적함
-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1인: 소년 보호 및 형사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아동의 권리 사각지대 문제를 중심으로, 법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안함

각 면담은 사전 질문지와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의 실무 경험, 제도 운영상의 문제,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면담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실명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다만,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면담 내용은 녹취 후 전사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진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이 연구를 통해 아동보호형 가정법원의 법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적 법제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법령 개정안은 아동과 그 가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위기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아동 보호의 법적 및 정책적 틀을 한층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나. 활용방안

연구 결과는 법제 개정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정리하여 정책 입안자 및 입법 기관에 제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제시된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택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모니터링을 거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법을 통한 아동 보호의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는 법원 실무자 및 사회복지 전문가의 교육 자료로 제공되어,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적 틀 안에서 위기 아동 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현재 이에 관심 많은 국회의원이나 입법연구자들이 많으나 구체적인 입법안까지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바, 본 연구는 실제 법개정, 제도개선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 아동학대사건의 이해와 절차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아동학대사건의 이해와 절차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를 통하여 외부로 인지 된다. 가정 내에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아동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외부에서 아동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대한 의무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험에 처한 피해아동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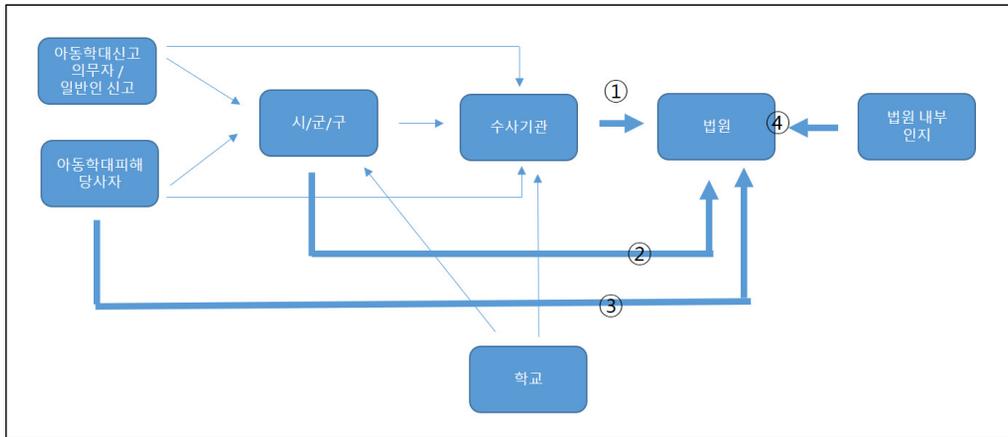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은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은 조사와 수사를 거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정법원에 이러한 피해아동에 대한 개입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크게 ① 수사기관(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친권 관련 청구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친권 관련 청구, ③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p>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 상실의 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p> <p>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 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p>

한편, (가정)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개입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도 있는데,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④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



[그림 1]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개입

4) 가정법원의 직권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시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의 예외로서,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을 인지하여 개입을 결정한 (가정)법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p>〈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p>〈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p> <p>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p> <p>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p> <p>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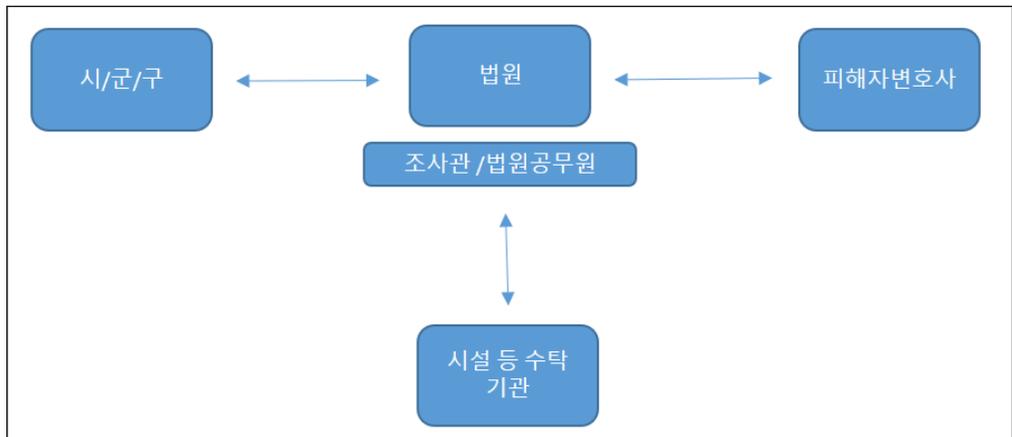
이러한 조치의 결정 이후에도 (가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해당 조치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독을 한다. 이러한 피해아동에 대한 집행상황의 확인은 법원공무원, 가정법원조사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조사관 등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관할하는 시/군/구, 피해아동이 보호되고 있거나, 상담 등이 이루

어진 수탁기관 등에 피해아동의 보호 상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아동 학대 행위자의 처벌상황 등을 확인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행상황의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연장, 변경)을 결정하기도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2]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감독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사건 인지 단계에서의 문제점

(1)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인지의 한계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후견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일부만이 가정법원의 재판절차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4,492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등의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10,961건(44.8%)였고, 수사가 진행된 것은 9,289건,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1,672건으로 나타났다⁵⁾.

〈표 1〉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1

(단위: 건, %)

고소·고발 등 수사진행											수사미진행· 처벌법 조치완료	계			
고소	고발	신고 등에 따른 수사	수사기관 인지수사	파악불가	소계										
127	(1.2)	993	(9.1)	6,858	(62.6)	1,026	(9.4)	285	(2.6)	9,289	(84.7)	1,672	(15.3)	10,961	(100.0)

그리고 고소·고발을 통하여 처리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는 310건, 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938건이고, 그 중 가정법원의 아동·가정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된 것은 1,271건이었다⁶⁾.

5)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29쪽

6)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30쪽

〈표 2〉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2

(단위: 건, %)

구분			건수(비율)		
수사 기관	경찰수사	수사중	3,411	(31.1)	
		사건송치	1,595	(14.6)	
		파악불가	476	(4.3)	
	소계		5,482	(50.0)	
	검찰수사	수사중	425	(3.9)	
		불기소	396	(3.6)	
		기소	66	(0.6)	
		아동보호사건송치	298	(2.7)	
		가정보호사건송치	36	(0.3)	
		파악불가	53	(0.5)	
소계		1,274	(11.6)		
사법 기관	재판진행중	1심 진행중	167	(1.5)	
		항소심 진행중	24	(0.2)	
		상고심 진행중	6	(0.1)	
		파악불가	113	(1.0)	
	소계		310	(2.8)	
	판결	가정법원	보호처분(아동가정보호사건)	1,271	(11.6)
		형사법원	형사처벌	192	(1.8)
			무죄	36	(0.3)
			공소기각	2	(0.0)
			불처분결정	414	(3.8)
파악불가		23	(0.2)		
소계		1,938	(17.7)		
파악불가		1,957	(17.9)		
합계		10,961	(100.0)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 모두를 법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정법원 차원에서 후견적 역할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후견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방치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편입될 정도의 악화된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의 후견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후견적 지원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사례들에 조기에 개입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예방적 효과가 없고⁷⁾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법원이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자체장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아동학대 신고가 되어 지자체에서 인지하고, 또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정법원이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들의 경우, 피해아동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사법 심사를 통하여 법원이 방향을 결정하고 개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의 소극적 활용

가정법원은 이혼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사건 등에 있어 그 결정을 위해 조사관을 통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소송 중 자녀인 아동의 학대 정황이 발견된다거나,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던 중 보호소년의 비행의 동기에 있어서 부모의 학대가 확인된다거나,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을 진행하던 중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시/군/구에 신고를 하고 일반적인 아동학대사건처리 절차를 밟아 다시 가정법원으로 오게 하는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가정법원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개입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바로 명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 할 것이다.

실제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 기초가 된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판사의 직권 개시의 내용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중 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 소년재판을 할 때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신속하게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7)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22),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모델, 법원행정처, 549쪽

의견이 언급되면서 이에 공감한 의원들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⁸⁾.

“이 각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좀 중간 단계에서 법원 내에 저는 만약에 이제 좀 구상을 좀 한다고 그러면은 법원 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중첩돼 있는 사건들이 발견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년 사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모가 가정폭력 사건도 연결되어 있다든가 또는 아동 보호 사건의 아동 피해자 보호명령이 들어왔는데 소년사건이랑 지금 이혼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거나 이러면 좀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 현직 가사조사관 C

이처럼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법문상으로 판사가 관련 민사, 형사, 가사재판 중 아동에 대한 학대 상황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실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발동한 사례⁹⁾〉

1. 엄마가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자신도 아동학대한 사례
엄마는 아빠가 11살짜리 딸을 때렸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아빠는 아동보호 사건 심리기일에 ‘엄마가 딸을 더 때리는데, 자신과 이혼하고 양육권을 빼앗아가기 위해 과장된 신고를 하였고, 고소 취하 조건으로 협의이혼하고 양육권도 포기하였다.’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이혼 후유증이 심각해 상담위탁 처분을 하였고, 현재 보호자인 엄마에게는 자녀를 상담소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상담소에 가야하며 항의하였지만, 판사는 “상담사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문제가 있다면 계속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말해 엄마는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상담소 출석을 거부하고 상담사의 출석 독려에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사로부터 “아이가 엄마한테 심하게 맞아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한다. 어찌하면 좋겠냐?”라는 아빠로부터의 급한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판사는 엄마가 ‘동버’사건(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여 엄마를 소환하였습니다.
2. 계부가 의붓딸을 성 학대 하였으나 친모가 방치한 사례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을 성 학대하여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인데, 친모와 피해아동이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아동이 계부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 필요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로부터 전달받은 아동 보호사건 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고 바로 법원 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사조사관을 총동원 하여 다른 조사사건은 뒤로 미루고 직접 피해아동 집으로 출장을 가 가족을 만났는데, 피해아동은 계부를 용서해서 처벌 불원 한 것이 아니라 친모와 동생(친모와 계부 사이에서 낳은) 생각에 그리 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친모는 ‘계부가 구속되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냐? 조용히 살고 있는 집에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항의 하였습니다. 조사관들은 친모에게 ‘그 태도는 아이 엄마가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피해아동의 심리 치료를 권유 하였습니다.

8) 김상용(2018), 아동학대방지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중앙법학, 20집 제3호, 89-90쪽

9)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발동한 사례를 정리한 내용

이처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 개시는 피해아동을 보호의 공백 없이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고, 법원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건을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전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개입하여 실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 개시한 경우는 2024년 한 해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⁰⁾

〈표 3〉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청구인	인용 건수	기각 건수	총 건수	임시 보호 결정	임시 보호 기각	인용 세부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5-2호	6호	7호	8호	9호	계 (중복 집계)
아동 본인	7	0	7	4	3	2	4	6	0	0	0	0	0	0	0	12
	(100.0)	(0.0)	(100.0)	(57.1)	(42.9)	(16.7)	(33.3)	(5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판사 직권	3	0	3	2	1	0	2	2	2	1	0	2	0	0	0	9
	(100.0)	(0.0)	(100.0)	(66.7)	(33.3)	(0.0)	(22.2)	(22.2)	(22.2)	(11.1)	(0.0)	(22.2)	(0.0)	(0.0)	(0.0)	(100.0)
사·도 지사, 사·군· 구청장	62	1	63	49	14	9	45	40	12	4	2	13	0	23	8	156
	(98.4)	(1.6)	(100.0)	(77.8)	(22.2)	(5.8)	(28.8)	(25.6)	(7.7)	(2.6)	(1.3)	(8.3)	(0.0)	(14.7)	(5.1)	(100.0)
변호사	5	0	5	4	1	3	5	4	0	0	0	0	0	0	0	12
	(100.0)	(0.0)	(100.0)	(80.0)	(20.0)	(25.0)	(41.7)	(33.3)	(0.0)	(0.0)	(0.0)	(0.0)	(0.0)	(0.0)	(0.0)	(100.0)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	16	1	17	11	6	8	15	14	1	0	0	1	0	1	0	40
	(94.1)	(5.9)	(100.0)	(64.7)	(35.3)	(20.0)	(37.5)	(35.0)	(5.9)	(0.0)	(0.0)	(5.9)	(0.0)	(5.9)	(0.0)	(100.0)
파악 불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93	2	95	70	25	22	71	66	15	5	2	16	0	24	8	229
	(97.9)	(2.1)	(100.0)	(73.7)	(26.3)	(9.6)	(31.0)	(28.8)	(6.6)	(2.2)	(0.9)	(7.0)	(0.0)	(10.5)	(3.5)	(100.0)

10)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28쪽

나. 아동학대 관련 조치 결정 단계에서의 문제점

(1)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 : 행정처분과 판결의 병존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복지적 쟁점이 상존하는 가운데, 원가정 보호와 아동의 최상의 이익 고려라는 원칙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과 그 원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상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분절적이면서도 중첩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법률과 통일된 절차, 특정한 책임 주체 하의 일관된 결정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법률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할 수 있는데, 양 법률은 각 업무주체로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자체장, 수사기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활용된다. 아동을 가정 외 분리보호 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제15조의 보호조치를, 아동학대 처벌법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서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각 발할 수 있으며, 두 조치는 중첩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한 조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조치가 각하되기도 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의 당사자인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는 각 대응이 연계되지 아니하고 분절된다는 문제도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이후 임시조치를 거쳐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며(아동학대처벌법, 동거사건),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절차로서 응급조치 이후 일반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동거사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제15조)를 통한 분리보호를 진행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아동의 보호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하게 되므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 및 이를 통한 가정의 통합적 개선도모에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동학대사건이 인지되는 경우, 이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하여 대응업무의 결정주체간 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의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다르게 될 수 있어 일선의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이 불처분 결정이 되거나,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아동의 분리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 장의 판단과 가정법원의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수성은 아동보호적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 증첩적 보호를 통한 보호 공백 누락 방지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과잉된 행정력의 사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동의 안전확보라는 미명하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아동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반복될 우려를 낳는다.

(2)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개입의 한계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에 대하여 7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분리하는 “응급조치”와 법원의 조사와 재판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보호를 결정하는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에서 법원의 개입은 제한이다.

우선 응급조치의 경우,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아동을 72시간 동안 분리하는 조치로, 현장의 긴급한 판단을 존중하고 신속하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급조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응급조치 이후에 필요적으로 행하여지는 임시조치를 이러한 절차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결이 다르고, 실무적으로도 임시조치의 경우 그 시급성을 이유로 하여 사무분담상 지방법원의 영장담당판사가 이를 행하고 있어, 응급조치 이후의 아동의 분리조치에 지속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는 법원이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에 필요와 그 기간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2024년 한해를 기준으로, 피해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조치가 된 것은 2,292건에 이르는 데 반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인용 건수는 3건 정도로 상당히 적다¹¹⁾.

〈표 4〉 보호조치 유형별 피해아동 상황

(단위: 건, %)

피해아동 상황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	22,057	(90.1)
분리보호(보호체계 변경)	2,292	(9.4)
기타	143	(0.6)
계	24,492	(100.0)

이는 실무상 아동의 분리에 있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조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조치가 선호되는 이유는 보호조치 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와 같은 복잡한 서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 보호기간 연장 및 이행실태 보고 등의 절차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시설 관리도 지자체 내부의 담당자와 소통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등의 실무상의 편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²⁾.

11)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21, 28쪽

12)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 99쪽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계속 이제 저희 법원 내에서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막 이렇게 애들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분리할 때는 항상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계를 하나 법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그 애 두 두 이렇게 행정 절차 사법 절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사법 결정까지 오는 거는 좀 번거롭다 생각 하나니까 그냥 행정부 내에 자체에서 그냥 다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너무 분리돼 가지고 서로 힘든 것 같아요. 우리도 법원도 먼저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 아이를 어디 보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집행 감독 같은 거 하려고 보면 또 장소가 이동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이동되어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이처럼 응급조치의 경우, 그 응급성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라도 사법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 바, 가정법원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3) 아동에 대한 조치 결정에 있어 제한적 사법심사

이상과 같이 가정법원에 의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외에 실무적으로는 사법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아동복지법 제15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 내에서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할 경우, 그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행정청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로부터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피해아동의 거주이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친권자에게는 자녀의 거소지정권을 제한하는바, 보호조치는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해아동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제 규정(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을 따라야 하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 대상이 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2015.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68사건에서 재판부는, 친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인 B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은 원고의 아들인 B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시킴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친권 등을 제한하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보호조치가 친권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보호조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시에 행정처분의 종기가 정하여 지지 않는다. 이처럼 처분대상자에게 있어 행정처분 종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라면 위법할 수 있는 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5항에서 처분대상자인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자의 의사 존중 및 의견 청취의 절차를 둬으로써 위법 논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에 있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이러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조차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조치의 불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할 것이다.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는 비록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피해아동의 입장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고,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에 있어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의 내용으로서 거주지정권을 제한하는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아동의 분리조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이러한 사법심사의 요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1. 참조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4) 지자체와 가정법원의 판단이 상이할 경우 초래될 혼란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에 있어 원칙적 사법심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함께 운용하는 이상, 두 제도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 여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기존 보호조치에 있어 절차와 요건의 미비를 보완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복지상 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병존을 전제로 보호조치의 절차를 보다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각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각 제도에 따른 판단주체의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아동학대범죄를 근거로 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각 판단주체가 모두 같은 의견인 경우 중첩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으므로, 이후에 청구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각하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에 있어 아동의 분리처분

등에 있어 각 판단주체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을 할 경우, 해당 재판과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가정법원 재판의 결과가 상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재판이 후행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을 형식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은 현행법 내에서는 찾을 수 없다.

(5)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 자체의 한계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법규정에 따른 내용에 한정되므로 매우 제한적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 결국 피해아동이 아닌 학대 행위자나 가족들의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규정된 명령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강제력을 끌어낼 수 없고, 이에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아동 및 원가정에 대한 개입과 원가정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명령 등이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아동 보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사회적 보호라고 하는 웰빙과 세이프티의 그 관계들이 특히 아동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이를 분리시키거나 아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세이프티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지만 아이가 그 원가정에서 자라나거나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웰빙의 요소거든요. 그건 복지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처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 시켜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이프티만 강조되고 있는 거죠.” - 현직 기사조사관 C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므로 피해아동을 위한 개입으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강제적인 규정은 결국 피해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역시 법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 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다. 아동학대 관련 조치 결정 이후 집행 감독 단계에서의 문제점

(1) 현행법상 아동의 가정복귀 절차의 문제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료 후 가정복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명령시에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연장이 필요하다면 위 명령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을 통하여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동학대처벌법〉

-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법원에서 명한 기간이 종료하면 아동은 당연히 가정으로 복귀되게 되므로,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해당 기간의 종기에 맞춰 피해아동과 원가정에 대한 교육·상담·지원 등을 통해서 원가정 복귀의 준비를 해 두게 된다.

다만,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체계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한 판사를 통하여 진행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종기와 피해아동의 가정 외 분리명령의 종기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모두 판단한 판사가 행위자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교육상담을 명하면서도,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원가정이 회복되는 방식을 지지하고 결정하였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은 아직 유효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이미 종료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판단임에도, 아동학대 대응 업무 일선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처분 등의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로서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기한의 연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아동의 가정복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기한이 남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료 후 임의대로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아동의 가정복귀는 피해아동에 대한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조치로서, 당사자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더욱이 사법기관의 원가정 복귀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를 연장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원의 집행감독의 한계

1)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53조 및 아동보호심판규칙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 개시에 따라 이후 가사조사관 등을 통하여 명령의 집행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가사조사관의 부족과 연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그 한계점이 명확히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역적인 인프라 격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뭐 사람도 많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만약 상담을 보내고 싶어요. 상담 기관이 많아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지방 아무리 이런 제도가 있어도 보낼 데가 없어요. 소년 보호 아동 보호 가정보호를 분류해서 보조인을 뽑는 데는 서울 가정밖에 없거든요. 지역은 소년 보호로 다 뽑아서 소년 보호 보조인한테 사건을 다 주는 거죠.” - 현직 가사조사관 A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조사는 단순히 처분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대피해아동의 상황,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개선 여부,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제거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판사는 집행조사를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처분을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로서, 집행과정을 면밀하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보호위탁 시설 지정에 대한 문제

가정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방식으로 가장 널리 활용하는 것은 시설위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정한 보호위탁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시군구에서 지정된 보호시설로의 위탁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에 위 명령을 내리는 주체인 법원은 피해아동이 보호위탁 될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이러한 보건복지부령은 아동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제 해당 피해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선행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처분의 연장, 변경 및 종료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접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아동의 보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울러 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제4호 시설위탁처분 등을 한 경우 이와 같은 본처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집행감독사건이 별건으로 생성되어 집행감독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를 통해 가사조사관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이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한다. 이러한 집행조사결과는 처분변경 및 종결의 필요성을 판단 하는 자료가 되고, 학대피해아동의 상황 및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개선 여부,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제거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되었다고 판단 되면 처분을 종결하고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가장 주요한 자료가 된다.

아동보호심판규칙은 법원이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내의 아동 복지시설 중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등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가정법원 관할 지역이 충분한 수탁기관의 풀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 이다.

“그런 기관 자체를 찾기가 힘들어요. 학대받은 아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년 재판 받는 애들도 대부분 그런 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다루기가 되게 쉽지 않아 가지고 되게 진짜 보통의 그런 정말 의미 무슨 종교적 사명 같은 것을 갖지 않으면은 스스로 하기가 힘들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려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3) 조사관 인력과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개시 필요성 파악을 비롯하여, 가정법원이 사건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집행단계에서의 개입 유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가사조사관의 조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조사관의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되게 여력이 안 되세요. 사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서울에 있던 사람이 혼자 가서 거기 있으면 정말 기반 닦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저 판사님 설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판사님 이런 거 조사 명령 내려주세요. 그러는 것도 있대요. 판사님도 새로 오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땀에 헤딩해야 되는 경우들이 지원 정말 지원 단위에서는 그런 상황이어서...” - 현직 가사조사관 A

“그런 통합성을 조사관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5년 이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규 조사관이 그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가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가사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이해가. 그런데 아동보호 사건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게 좀 적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어떤 가치를 높이 봐야 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다 경험하려면 가사 소년 아동 보호 가정보호 또 잘 된다면 성년후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센터 경험까지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저희가 2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한 15년 1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10년 이상의 그런 경험이 있는 조사관들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할 때마다 그 틀 안에서 고민하다가 그 한계를 느끼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 현직 가사조사관 C

(3) 친권관련 명령의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가정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면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한 결정은 실무상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는, 친권 행사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이 요구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법률상 명확히 친권상실 등의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친권 관련 조치에 있어서는 친권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후견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개선방안

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개시 활성화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이론적으로는 관련 민사, 형사, 가사재판 중 아동에 대한 학대 상황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법원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적 개입, 아동이 포함된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단서로서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직권 개시가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일선 판사들은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초기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 개시를 위한 논의들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거나¹³⁾, 현재까지도 명확한 절차나 사무분담이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의 배치와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뭔가 법원 내에 적어도 가정법원 내에서라면 가정법원 내에 무슨 협의체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떡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올리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거는 이게 피해 아동 명령을 해야 돼 하고 글로 보내는 것까지는 난 부담스러워서 못해 이혼 판사가 도저히 나는 못하겠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거기 그 중간 단계로 협의체에다가 넘겨서 이 협의체에서 뭔가 심사 내지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어떡냐 이런 안을 내셨던 적은 한 번 있었어요.”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원래 그 쟁 사건은 제일 문제가 되는 사건은 형사 이미 아동 학대를 했다 하더라도 보호 재판을 안 오잖아요. 그런 하드한 사건은 그냥 형사 재판을 받는데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걸 알 수 그러니까 애들은 다 배제되어 있고 피고인만 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그때 예전에 그 쇠파이프 타고 내려온 인천에서 쇠파이프 타고 내려온 개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기사가 막 되니까 그때 이제 인천 가정에 있던 문○○ 부장이 딱 그거를 직권 직권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한 첫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거의 직권으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문○○ 부장이 딱 그때 직권에 의한 피해 피해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해 가지고, 개를 계속 이렇게 추적했거든요.”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그런 피해자 보호 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판사들도요. 가정법원에서 그 사건을 한 사람들만 알지 가정법원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알려야 되고 그럼 직권으로 개시한다는 거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가정법원에 조사관 중에 한 명을 그런 피해 아동 아동 보호 명령 직권 개시를 담당하는 담당관 같은 거를 한 명 뒤 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 하면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라. 그럼 이제 그 조사관이 좀 기초 작업을 조사해서 자기가 이렇게 사건을 개시를 하면은 이제 배당이 되니까 그 조사관이 기초 조사를 해서 이렇게 사건화 하면은 좀 그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뭔가 연락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한테.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직권 개시에 활성화 논의에서 짚어보아야 할 몇가지 쟁점이 있다. 첫 번째로 피해아동 보호명령 직권 개시에 따른 사무분담에 대한 논의다. 대전가정법원(2016), 직권에 의한

13) 대전가정법원(2016),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발동한 사례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의 전담 재판부만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맡지 않은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무분담의 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시의 사무분담 논의〉

1안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발견한 재판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을 맡은 재판부에게 그 사례를 알려 주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도록 독려하는 방법

2안

사무분담을 조정하여 모든 재판부에서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

3안

판사의 사무분담만 조정하여 어느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후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사건을 이첩하여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

1안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라 보기 어렵고, 다른 재판부에 현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에 있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 있어 성폭력 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신원누설금지, 비밀엄수의무 등과 저촉할 가능성이 있다¹⁴⁾ 할 것인바 찬동하기 어렵다.

2안과 3안은 활용이 가능한 안으로서, 2안의 경우가 애초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 개시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한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 할 것이다¹⁵⁾.

한편, 가정법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사관 등의 인력을 활용하고 해당 재판부가 피해

14) **성폭력처벌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대전가정법원(2016)에서는, 2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단계인 3안을 채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아동보호명령을 직권개시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재판부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는 있도록 하되, 사건 개시 후 가정법원으로 이를 이송하여 가정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와 가정법원 판사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즉,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을 두어 해당 재판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직권 개시 후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재판부는 법원 내의 조사관을 활용하여 기초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누가 개시할 수 있느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개시하여 보낸다 라든지 개시하여 가정법원에 이송한다 라든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시만 하고 개시하고 사건은 이송을 해야 되겠죠.”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한편, 가정법원 외의 타 재판부 재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양육자의 변경이 있거나 형사재판시에 관련 아동에게 보호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에 있어, 해당 재판부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곧장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 개시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규정할 수 있겠다.

“양육자 변경이나 형사사건 재판 등에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 요보호 아동이 발견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든지 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두게되면 그 직책을 만들 것 같고 아니면 그런 방법 통보를 해서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또한, 현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서 경찰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인하여 보호자의 구속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곧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를 촉구하는 취지의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경찰이 제일 먼저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아이를 분리 조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그러니까 형사 사건 아동 보호 사건으로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빠져 있는 경우도 형사 사건으로 곧바로 구속되어 있으면은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개시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통보를 한다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법률안을 제안한다.

〈형사소송법〉

현행	개정법률안
[신설]	제**조(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를 위한 통보 등) ① 법원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지위의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피해가 확인 되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 후,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조사관에게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법원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지위의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피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 소속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중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지위의 아동의 보호자가 구속되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 소속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현행	개정법률안
[신설]	제**조(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를 위한 통보 등) ①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사건본인 등의 지위의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피해가 확인 되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현행	개정법률안
	②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를 위하여 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사건 본인 등의 지위의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피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 소속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나. 아동의 가정 외 분리에 대한 원칙적 사법심사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시설에 보호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아동복지법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바, 일선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실무자들의 편의에 따라 보호조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행하는 주체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주체가 모두 지자체장으로 됨에 따라 각 제도를 활용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두 제도가 체계 정합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아동과 보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응급조치와 같은 긴급한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이후 72시간 내에 지자체장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긴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분리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후 분리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보호조치를 인정하되 보호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여 사후적으로라도 법원에서 아동의 분리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의 명령 내용 다양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활성화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서도 피해아동 외의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들에 대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르면, 제7항에서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5호의2는“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피해아동 상담시에 보호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안하는 정도의 취지이고, 특별한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다.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내용에서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처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 내용의 구체화도 필요하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보호자의 불충분한 보호하에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친권(후견권)의 제한 또는 친권(후견권)의 부작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교육적 방임과 같은 상황에 있어, 법원이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교육적 부조조치를 행하고 있는데¹⁶⁾,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 형태가 마련되는 것을 상정할 수 있겠다. 또한, 독일의 아동청(Jugendamt)에서는 아동에 대한 친권 제한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제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하는바¹⁷⁾, 만약 청구인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내용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형태로 결정할 수 있겠다. 이에 구체적인 명령을 고려하고, 명령으로 구체화가 가능한 내용들을 담아 법원 내의 예규나 서식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소년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보호관찰시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다양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형태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구체화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에 있어, 해당 처분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보호처분 조항인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 내용으로 ① 피해아동을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 ② 복지서비스 관련 행위, ③ 사회봉사활동, ④ 보호처분 이행 감독 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자는 의견이다¹⁸⁾. 현행 조항이 “금지행위” 위주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해아동을 위한 행위들조차 금지되고 이에 피해아동의 신상에 있어 후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

16) 박주영(2010), 독일과 프랑스의 친권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33권, 154쪽

17) 박주영(2010), 154쪽

18)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22), 525쪽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아동을 위하여 후견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와 이행 감독을 통하여 이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를 넣음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법원이 개입이 구체적이고 실질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라. 친권 제한 등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1) 친권제한 등에 있어 범위 정형화

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의 친권행사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이하 “친권의 제한”이라 통칭하기로 한다)은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친권의 단계적 제재를 통해 아동과 친권자 간의 관계 모색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지금보다 활성화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친권의 제한이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정형화하여 제한 되는 친권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민법상으로도 친권의 제한의 명확한 유형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법원은 친권의 제한 시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워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법은 친권의 일부 제한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924조의2)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의 구체적인 유형이 피해아동보호명령시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컨대, 거소지정권, 교육(학습)권, 자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육권, 휴대폰통장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 동의권, 여권발급 등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을 들 수 있다¹⁹⁾.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교육적 부조조치와 같이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명백하여 아동학대에 이를 위협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그 공백 상황을 제거하는 형태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후, 해당 결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동 결정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친권 상실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²⁰⁾. 또한, 독일 아동청(Jugendamt)의 경우와 같이 친권 제한

19) 이은정(2019), 피해아동의 분리 보호와 친권의 제한, 가족법연구, 제33권 제2호, 311-312쪽
20) 프랑스 민법 제378-1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교육적 부조 조치가 행하여 졌으나, 그 부모가 2년 이상 고의로 이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친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권자에게 제한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2) 미성년 후견 활성화와의 연계 검토

후술하는 보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2023년 정부는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친권의 제한과 후견인 지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의 후견 보호의 공백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제까지 아동학대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관련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는, 후견인 지정에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므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

라. 보호위탁 시설 지정 활성화

학대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시설은 부족하고 열악하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위탁된 시설과 법원과의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집행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호의 보호시설은 법원이 직접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지역간의 격차와 인프라 부족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지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아동이 분리되어 보호시설에 위탁되었을 때 법원이 직접 제4호 보호위탁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각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단순히 법원이 보호 시설로 위탁하는 결정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아동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위하여 제4호 보호위탁기관을 직접 지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호 시설 지정 매뉴얼 제안²¹⁾〉

- ① 먼저 관내 지자체를 통해 관내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시설 명단을 받음.
- ② 해당 업무 담당 가사조사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7조를 설명하며 제4호 보호위탁기관지정에 관하여 안내
- ③ 아동복지시설로부터 제4호 보호위탁기관지정신청서 및 첨부하여야 할 필요서류를 제출받음
- ④ 시설현황·재정상황·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가사조사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 사진 촬영 및 시설장과 면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 조사

21)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 130쪽 참고

⑤ 최종적으로 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수탁기관지정서를 발부

- * 관내 지자체의 아동보호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같은 보호시설이 새롭게 개소 되면 즉시 관내 지자체는 가정법원 내 담당 가사조사관에게 알리고, 담당 가사조사관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가로 제4호 보호위탁기관을 지정
- * 아동복지시설이 제4호 보호위탁기관지정을 거부한 경우, 담당 조사관은 관내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하여금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제4호 보호위탁결정을 받은 피해아동을 위탁하지 말 것을 명확히 고지하여, 법원이 피해아동의 보호위탁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마.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시 및 아동관련 집행 사건의 감독 충실화를 위한 조사관 확충

아동과 관련한 법원의 일련의 처분은 어떠한 처분을 내려졌느냐보다는, 처분 이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어떻게 처분을 변경, 연장 또는 종결해야 하는지를 꾸준한 집행감독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때마다 적절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일련의 처분이 내린 후 법원 가사 조사관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집행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사조사관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보강은 이러한 집행 사건 감독 충실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베테랑 조사관을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이런 사건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재배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력 15년 이상의 조사관이다 그러면 이 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소년 아동 보호 가정보호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한 거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2년씩 한 번씩 하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건 들을 경험했던 조사관은 각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조사관에게 이런 사건들을 모두 몰아서 그 조사관이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동 보호 사건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소년 사건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몇호 처분을 이렇게 개입해서 종합 보고서를 각 재판부에 보내는 겁니다.” - 현직 가사조사관 C

현재 가사조사관의 인력 배치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처우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원칙적으로 각 법원 별로 통일된 집행감독 기준이 마련되어 촘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관의 확충과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

〈집행·감독 기준 제안²²⁾〉

- 원 가정 복귀를 위한 양육환경조사 및 피해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최소 6개월 단위로 실시
- 수탁기관이 법원의 조사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기관장이 간명하게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미성년후견사무보고서 양식과 유사한 방식의 조사보고서 양식을 제공
- 단기적으로는 이혼가정의 면접교섭처럼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서로 다시 만나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예: 가족캠프 프로그램 등)을 제안
- 장기적으로는 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일정 회기 이상 할 것, ②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간의 면접교섭훈련을 할 것, ③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위탁된 경우 외출해서 잘 적응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일정 기준이상 이수할 경우 사건 담당 가사 조사관과 판사가 회의를 거쳐 원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

22)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 150쪽 참고

Ⅲ

이혼재판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가. 민법

<p>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p> <p>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p>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p> <p>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p> <p>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p> <p>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p>
<p>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p> <p>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p> <p>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p>

나. 가사소송법

<p>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2.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p>②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p> <p>[전문개정 2010. 3. 31.]</p>
--

<p>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p> <p>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p>
<p>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p> <p>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3. 31.]</p>
<p>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p>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p>
<p>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p> <p>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다. 가사소송규칙

<p>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p>
<p>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p>
<p>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p>
<p>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2(상담 권고)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본조신설 2008. 6. 5.]</p>
<p>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9.]</p>
<p>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제99조(당사자) ① 재(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2017. 2. 2.> 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1. 부(父)와 모(母) 2.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③ 제1항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재(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재(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3., 2017. 2. 2.></p>
<p>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재(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재(子)의 의견을 들 수 없거나 재(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재(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4., 2013. 6. 5., 2017. 2. 2.></p>
<p>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의무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p>
<p>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p>

라.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상담및자문등에 관한 예규 (재특 2017-2)

<p>제2조 (상담제도의 운영)</p> <p>①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은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5항 에 따라 전문상담인을 상담 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외부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군법원에서 제1항의 상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이 속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그 시·군법원의 상담위원을 위촉하거나 외부 상담기관을 지정한다.</p>
<p>제3조 (자문제도의 운영)</p> <p>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외부 사회복지기관 등을 지정하여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4조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p> <p>①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 또는 자문위원(이하 ‘상담위원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 또는 자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12. 31.까지 관할구역 내의 가사재판·가사조정 사건 수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사건 수,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인원의 다음 연도의 상담위원등을 위촉한다. 다만, 법원장·지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위원등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이 경우 추가로 위촉된 상담위원등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12. 31.까지로 한다).</p> <p>②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을 위촉함에 있어서 가사재판·가사조정절차에서의 상담위원,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가사재판·가사조정절차에서의 자문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③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위원 :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중독치료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1개월에 1회 이상 법원의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2. 자문위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2개월에 1회 이상 법원의 자문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p>④ 법원장·지원장은 의사회, 학회, 교육기관, 공공단체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사람을 모색할 수 있다.</p> <p>⑤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 또는 추천자의 의견 청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위원등으로서 그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p> <p>⑥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 31.까지 상담위원등의 참여도, 성실성, 성품과 건강, 실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p> <p>⑦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상담위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상담위원등으로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p>제6조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p> <p>① 판사, 가사조사관, 법원사무관등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상담위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한다.</p> <p>② 법원장·지원장은 제1항의 평가서를 상담위원등의 재위촉 등의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p>
<p>제8조 (상담권고)</p> <p>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 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 사건 본인 및 관계인 등(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12조 (상담결과보고)</p> <p>상담위원은 상담을 모두 마친 후에 재판장등에게 상담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상담위원은 스스로 또는 재판장등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중간상담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14조 (상담위원의 상담실시)</p> <p>① 혐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당사자가 상담 받으려는 경우, 지정된 상담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일, 상담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상담위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담 전 질문지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p>제18조 (자문의뢰)</p> <p>① 재판장등은 당사자등이 미성년자 자녀인 가사재판 또는 가사조정절차에서 해당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p> <p>② 재판장등은 자문위원에게 자문목표, 자문에 필요한 조치 방식, 자문기간 등을 정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p>

마.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39호)

<p>제2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기능)</p> <p>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자"라 한다)와 그 자녀가 편안하게 면접교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면접교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담당 업무는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면접교섭지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면접교섭센터에서 편안하고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2. 인도(인도)지원: 면접교섭 이전 및 이후에 면접교섭센터에서 미성년 자녀를 각각 비양육자 및 양육자에게 안전하고 원만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원3. 화상면접교섭지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p>제5조 (면접교섭센터의 조직)</p> <p>① 면접교섭센터에는 면접교섭센터장(이하 이 조에서 “센터장”이라 한다)과 전담 가사조사관을 둔다.</p> <p>② 센터장은 법원장이 소속 법원 판사 중에서 지정하며, 면접교섭센터의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한다.</p> <p>③ 전담 가사조사관은 법원장이 소속 가사조사관 중에서 지정하며,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면접교섭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p> <p>④ 전담 가사조사관은 평일과 주말에 면접교섭센터에 상주하여 근무한다. 다만, 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담 가사조사관의 근무형태와 주말 근무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⑤ 면접교섭센터에는 청사방호, 출입자에 대한 검색, 이용자 및 센터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속 법원 보안관리대원 등 보안관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를 보안관리 담당자로 둔다.</p> <p>⑥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에 적절한 수의 면접교섭 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⑦ 면접교섭센터의 운영 업무 및 상담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에 적절한 수의 업무보조위원을 둘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센터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p>
<p>제6조 (상담위원의 위촉 등)</p> <p>① 상담위원은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아동복지학, 교육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p> <p>② 상담위원의 임기, 위촉 절차 및 해촉 등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장·지원장”은 “법원장”으로, “상담위원등”은 “상담위원”으로 본다.</p> <p>③ 그 밖에 상담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p>
<p>제10조 (면접교섭지원등의 대상)</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이하 “면접교섭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 2.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 결정, 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 3. 그 밖에 면접교섭지원등에 관하여 상호 동의한 양육자 및 비양육자
<p>제13조 (면접교섭지원등의 회기 등)</p> <p>① 면접교섭지원등의 회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접교섭지원 및 인도지원: 각각 6개월 동안 총 12회(월 2회)를 기본으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화상면접교섭지원: 총 3회를 기본으로 한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센터장은 면접교섭센터 이용자의 상황과 해당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회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14조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접교섭센터의 장은 면접교섭지원등을 종결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1. 자연종결: 정해진 회기가 완료된 경우
2. 조기종결: 정해진 회기가 완료되기 전에 양육자 및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을 요청하거나 양육자·비양육자 일방 또는 자녀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강제종결: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조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

- ① 면접교섭센터장 또는 전담 가사조사관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상담위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원장은 제1항의 평가서를 상담위원등의 재위촉 등의 사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다.

바.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3조 (신속한 조사보고서 등 작성)

-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종결일 또는 조정조치종결일부터 3주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 ② 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원조직법

제37조(가정법원장)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4. 12. 30.]

제38조(부) ① 가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4. 12. 30.]

제39조(지원)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4. 12. 30.]

<p>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p>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p>
<p>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p>[전문개정 2014. 12. 30.]</p>

아. 가정법원의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289호)

<p>제5조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의 가정법원 관장사항과 사무분담)</p> <p>①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중 단독 판사의 사무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명의 소속 법관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가사사건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 2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과 개명허가사건 5.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2012년 8월 5일부터는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허가) 7.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정한 사건 <p>② 지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하는 경우 해당 법관의 구체적·개별적 사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순회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하여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의 장은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장이 이를 정한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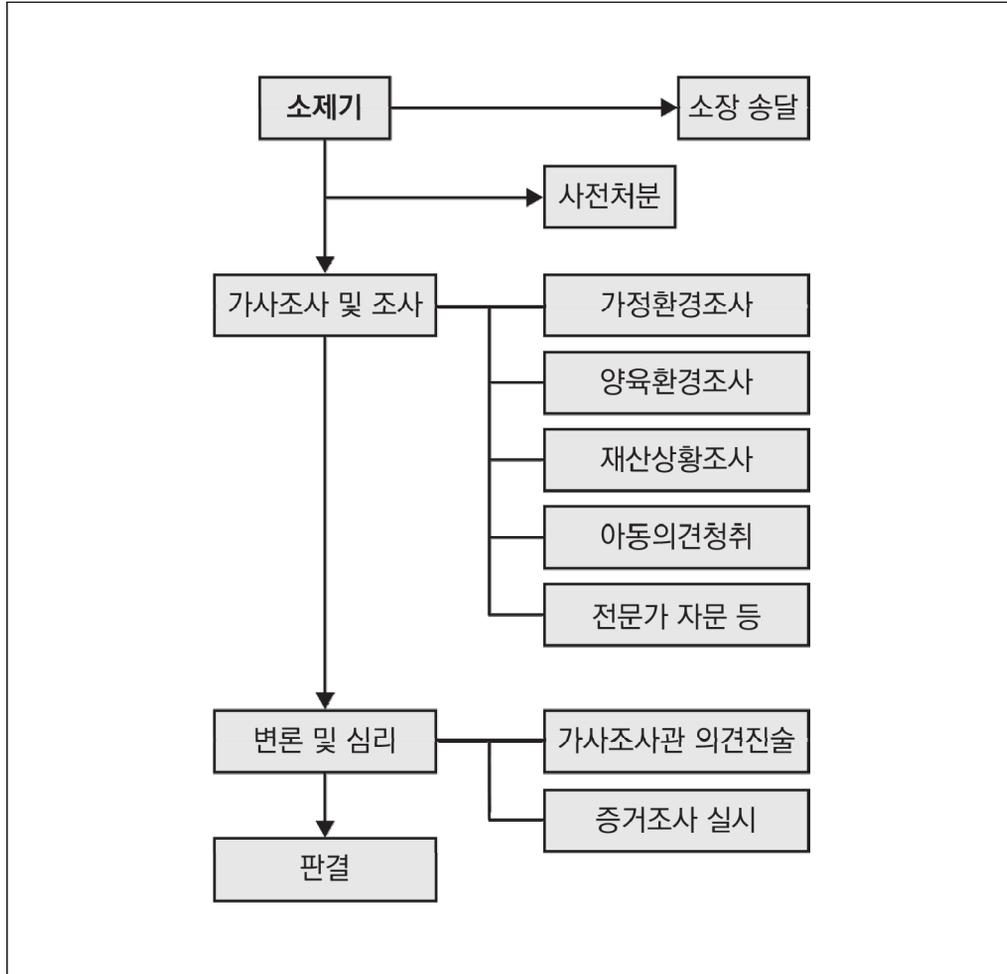
제6조의2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판사들과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수탁기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 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 기관, 제47조제1항제4호·제5호·제5의2호 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보호명령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가정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담당 판사·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상담소의 장,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수탁기관의 장, 검사, 경찰공무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진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가정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등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가정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개최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 내규로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아동보호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가정보호협의회는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아동보호협의회는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각 구성하고,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협의회의 각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 제4항의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 (외부기관 연계 담당 직원)

- ①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가사참여관, 조사관(전문, 전담 및 겸임 포함) 또는 일반직원(법원주사보 이상) 중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의 발휘를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업무별 담당자 또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은 가정법원장, 지원장 또는 가사담당법관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가사사건 및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의 상담(자문)에 있어서 상담(자문)위원 위촉·관리, 외부 상담기관의 지정, 상담권고, 상담(자문)절차관리, 상담(자문)의뢰, 상담(자문)수당지급, 상담(자문)위원 및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2. 협의상·재판상 이혼의 부모교육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절차안내, 기획·준비 및 실시, 부모교육 교재·프로그램 관리, 참여 확인 등에 관한 행정업무
 3. 부모·자녀관계 개선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
 4.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위촉·관리, 전문가진단절차 관리, 전문가 진단 의뢰, 전문가수당지급, 전문가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5.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의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일체의 행정 업무.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그림 3] 현재 이혼재판의 흐름도

가. 이혼과정에서 아동의 의사 반영 및 권리보장 통로 부재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자녀인 아동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임에도, 해당 아동에게 이혼소송의 절차와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이혼소송의 당사자이자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으며, 이혼소송의 당사자인 부모가 아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들이 전달한 아동의 의사가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아니면 부모에 의해 왜곡되거나 통제된 아동의 의사인지 혹은 아동이 부모의 눈치를 보아 표현한 의사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며, 이것만 듣고 재판부가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현행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서는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아동의 의사 청취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이혼, 조정이혼에서 아동의 의사나 아동의 상태 등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이혼절차 및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권리’의 행사를 차단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문제적이다. 특히 현행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만으로 아동의 의견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 아동의 의견은 이혼소송 중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의사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동이 부모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거나 아동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의견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혼사건에서는 정말 이제 조정절차를 하다보면 너무 잘 드러나는데, 양육비까지는 진짜 열심히 싸워요. 정말 돈 10만원 가지고도 난리를 치면서. 그런데 그것까지 딱 끝나면 이제 끝. 그래서 면접교섭은요? 그러면 그냥 통상 하는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은 이제 그 논의의 테이블 위에 아이를 올려놓는 것 아이가 드러나지 않으니깐 당사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 테이블 위로 아이를 계속 계속, 제일 많이 말했던 것이 법원은 아이 편이다. 법원은 아이 편이다. 이야기를 굉장히 양쪽 당사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나. 요보호아동 발견시 대응수단 부재

양쪽 부모 모두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도저히 양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양육친이 보복의 감정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대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어서는 해당 아동에 대한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이 예측됨에도 해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할 수 없다.

또 양육권을 주장하지만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나 조건인 경우 이혼 이후에 아동의 정상적인 양육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도 재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이혼과 친권·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만 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 법체계가 시스템에서 이러한 위기상황의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 아동들을 이대로 두고 이혼판결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혼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시설에 맡겨지는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를 보도한 언론기사들²³⁾이 있었는데, 이처럼 시설에 맡겨지지 않고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 까지 생각하면 이혼 이후 양육권자에 의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가령 부모의 불화로 사건본인이 집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부모의 불화가 사건본인에 대한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확대되는 경우 이 사건들은 각 다른 사건번호를 가진 다른 사건들(이혼과 소년보호, 이혼과 가정폭력, 이혼과 아동학대)이지만, 각 사건마다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각 가정 단위로 하나의 솔루션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가사소송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다. 이혼절차에서의 갈등 증대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

이혼분쟁이 악화되면서 면접교섭 문제, 부모따돌림문제, 양육비 문제 등 부부의 갈등을 아동에게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면접교섭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상대방과 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주는 등의 행동으로 사실상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상대방에게 할 말을 사건본인에게 전달하도록 시키기도 하고, 사건본인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빼내어 오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동에게 “상대방을 만나기 싫다,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학대했다, 상대방의 가정 폭력을 목격했다.” 등의 진술을 시키고 녹취하는 등의 행동으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23) 살기 위해 자식 보호시설 맡겨(2005. 9. 23.),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050923085614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이혼고아 한해 1,000명... 급증세(2005. 9. 21.),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513>), 진짜 고아는 거의 없어요..이혼·생활고에 시설 맡겨져[가정 해체로 부모 품 떠나는 아이들](2019. 5. 2.), 세계일보(<https://m.news.zum.com/articles/52239943>,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7.5명은 부모의 양육포기(2021. 5. 21.),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105211115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늘어나고 있다²⁴⁾. 또한, 아동을 진심으로 양육하고 싶기 보다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복수심에서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온 후 제대로 키우지 않거나 학대하여 사망사고에 까지 이르는 아동학대사건들까지 있었다.

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면접교섭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라면서 무조건 이행하라고 하지만, 면접교섭의 과정에서 가정폭력이 반복될까 두려운 당사자가 사건본인을 못 만나게 하거나 그런 상황임에도 별다른 안전장치없이 면접교섭을 명하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쌓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 이를 두려워한 당사자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잠적하거나 무조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사건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억지로 사건본인을 인도하거나 강제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갈등은 더욱 고조되기만 하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면접교섭을 억지로 하도록 하였을 때 만약 단한건이라도 면접교섭의 기회에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건본인이 평생 겪을 트라우마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이를 예측하지 못한 채 만연히 면접교섭을 명한 재판부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면접교섭의 기회에 일어난 무서운 사건들의 뉴스는 국내국외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한다²⁵⁾.

이렇게 이혼절차는 부부 간의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아동에게는 또 다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24) 이에 대해서 이른바 ‘부모소외증후군’, ‘부모소외장애(Parental Alienation Disorder)’, 부모소외 관계문제(Parental Alienation Relational Proble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사단법인 한국아동 청소년심리지원협회(2020),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청취 방안, 법원행정처, 183쪽.)

25) 면접교섭 중 3세 딸 앞에서 처가 식구와 몸싸움..아동학대 인정돼 (2024. 7. 27.),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7/27/2XS7CBCSB5AZXL46QR5AI6M7BA/?utm_source=chatgpt.com: Father who killed 3 daughters was ‘active dad’ but the ‘system failed’ him, ex-wife’s attorney says (2025. 7. 6.), ABCnews, https://abcnews.go.com/US/father-killed-3-daughters-active-dad-system-failed/story?id=122550676&utm_source=chatgpt.com: 11-year-old stabbed to death after Disneyland vacation during custody visitation, officials say (2025. 3. 21.), FOX11, https://www.foxla.com/news/oc-woman-charged-sons-stabbing-death-santa-ana-hotel?utm_source=chatgpt.com

라. 가사조사관, 위탁기관 등 인프라의 문제

조정조치, 부부상담을 위한 가사조사관, 위탁기관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안전한 면접 교섭을 위한 이음누리센터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한정되어 있다. 사건본인들의 입장에서 교육과 지원제도와 병행의 어려움도 있다.

현실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인성을 겸비한 가사조사관이 각 가정법원마다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파악하려면 가사조사관의 도움없이 양측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은 지방으로 가면 더욱 심각하다. 2024. 7. 1. 기준 전국 가정법원 및 지원에 배치된 가사조사관의 수는 223명인데, 전국 53개 가정(지방)법원 및 지원 중 속초·공주·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지원에는 조사관이 한 명도 없어 인근 지원에서 주 1회 순회를 오며 업무가 이루어지며 일부 지원은 이 순회조사마저도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²⁶⁾.

〈표 5〉 법원별 가사 조사관 현황

(2024.7.21기준)

	조사직무직렬 (전문조사관)	법원사무직렬 (전담조사관)	합계
전국법원	198	24	222
서울가정법원	42	10	52
인천가정법원	14	1	15
수원가정법원	17	2	19
대전가정법원	10	1	11
대구가정법원	13	1	14
부산가정법원	14	2	16
울산가정법원	5	0	5
의정부지법	7	0	7

26) 53개 법원 중 7곳, 가사조사관 0(2024. 7. 3.),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9596>

	조사직무직렬 (전문조사관)	법원사무직렬 (전담조사관)	합계
춘천지법	2	1	3
속초지원	0	0	0
청주지법	4	1	5
제천지원	0	0	0
창원지법	4	1	5
전주비법	3	1	4
제주비법	2	1	3
장흥지원	0	0	0
남원지원	0	0	0
의성지원	0	0	0
영덕지원	0	0	0

*전국 정원 223명 중 1명 공식 출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히 전문조사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가사사건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불균형 및 전문조사관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가정법원 단이 아니고서는 지원은 아마 1인 조사관 체제이고 판사님들도 사실 그런 상황이어서. 조사명령이 근데 그만큼 없겠쥬. 사실 조사가 다 되어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건이 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조차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보호, 아동보호까지는 손도 못 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현직 가사조사관 A

“하나는 조사관의 인력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요. 특히 지역은 조사관들이 워낙 적어서 한 사람 조사관에게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적인 문제인데. 조사관을 어떻게 성장시키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역에 있는 조사관들은 신규 조사관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경력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조사²⁷⁾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 한 15년의 경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고 아우를 수 있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27) 가령 이혼사건에서 아동보호나 소년보호 사건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판사들은 이 사건들을 모두 살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한 가사조사관에게 이혼과 아동보호, 소년보호, 양육조사 등을 모두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현직 가사조사관이 답한 내용이다.

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 쪽으로 소년보호를 가게 되면 소년보호 사건에서의 부모 갈등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소년부터 시작한 조서관은 가사로 넘어오기 전에 오직 이 아이의 비행만 보여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갈등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조서관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모습 또 해결할 수 있는 방향도 되거든요.” - 현직 가사조서관 C

또 사법기관인 가정법원에서 복지적 기능을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리검사 및 지원, 상담, 양육지원, 조정 기타 관련 역할이 가사재판에 필요하나 직접 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될 것인데, 각 재판부가 재판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수단과 이에 맞는 외부기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외부기관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과의 위탁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으며, 지자체나 다른 외부 자원을 법원이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가정 내의 문제로 여러 사건이 연결되어 가정법원에 들어온 경우 가정법원 내의 자원을 모아 공동조사, 공동판단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각 사건을 각각의 방법으로 처분을 내려 이른바 기성복처럼 사건을 법률에 맞춰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정에 맞게 통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으로서 맞춤형 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솔루션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방식의 통합적 해결을 시도했던 법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의 큰 벽을 넘어 판사들과 조서관들의 노력으로 유지하는 제도인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처분이 그 가족에게 적합한 옷을 맞추는게 아니라 기성복에 때려 맞추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판기라고 표현합니다 (...) 아동보호사건이 들어왔는데 소년사건이나 이혼사건이나 연결되었거나 통합할 수 있게 하는, 예전에 저희가 솔루션 위원회라고, 여러 사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여러 판사님들과 조서관들이 함께 모여서 해결책을 찾는 솔루션 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다가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끝내는 약간 해체되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관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보거나 공동조사와 같은 특별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조사하게 하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각 재판부에 보고하는 방법을 만든다거나 베테랑 조서관을 한 사람 지정해서 이런 사건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재배당해서 하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 현직 가사조서관 C

마. 가정법원의 문제

1963. 10. 1. 최초로 가사·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래 2011. 4. 11. 부산가정법원, 2012. 3. 1.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과 산하 16개 지원이, 2016. 3. 1. 인천가정법원과 부천지원이 개원하였고, 2018. 3. 1.에는 울산가정법원이, 2019. 3. 1.에는 수원가정법원과 산하 5개 지원이 각 개원하였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한다²⁸⁾. 2025년 현재 전국 7개 가정법원에 약 120여명의 법관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2025. 2. 28. 개정 별표 기준).

2024년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 건수는 500여건에 이른다고 하며²⁹⁾, 이러한 사건량은 독일의 5.2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사조사관 등의 지원까지 충분하지 않다보니 가사 사건의 처리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법관들의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³⁰⁾. 이런 가정법원 법관의 상황은 재판부가 이혼재판을 하면서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사건을 충실히 파악하고 조치를 고민할 여지조차 없게 만든다.

또 전국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는 2025년 현재 총 18개가 운영중인데,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서울),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구리시), 인천가정법원 ‘도담도담’, 수원가정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온담뜰’, 대전가정법원 ‘마음뜰’, 대구가정법원 ‘해맑음’, 광주가정법원 ‘동심’, 전주지방법원 ‘도란도란’, 울산가정법원 ‘별담소담’, 부산가정법원 ‘징검다리’, 제주지방법원 ‘혼디이음’ 등이 있다³¹⁾. 면접교섭센터 역시 대도시 위주로 마련되어 있고,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은 부모가 모두 동의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며 재판부가 명하여도 양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28)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 사법부 소개 - 전문법원, <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specialized/index.html>

29) 한국 판사 1명당 연간 464건 사건 처리...주요국의 2~5배(2023. 5. 22.),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17/119327796/1>), 법원예산은 제자리인데... 연600만건 접수(2024. 3. 28.),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197101>)

30) 대법원(2023), 2023 사법연감

31) 대한민국법원 면접교섭센터 누리집 <https://mannam.scourt.go.kr/index.do>



[그림 4] 면접교섭센터 이용 절차

바.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이혼소송 절차 속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혼절차 내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시스템 내에서 요보호아동이 발굴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이혼절차 내에서 최소화하지 않으면 이후 이를 치유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 부모의 갈등이 아동의 상처로 전이되는 것은 아동인권적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는 점, 사건본인을 이혼분쟁의 전리품처럼 이용할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서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가. 법원의 적극적 역할

법원은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기관이지만,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이혼절차 내에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아동이 최소한의 상처를 입고 이혼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³²⁾,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의견 진술권 및 아동의 참여권은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혼절차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법원은 사법적, 공적 개입이 가능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혼 관련 재판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또는 명백히 부모 양측이 모두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현재 법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침 담당판사가 특별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건의 수도 넘치고 관할, 규정, 조사관 등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2016. 12. 대전가정법원에서 연구한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해야 하는 사례로 ‘이혼소송재판중 부모가 모두 아이를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므로 부모 중 누구도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경우 이혼재판절차에서 부모 중 일방으로 양육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단으로 볼 때 부모 모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자는 의견인 것이다. 즉 아이가 부모 중 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범죄적 상황이 일어나 수사 기관에 입건이 되거나 지자체에 요보호아동으로 인지되지 않은 경우, 아동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부모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 재판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32)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제12조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견해는 그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은, ‘사무분담을 조정하여 모든 재판부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나, 현실적으로는 ‘판사의 사무분담만 조정하여 어느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후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사건을 이첩하여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가정법원이 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아동 보호의 측면에서까지 개입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나 가정법원의 현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대전지방법원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각 호가 현재의 9가지만으로는 다양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는 경우까지 포섭하고자 한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과 부모가 함께 진행하는 가족상담조항’, ‘부모에 대한 이행사항 명령’, ‘아동이 부모와 분리 후 면접교섭에 대한 조항’, ‘비양육친의 양육비 부담 조항’,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의 복지적 기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법기관이어서 행정적 조력과의 결합이 없이 법원만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종교단체에 의존하는 위탁기관을 넘어서서 더 많은 유능한 위탁기관들의 발굴,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행이 가능한 위탁기관과의 연계 및 기획, 각종 진단과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들의 위촉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의 근본적 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업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관의 일선공무원화(국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행정작용을 하는 공무원)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고,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 원칙과도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사법절차적 정의 즉 과연 가정폭력이나 자녀방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엄밀한 사법적 판단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는 비판이 있다³³⁾.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아닌 복지적 지원의 연계나 보호처분을 하는 것까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33) 권재문(2012),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가정법원의 바람직한 기능- 미국 통합가정법원(UFC)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vol. 130, 11~12쪽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³⁴⁾, 사법작용을 넘어서는 행정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아동보호를 하게 될 것이어서 가사법관의 일선공무원화를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가정법원도 아동보호를 대원칙으로 하여 존재하는 기관이고 그런 절차에서 보이는 요보호아동을 그대로 놓치는 경우 그 피해가 명백하고 증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정법원의 이러한 역할변화는 사회적으로 요구 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와 유사한 가족법 체계를 갖춘 일본과 대만에도 가정법원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일본의 가정문제정보센터(FPIC, Family Problems Information Center)는 법원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공익사단법인으로서 가족 및 비행청소년 등 상담사업, 조정절차사업, 부모자녀 면접교섭 지원사업, 후견·후견감독 등에 관한 사업, 공정증서 유언자 지원사업, 가정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양육비 상담지원센터 등을 시행하고, 대만의 가사사건서비스센터는 법원 내부에 있으면서 가사 사건 당사자 상담서비스, 미성년 자녀 절차지원, 사회복지 관련 상담, 이민 상담, 법률구조, 심리상담 등 가사부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⁵⁾.

나. 절차보조인, 면접교섭보조인 등 아동을 위한 제도

1) 절차보조인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데, 부부간의 의사만으로 아동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없이 시간만 보내는 식의 숙려기간은, 결국 부모가 아동의 의사에 대한 반영없이 아동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고 이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협의이혼, 조정이혼에서도 아동의 의사와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34)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학대사안이라면 수사가 개시되도록 신고를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은 법관 인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이다.

35)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와 연계담당자 운영 방안. 법원행정처, 5~6쪽

진행한 후에 이혼이 성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 2009년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절차법」(FamFG)은 친자관계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14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항상 그 신상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직접 자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지며,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그 성숙의 정도를 불문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의견의 청취가 요구된다. 한편 자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부모의 격렬한 갈등 속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충분히 발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복리 및 자녀의 이익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FamFG에서는 자녀의 의사의 대변을 위해 절차보조인(Verfahrenbeistand)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1997년 친자법 개정 당시 절차보조인제도를 도입한 기본적인 이유는 가사재판 절차에서 자녀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데 있으며, 가정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한 후 절차보조인의 선임여부를 결정하는데 ①법정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에 매몰되어 자녀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 ②그 재판절차가 자녀에게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녀 자신의 의사와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법원이 자녀와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의사와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임한다³⁶⁾. 어떤 사람을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대개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복지사, 아동심리전문가, 교육학전문가 등을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하고, 재판절차에서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자녀의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가령 미성년 후견인 선임하는 절차에서 아이들 의견듣고 하게 되어 있으니 그때는 이제 절차보조인 역할을 하는거죠. 예를 들어서 삼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애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독일이 보니까 절차보조인을 하는 직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동심리학 전공한 사람 그 다음에 아동복지 전공한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예요.” - 현직 로스쿨 민법교수

“가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절차보조인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측에서 다 제의한 것이었거든요. 법원에서 그거 꼭 필요하다. 면접교섭 안되서 나중에 비송사건 와가지고 양육비 청구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하면서 얼마나 적대시하는데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면 (안 그럴 텐데)..”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36) 김상용(2008),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가족법연구, 22(3), 129-132쪽

이에 대해서 2015년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16조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20조에서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2022. 11. 법무부에서 추진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도 이어지는데,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가 사건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발의³⁷⁾된 바 있는데, 이에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보조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신속히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절차보조인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1.)의 선행연구에서 매우 자세히 연구되어 있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사사건에서 법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녀의 면담 전 기록열람 및 조사, 자녀와의 면담, 법원에 서면 최종보고서 작성 및 진술, 법원의 진술청취(법관이 자녀의 진술을 청취할 때 동석하고 조력함) 등을 주요업무로 보고 있다³⁸⁾. 이 선행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자녀와 절차보조인의 관점이 다른 경우'이다. 이

3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누리집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X2K2R1X1Y1S0P1T4N1S2I2Z3Z4Z7J2

38)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가사소송법상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법원행정처, 80~99쪽

연구에서는 ‘절차보조인은 자신이 확인한 자녀의 이익을 자녀와의 면담과정에서 공유 하면서 자녀를 이해시키고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의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절차보조인은 자녀의 의사와 자신의 의사를 분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관점을 갖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다³⁹⁾. 이에 대해서 매우 동의한다. 오류나 오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동의 생각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가장 좋은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가사소송이 추구해야 아동인권보호의 여정이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면접교섭보조인 제도

영국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나 숙박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광범위하게 간접면접교섭을 실현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중 관리적 면접교섭방식은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아서 자녀의 복지를 침해하거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례에서 시행한다. 영국에서는 1985년 최초로 면접교섭센터를 개소하여 관리적 교섭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면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영국의 아동 면접교섭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은데,⁴⁰⁾ 단순히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의 원인평가까지 하고 있다.

〈표 6〉 영국의 아동 면접교섭센터 지원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지원형 면접교섭	부모나 친척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아니어서 원만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를 센터의 인력이 중립적으로 관여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부모가 집단 형태로 교류함
관리형 면접교섭	부모와 만남에서 아동이 위험에 직면할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례에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확보하면서 함께 살지 않은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구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문가가 법원의 명령서 등 관계 문서를 확실히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상황을 계속 관찰하면서 면접교섭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전문적 평가에 근거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종류, 내용의 변경도 가능함

39)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90~91쪽

40)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34~36쪽

서비스 유형	내용
관리형 면접교섭 평가	면접교섭을 지원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양쪽 부모 또는 일방의 부모와 면접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서비스
간접면접교섭	오랫동안 함께 살지 않은 부모와 아동이 만나지 않았거나 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위험 등이 있어서 직접 만나는 면접교섭 진행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례에서 편지, 문건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간접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함
면접교섭 동행	함께 살지 않은 부모가 공원이나 식당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할 때에 지원인력이 동행하여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하거나 관찰하는 지원서비스인데 법원 등에 만나는 장소의 정보, 아동의 반응, 함께 살지 않은 부모의 면접교섭과 관련한 이해 정도 등을 간략히 보고함
정보제공 면접교섭	아동이 함께 살지 않은 부모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신제 교류가 거의 없는 사례에서 자녀에게 부모를 알리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인수인계 지원	면접교섭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부모 모두 또는 한쪽이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례에서 양쪽 부모의 동의를 얻어 지원인력이 부모에게서 아동을 인수하고 인계하는 지원서비스

독일은 2009년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절차법」(FamFG)에서 면접교섭 보조인(Umgangspfleger)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면접교섭보조인이란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절차를 조력하는 사람을 말하며, 면접교섭을 안내하고 면접교섭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영향을 주어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된 면접교섭규정을 실행하거나 재판상의 위임으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면접교섭을 형성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 활동한다⁴¹⁾. 면접교섭 보조인은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자의 인도를 요구하고 어디에서 면접교섭을 행할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면접교섭보조인은 교섭의 준비시, 면접교섭권자인 부모로의 자의 인도시, 그리고 자의 반환시에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으며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정할 수 있다. 부모 간에 교섭의 태양(교류의 장소, 자의 인도 장소, 자가 소지할 의복, 자의 반환의 약속 등)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보조인은 부모 간을 중재하거나 자기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면접교섭보조인은 면접교섭에 동석함으로써 그리고 가정법원에 대한 보고를 통해 면접교섭의 실현에 대해 일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접교섭보조인에게서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동거하는 부모의 일방으로부터의 자의 인도를 강제할 권리는

41) 서종희(2020).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제도 모색-독일법을 참조하여: 법학논총, 27(3), 192~193쪽

없다⁴²⁾.

다만 ㉠자 또는 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시까지 부모와 자 간에 교류가 일절 없었거나 장기간 중단되었던 경우, ㉢부모의 교육능력의 부족 혹은 결여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자에 대한 방임이나 자에 대한 폭력행사와 같은 면접교섭권자의 인격에 우려할 만한 점이 있는 경우, ㉣자의 탈취가 우려되는 경우, ㉤그 밖에 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특히 성적 학대의 가능성)에는 가정법원은 면접교섭동반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아동청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한다고 한다⁴³⁾.

미국에서 면접교섭관리(supervised visitation)는 제3자의 관리 아래 아동과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만나게 하는 서비스로서, 면접교섭관리 프로그램은 1982년에 처음 시작해 1991년에 면접교섭관리연합을 결성하고, 1996년에는 연합에서 제정한 면접교섭관리 기준과 지침(standard and guidelines for supervised visitation)을 보급했다. 면접교섭관리의 서비스 형태는 단순 인수인계 관리로부터 고위험 사건의 밀착관리, 면접교섭 지원, 치료적 면접교섭까지 다양하며, 부모와 자녀의 교육과 치료를 결합한 더 집중적인 프로그램도 있다. 통상 전문가가 시행하는 면접교섭관리의 대상자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문제가 있는 부모로서, 면접교섭이 오히려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담당한다. 이혼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면접교섭시간과 장소의 변경을 두고도 법원에 계속 제소하는 대상자가 있고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부모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나 성격장애가 의심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도 상대부모를 통제하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강해, 소송이 끝난 후에도 오랜 치료적 개입과 교육, 조정, 중재를 병합한 서비스가 필요하다⁴⁴⁾.

이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부모 조정자(parents coordinator)’ 등으로 칭하는 가정법원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들은 부모와 아동을 만나 분쟁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차이를 조정하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모가 합의한 사항을 법원이 명령하지만 어떤 지역은 한쪽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명령하기도 한다⁴⁵⁾.

우리나라도 최근 부부간의 갈등을 면접교섭에 대한 분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부모따돌림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발생할 정도로 면접교섭에서 일방을 배제하려고 하거나

42) 서종희(2020), 203~205쪽

43) 서종희(2020), 200~201쪽

44)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25~26쪽

45)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22~24쪽

면접교섭의 기회에 자에게 타방에 대한 비방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이혼 절차 중에 계속되다가 이혼 이후에까지 이어지거나 이혼 이후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하여 자의 복리를 해치고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심지어 성학대로 인한 이혼에서도 당사자에게 면접교섭을 맡겨 두다보니,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거나 면접교섭 자체가 아동과 양육친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조차 이혼소송에서의 공방으로만 취급되고 말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2020. 12.)에 따르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에서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 또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혼소송 중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들의 불안과 위험이 가중됨’, ‘가해자는 이혼을 원하는 피해 배우자를 조종하고 회유, 설득하기 위해 자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없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이라고 기재하고 실제 아동의 피해사례들을 들고 있다⁴⁶⁾.

이에 아동의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접교섭시에 일어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며 아동의 심리적 부담여부를 살피고 면접교섭의 갈등 속에서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도모하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말 가정법원에 있는 센터처럼 면접교섭을 하는 그 중간에 전문가가 관여한다는 측면에서라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해요. 아이가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면접교섭보조인제도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이미 2015년도에 제기되었었는데 이후에 법무부 안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달드립니다.” - 현직 가사조사관 C

이에 대하여 2015년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양육친과 비양육친 모두에게 면접교섭의 중요성과 의무감을 일깨우는 한편, 자발적인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절차를 전반적으로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 제147조로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2023년 서울가정법원 국제콘퍼런스에서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판사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소개하였고, 싱가포르 가정법원 판사는 사회가족부의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는데, 한국에서도 ‘면접교섭보조인,

46) 허민숙(2020),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자녀면접교섭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19쪽

면접교섭동반명령 제도'의 도입이 강조되기도 하였다⁴⁷⁾.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8. 3. 2.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면접교섭보조인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⁴⁸⁾되었던 바 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권리이자 의무로서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지만, 이의 원활한 이행과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모니터링, 조력, 제재 등이 일정정도는 개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이 선임하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다. 가정법원의 관할 등 정비 및 전문법관의 양성

가정법원은 1심 합의부 사건과 단독사건을 처리하지만, 1심 합의부 재판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1심 단독 재판에 대한 항소심은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가정법원에 합의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원의 항소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8, 37, 40조). 그렇다보니 항소심에서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판을 하기 어려우며, 재산분할과 관련된 주장이나 사정변경이 조금 반영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처럼 가사사건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전문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동, 청소년, 가정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복지적 역할까지 생각한다면 전문적으로 가사사건에 대한 감수성, 지식, 의지가 있는 판사를 양성해야 한다. 아동의 다양한 심리와 발달단계에 따른 진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가정의 상황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법률의 테두리에 녹여서 찾아내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법관을 양성해야 한다.

이에 가정법원은 근본적으로 전문법관으로 구성하고, 1심, 항소심 모두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에서만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가정법원과 전문법관의 수를 늘리고 지역 단위까지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에도 적당한 수의 법관을 배치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사부라도 설치하여 전문성있는 법관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47) 서울가정법원(2023), 아동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과 분쟁해결, 서울가정법원 국제콘퍼런스 자료집
4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누리집

해야 할 것이다.

라. 가사조사관 등 인프라의 확충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탁기관의 발굴 및 확충에 더하여 상담기관, 양육지원센터, 이주민지원기관, 통역지원기관, 장애인지원기관 등이 더 많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사안들도 많아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간 기관들의 질적 차이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얘기되는 가사조사관의 문제는 시급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복지적 관점과 가족 전체적 관점으로 사건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려면 경험이 많고 노하우와 전문지식까지 갖추어야 하는바, 경력이 어느 수준 이상인 전문가조사관이 법원내에 많이 남도록 승진기회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각 법원과 지원에서 근무할 현실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숫자 이상⁴⁹⁾의 전문가조사관이 확충되어야 한다. 가사조사관의 지역교류나 기관교류, 교육·연수의 확대 등을 통한 역량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의 공유나 가사조사관 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보고서 같은 방식에서의 통합적 접근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때의 공유가 한 조사관의 선입견이나 불충분한 조사가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코트넷이나 이런 데서는 기술적으로는 당사자 이름 치면 사실은 그게 남아 있긴 한거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끌어다 올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조사하고 다시 조사하고 저는 조사관 역량 강화 다 중요하지만 그 공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예요 같은 기관에서 계속 거기다 업데이트를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게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그리고 이제 이쪽 법원에서는 이혼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쪽 법원에서는 소년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법원이 다른데 그러면 조사보고서를 공유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는거죠.” -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49) 안문희(2018),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160쪽에 따르면 가사전문법관 1호 손왕석 변호사는 최소한 500명 정도의 조사관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위 연구와 현재의 시간 차이 및 복잡한 사건의 양상을 고려한다면 현재는 500명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가사조사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안문희(2018)의 연구⁵⁰⁾에서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방안은 ①전문조사관의 선발 및 조직체계의 재편(조사직렬로의 일원적 편제), 조사관의 팀제 운영, 전문조사관의 증원, 조사국의 설치, ②지역 단위의 순환보직 및 신규채용자의 단독배치 금지, ③사실조사 의견서의 도입을 통한 조사보고서의 비공개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사실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로 한정), ④가사조사 기간의 효율적 이용을 들고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법원이 관리하는 면접교섭센터나 면접교섭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을 늘려야 하며, 이음누리센터와 같은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면접교섭을 현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시행된 면접교섭 모니터링을 통해 법원에서 일정한 제재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상담프로그램, 심리검사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관계회복프로그램, 면접교섭프로그램, 치료프로그램, 모니터링프로그램, 가사조사 매뉴얼, 면접교섭 매뉴얼, 양육지원서비스, 민간연계모니터링시스템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가정법원에 충분한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

마. 사후 현황 조사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 양육비지급 등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지만,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아동의 복리는 당연히 악화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매우 위협하게 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사망사건 중에 이혼 후 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친과 그 양육친의 동거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는 이혼판결 이후 면접교섭의 이행에 대해 아무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평택 아동학대사망사건’은 법원의 면접교섭 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건이다⁵¹⁾. 7세 신00군의 친부가 면접교섭권 이행을 거부하여 친모는 학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모는 수시로 폭행하고 하루 한끼도 주지 않는 등

50) 안문희(2018), 153~175쪽

51) “친모도 몰랐던 원영이 학대...면접교섭 관리 강화해야”(2016. 3. 15.), 뉴스원(<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2602558>)

심한 학대를 해오다가 한겨울에 온몸에 찬물과 락스를 뿌린 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야산에 버린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 아동은 유치원도 다니지 못했고,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처럼 학대를 당하다보니 전혀 구조될 가능성이 없었다. 친모는 면접교섭을 애타게 원했으나, 친부의 완강한 거부로 끝내 아들의 살아있는 얼굴은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이혼분쟁 이후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면접교섭을 행사하면서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의 면접교섭을 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양육비 또는 양육친에 대한 걱정 등을 이유로 아동이 이런 식의 면접교섭에 대한 불편함이나 고통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이혼분쟁을 하는 동안에는 양육권을 고집하였으나 막상 이혼으로 양육권을 득한 이후에는 무기력에 빠지거나 정신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양육의 의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애당초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였던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재혼을 하여 가정이 생기면서 경제적 문제 또는 재혼가정에 눈치가 보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갈등이 생겨 아동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아동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막고자 법원은 판결에 그치지 않고 이런 면접교섭, 양육비지급, 양육현황의 상황들에 대해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67조에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도 이러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제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현황조사와 모니터링까지 가능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수준으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위화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정신적 문제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관리감독규정, 조사권한규정, 실질적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제재규정, 공공의 개입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은 권리이자 의무이면서, 동시에 아동의 발달과 양육상태에 대한 점검과 확인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아. 소결론

이상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그 중에 몇 가지는 법의 개정을 수반한다. 위 아동 학대 부분에서 말하는 형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아래 표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본다.

〈아동학대처벌법〉

현행	개정법률안
<p>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p>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p> <p>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p>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p>4의2. 위 4호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법원이 정한 방식의 면접교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p>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p> <p>5의3. 피해아동 및 행위자 등 가족구성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필요시 가족상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현행	개정법률안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10. 행위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명령 기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가사소송법〉

현행	개정법률안
[신설]	<p>제**조(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①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이하 “절차보조인”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절차보조인을 선임해야 한다.</p> <p>②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나이, 심리상태, 가사사건의 난이도, 소송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심리학·아동학·복지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한다.</p> <p>③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④ 절차보조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사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p> <p>⑤ 절차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p> <p>⑥ 절차보조인은 재판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술을 보조하고 미성년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미성년자를 도울 수 있으며, 가사조사관과 협의하여 가사사건을 위한 조사를 협력할 수 있다.</p> <p>⑦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해임할 수 있다.</p> <p>1. 절차보조인이 임무수행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p>

현행	개정법률안
	<p>2. 절차보조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p> <p>3. 그 밖에 절차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p> <p>⑧ 절차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절차, 수당 지급, 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조(면접교섭보조인) ① 가정법원은 원활하고 안전한 면접교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면접교섭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② 면접교섭보조인은 자녀의 의사 확인, 면접교섭방식 및 시간에 관한 당사자 간 의견 조정, 면접교섭 준비, 면접교섭의 동행, 면접교섭 전후 자녀 인도, 자녀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 전반적인 면접교섭 절차를 조력하되, 부모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면접교섭보조인은 부모간을 중재하고, 중재가 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보조인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면접교섭보조인은 면접교섭시에 동석해야 하며, 이때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우려할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되는 경우 면접교섭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⁵²⁾.</p> <p>③ 면접교섭보조인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 후 면접교섭 결과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한다.</p> <p>④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해임할 수 있다.</p> <p>1. 면접교섭보조인이 임무수행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p> <p>2. 면접교섭보조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p> <p>3. 그 밖에 면접교섭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p> <p>⑤ 면접교섭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절차, 수당 지급, 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52) 독일의 면접교섭동반명령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여, 면접교섭이 실제 아동의 복리에 해가 되거나 아동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였다.

아울러 절차보조인, 면접교섭보조인과 비슷한 아동보호제도들에서 예산 등을 이유로 수당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역량있는 인재들은 빠져나가고 전문성이 없거나 생계만을 생각하면서 활동하여 나중에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를 보았다. 결국 제도는 운영에서 성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바,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상처입은 아동은 소년사건으로 이어지거나 각종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 투입하는 예산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예산보다 필요하고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IV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그림 5]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흐름도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시행령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4. 12.]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p>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감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p>
<p>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2. 30.>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거나 요청할 때에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유,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p>
<p>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2.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3. 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나. 가정보호심판규칙

<p>제2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따른다.2. 제1호의 가정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p>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p> <p>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 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변경 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취소·변경 및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p>④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가정폭력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p> <p>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p>

<p>제16조(조사의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심문 등을 할 수 있다.</p> <p>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의견조회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3. 법 제36조의 협조·원조 <p>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p>제28조(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 감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이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6조(보호처분) ① 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p> <p>②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각 경고하여야 한다.</p>
<p>제49조(감호·치료·상담 위탁) ①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9조의2 (집행감독사건)

-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 ②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 ④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3조, 제54조제3항⁵³⁾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할 수 있다.
- ⑥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제9조의3 (감호 등 상황의 보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수탁기관, 보호관찰소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집행 상황을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회봉사·수감명령을 이수한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2.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10일 안에 보고
3. 감호·치료 결과는 1개월마다 보고
4. 상담 결과는 상담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
5.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6. 행위자의 이탈, 소요, 난동, 폭행, 자해,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2011-1)

제13조의2 (집행감독사건)

-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받는 즉시 개시한다.
- ②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 ④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24, 제67조의9제3항, 제67조의25, 제67조의26제2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2개월마다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53) 가정보호규칙 조문의 변경에 따라 제54조, 제55조제3항을 의미하나, 아직 조문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3항, 제4항, 제55조의3 제1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별표 1]

감호위탁 보호시설

순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소
1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2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9
3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4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5	경기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
6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
7	강원동부지부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56
8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19
9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47번길 118
10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갈서구 성서동로 325
11	경북지부	경북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57
1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13	경남지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14	관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8
15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쇄고개옛길 127-4
16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

바.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p>제3조(대상사건) 검사는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가정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행위자의 범행 경위, 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벽이나 약물·알코올 남용 등의 습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초범이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제4조(상담·교육기간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전력, 재범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20회 이내, 4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10회 이내, 2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p>②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16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8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p>제7조(위탁 상담소·보호관찰소 지정) 검사는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상담·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상자가 타 지역 상담소나 보호관찰소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주거지 이외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이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p>

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p>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 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5. 6. 22.>
[전문개정 2007. 10. 17.]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다양한 가족형태, 복합적 사건들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현재의 가정폭력 법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초기부터 대응을 하거나 갈등 해소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고 더 사건이 커지기 전에 예방적 개입도 어렵다. 경찰의 개입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사건이 주로 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바, 가족간에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지 않으나 가정폭력으로 고통스럽거나 향후 사건이 커질 것이 예측되는 사안에서의 예방적 차원의 개입은 불가하다.

또 취약한 가족구성원간, 즉 미성년 형제·자매 간의 가정폭력, 조손가정의 가정폭력, 한부모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뿐 아니라 행위자도 미성년자이거나 노인이거나 취약한 상태의 경우 피해아동이 이를 문제제기하기가 어렵고, 문제제기하더라도 오히려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성 문제에 대하여 현행 법률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생활비, 양육비, 부양료 등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던 구성원이 행위자인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생활비 등의 문제로 인해 가정폭력을 당하고서도 급히 처벌불원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고통을 수인하게 된다. 생존과 생계는 현실적 문제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생활비나 양육비의 문제로 인해 더욱 가정폭력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고생했는데 배신했다면서 행위자로 하여금 더 크게 분노하게 하여 피해자로서는 행위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사사건의 절차가 너무 갈등 중심이거든요.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아예 초기에 개입을 잘 해야 된다. 초기부터 그 가족의 특성에 맞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초기에 교육받고 그 다음에 재판하고 조사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갈등이 늘어나는 문제가 계속 커지거든요.” - 현직 가사조사관 C

한편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소년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이 있고, 이혼사건도 같은 가정에서 있기도 하며, 소년사건도 반복되거나 형제, 자매 순서대로 일어나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는 소년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사실 그 배경에는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많다. 이런 경우 하나의 사건을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궁극적 해결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통합적 가정법원모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의 법원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수단 부족

행위자의 건강문제, 특히 정신건강문제 또는 중독문제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음주, 약물, 정신장애, 무기력, 자존감 결여, 분노나 적대감 등)의 경우 실질적 개선을 위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원이 행위자에게 치료위탁결정을 하더라도, 수탁기관인 의료기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행위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곤란해하거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들면서 인권침해 시비에 걸리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수록 현실은 더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정신질환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행위자가 그대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여 사건화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특성상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행위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아동은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자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법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와 아동이 함께 머무를 쉼터, 가족이 다 함께 진행가능한 상담,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계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가정예의 개입 및 사회복지프로그램 발굴·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인 수준의 상담이나 공동생활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집중케어, 집중치료가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프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아동이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던 가정폭력을 오랜 기간 당하였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라면, 정신건강문제는 피해자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면서 경찰에 3차례나 신고하고서도 막상 경찰조사과정에서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는 아들과 함께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⁵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망과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아동의 양육책임을 피해자에게 오롯이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예라 하겠다.

또 가령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 간 심한 가정폭력이 있었고 부모는 이를 그대로 방치해 왔던 경우, 현재의 가정폭력 법제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인 일방을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구성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행위자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근본적 해결은 하지 못하게 되고, 행위자는 다시 고통스러운 공동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 법규정의 현실성 미비

치료를 강제해야 하는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경우 특히 해당 가정의 아동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치료를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 법원은 이런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려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받아들 치료기관이 많지 않고 행위자가 치료에 진심이지 않은 경우 효과가 없게 되며 그나마도 1년이 최대로 가능한 기간이라서 1년 안에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현실에서의 가정폭력 양상 및 행위자,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법규정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또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결국 최대 3년까지 인정될 수 있는데, 치료위탁같은 명령은 불가능하고 주거에서 퇴거하거나 접근금지 정도만

54) 가정폭력 시달려온 20대 여성과 아기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2017. 2. 6.), TBS뉴스(https://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200324)

가능하다. 이조차도 실질적인 위험이 없이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가정의 아동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렵고, 두려움 속에서 함께 살게 될 뿐이다.

라.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절차 간 이분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의 공백

가정폭력은 형사절차로 가는 경우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종료되기도 하고, 보호절차로 가는 경우 행위자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아동이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인 경우 아동에게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죄책을 덜려고 하거나, 아동이 부담을 느껴 스스로 진술을 하지 않기도 한다.

수사 후 보호절차로 가는 경우 가사조사관의 조사로 아동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처벌불원이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비율도 매우 많다. 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교육이나 상담의 기회조차 없이 선처를 받게 되므로 행위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나 진술자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화를 내는 사례들도 많이 보게 된다.

한편 보호절차로 가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을 통해 조사와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또 보호관찰소장에 대한 조사요구도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행정기관, 상담소 등 단체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1조, 제22조, 제33조). 그런데 이처럼 보호사건으로 가는 경우 충분한 조사 및 심리가 가능하도록 법원을 조력하는 조사관이나 전문가, 위탁기관이 충분하지 않다.

마. 소결론

이처럼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제에서는 다양한 가정폭력양상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생활비, 양육비 등 현실적 문제들을 생각할 때 실질적 보호를 하기가 어렵다. 특히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아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하며, 가사조사관, 위탁기관, 전문가들의 지원도 한계가 있어 문제이다.

3. 개선방안

가. 법원의 적극적 역할

다양한 가족형태, 그로 인해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 가족내의 문제라는 특수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배경이 되는 문제들을 외면한 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이 이를 달리 사건화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 결국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으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가정보호사건에서 해당 가정폭력이 부부간에 한정되는 것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간접적 피해자이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이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당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령 부부 중 일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머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상태가 아니거나 다른 사정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한 경우, 법원은 해당 아동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다.

또 현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이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동할 수는 없으나, 아동보호를 위해서 직권으로 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판사가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에 ‘아동과 부모가 함께 진행하는 가족상담조항’, ‘부모에 대한 이행사항 명령’, ‘아동이 부모와 분리 후 면접

교섭에 대한 조항’, ‘행위자의 생활비, 양육비, 부양료 지급조항’,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해자 및 다른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판사의 판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으로 또는 다른 준수사항을 명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적극적 역할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직접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에서는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기능과 관련하여 ‘전담지원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법원의 영역 중 ‘재판의 이행 또는 집행과 연관된 영역’은 법원 내의 전담지원기관에서 가정법원을 지원하지만 개별 가정법원 및 개별 법관의 업무와는 분리된 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 전담지원기구는 동시에 가정법원 조사관의 직무역량강화에 직접 기여하면서, 간접적으로는 가정법원의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다른 기관(보호사건절차에 관여하는 경찰, 검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수행에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가령 보호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견-조사-송치-보호처분-집행이 연속되고 누락 없이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절차가 될 수 있게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면접교섭센터, 교육센터, 후견센터 등의 업무도 장기적으로는 통합해서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⁵⁵⁾. 실제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기능을 모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복지적 기능을 사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아동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아동청(Jugendamt)이 있다. 아동청은 1922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어 공적인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⁵⁶⁾. 아동청의 업무는, 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관련 상담, 탁아소와 유치원의 자리를 제공하고 양육 관련 상담, 방과 후에 부모들이 직접 돌보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학교와 직업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아동이 관련되어있는 재판절차(형사재판, 친권과 양육권에

55)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22), 529-531쪽

56) 김상용(2013). 독일 아동청의 역사, 조직 및 임무: 법학논문집, 37(1), 322-324쪽.

관한 재판절차, 이혼절차, 입양절차 등)에 관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 친권과 면접교섭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에게 상담과 지원서비스 제공,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는 경우(부모가 사망했거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후견,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지청구를 자녀의 대리인으로 수행, 입양재판에 있어서 아동청의 의견 청취 등이 있다⁵⁷⁾.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각 주마다 주아동청이 있고 그 주의 아동복지업무를 관장하는데, 아동청은 아동을 둘러싼 갈등, 아동양육 및 궁핍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신뢰가 크다고 한다⁵⁸⁾.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마땅한 위탁기관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장에서 민간기관의 한계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 관련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는 가사분쟁을 대심소송구조에 따른 민사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해왔으나, 사건처리의 초점이 이혼보다는 자녀의 복지에 맞추어지게 되면서 자녀의 최대 이익(the best interest of child)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간행동과학 분야 전문가의 개입을 확대해왔다. 그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로 이혼 부모교육, 이혼조정, 면접교섭관리, 양육평가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법원 복지서비스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거쳐왔다. 미국의 초기 가정법원 복지서비스는 주로 부부 화합을 목표로 하는 상담·치료에 집중했지만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파탄주의 이혼(no fault divorce)이 확대되고 이혼의 확대되고 이혼의 순기능을 강조한 여성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여, 이혼 후 발생하는 아동의 피해에 주목해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복지서비스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혼 후 적응과 갈등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형태도 사건 절차에 따라 선형으로 진행되는 위계형 모델(hierarchy)에서 당사자의 욕구와 갈등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통합적으로 사건해결을 모색하는 맞춤형 사례관리형(differentiated case management) 모델로 전환하였다⁵⁹⁾.

이런 점에서 우리 가정법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다. 우리 가정법원에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많은 기능이 가능한 법규정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국은 인력과

57) 김상용(2013), 325-337쪽

58) 김상용(2013), 337쪽

59)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22-23쪽

예산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행정의 해야할 일을 법원이 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중복되게 자원을 준비해둘 필요도 없을 것인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과 같은 중간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근본적으로 사법행정을 하는 법관조직에서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아동의 의사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 가사조사관의 양성 및 연구, 위탁기관 발굴 및 설립,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절차보조인 및 면접교섭보조인제도 등의 운영, 후견인 명단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하면서 사법절차와 법원의 기능을 지원하는 공단과 같은 조직 또는 국가내 아동 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아동청의 설립을 제안한다.

나. 절차보조인 등 아동을 위한 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보장만으로는 실질적 보장이 되지 아니한다.

이에 가정폭력사건에서 행위자의 퇴거, 복귀, 접근금지, 전기통신망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의 종료로 행위자가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고소취하, 처벌불원, 합의의사가 제출되는 경우 등 아동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재판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때 아동의 의견이 피해자에게 경도되었거나 행위자에게 압박받아 표명된 것은 아닌지 등 아동의 진정한 의견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러한 각 법률적 행위 및 처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아동에게 잘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아동의 진정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보조인이 필요하다.

절차보조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법안은 위 이혼절차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다만 이는 가정폭력사건이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바, 수사단계이거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보조인이 아동에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법조문의 개정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달리 직권으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판사가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동할 수는 없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발동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가정폭력상황에서 판사가 아동에게 또는 아동을 위해 가족 전체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만이 아닌 다른 가족, 특히 아동에 대해서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부부간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 자매간 등 미성년자 간 또는 조손간의 폭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노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상 행위자와 피해자 간 분리의 방식을 ‘퇴거’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이 진행되는 경우 면접교섭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아, 피해자와 아동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재판부의 입장에서 좀더 다양한 양태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각호의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맞는 인프라의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일정한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하게 되는 경우 불이행시 처벌의 부담이 있게 되므로, 행위자, 피해자, 가족구성원에게 이행하도록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재판부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부과한 후 이행실태조사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좀더 폭넓고 유연하게 이 가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행실태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의 구축까지도 필요하리라 할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개정법률안
<p>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p>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양육비,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6.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피해자 및 미성년 자녀를 양육지원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양육지원, 상담위탁, 필요시 가족상담 7. 피해자 및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를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8. 행위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명령 기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p>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라. 가사조사관의 숫자 및 전문성 고양

가정폭력은 쌍방폭력의 경우도 많고 피해자도 피해로 인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가정폭력문제를 이혼사건에 활용하거나 양육권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여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양육권을 포기하고자 하기도 하여서 가정폭력과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야 하며,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감정적 갈등에 대해서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다면 가정보호사건에서의 가사조사는 좀더 면밀하고 입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가사조사관의 숫자를 늘리고 전문성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간의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아동인권적 측면과 양육권의 측면에서도 판단이 가능하고 아동의 의사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동의 진심을 볼 줄 아는 감수성과 이해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심리지원협회(2020. 4.)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가정폭력에의 노출은 아동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권위주의적 양육자들은 배우자나 자녀를 인격적 존재로 지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사실주장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⁶⁰⁾. 또 해당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아동이라고 한다면 장애의 특성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가사조사관 뿐 아니라 가사사건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하고 판단해야 하는 절차보조인, 면접교섭보조인, 법관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더욱 깊이있게 연구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라 하겠다.

마. 인프라의 확충

법원이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이 가능한 인력, 치료감호기관, 상담기관, 감호위탁시설, 양육지원센터, 이주민지원기관, 통역지원기관, 장애인지원기관 등 충분한 기관이 마련되어야 법원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부기관 연계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법원의 연계담당자 업무분장을 체계화하며, 연계담당자로서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기관 연계의 절차별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서비스 기관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부처 기관간 공식적인 연계가 중요한데,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를 배경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관과의 연계를 가정법원과 정부부처, 또는 가정법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업무의 협력이 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⁶¹⁾.

특히 중독이나 정신적 문제로 인한 가정폭력의 경우 의료기관 등의 위탁을 통해 완치에 이르기까지 조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다. 선행연구(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미국의 가정폭력 문제음주자 치료사법체제인

60)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심리지원협회(2020), 156~182쪽

61)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121~126쪽

‘약물법정(Drug Court)’과 같은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치료와 재활, 직업교육, 교육보조, 주택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법과 결합한 체계로서 가정폭력 문제음주자의 needs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의 발굴이 중요하다⁶²⁾. 또 우리 법제는 치료위탁을 하여도 행위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는바,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들이 수용가능하도록 가정폭력의 경우에 위탁가능한 의료기관들의 질적, 양적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 집행감독 및 이행실태 조사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거나(가정폭력처벌법 제44조) 또는 조사관에게 집행상황 보고를 명하거나 행위자 등을 소환하여 조사, 심리할 수 있다(가정보호규칙 제54조, 제55조 제3항).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2011-1)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행실태조사, 조사관의 집행상황 보고, 행위자 등을 소환하여 조사, 심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2개월마다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각종 처분을 변경하거나 집행종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집행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원이 각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행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집행감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사조사관을 통해 할 수 있겠지만 각 사건마다 판결을 위한 기본 사건조사를 하기에 부족한 상황이기에 사실상 가정법원의 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행실태조사를 위한 가사조사관을 별도로 두거나 가사조사관의 수를 늘려 담당사건의 수를 줄이면서 자신이 기본사건조사를 한 사건의 이행실태조사까지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담당하는 경찰, 보호관찰관, 위탁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을 법에 규정하는

62) 차진경, 신현주(2012), 가정폭력 문제음주자의 특성분석을 통한 치료사법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7호, 281~283쪽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이 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아동에 특화된 기관의 조력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다른 기관을 통한 이행실태 조사는 단순히 보고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여 법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인프라 구축 등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년사건을 조사하다보니 심각한 가정폭력사건이 배경이 있다거나 엄마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을 조사하다보니 아빠에 의한 가정폭력사건이 더욱 심각하여 엄마가 신고 조차 할 수 없었다거나 이혼사건을 하다보니 사건본인이 사실상 심각한 방임의 상태이거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속에서 보호가 시급한 상태인 경우와 같이 복합적인 사건들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 현소혜(2014)의 연구에서는 가정법원 내에 가칭 ‘문제해결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내에 설치된 문제해결 센터에 사건이 송치되고, 문제해결센터장의 지휘 하에 담당 법관과 담당 가사조사관이 배정되며, 담당 가사조사관은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과 상담을 하고 각종 서비스를 안내한다. 담당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를 하여 통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법관에게 제출하고 담당 법관은 다종의 재판을 하게 된다. 이후 담당 가사조사관은 사후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재판절차 중이라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입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다⁶³⁾. 이와 같은 안은 포괄적 지원 체계의 확립이 가능하고 통일성 있는 판결이 내려지는 장점이 있고,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겠다. 다만 현재의 법원 사물관할이나 법원조직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한 법관이

63) 현소혜(2014), 가정폭력 개입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Vol 441, 90~97쪽

한 가정의 모든 사건을 다 담당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에 최소한 가사조사관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의 공유나 가사조사관 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보고서와 같은 방식으로의 통합적 접근을 하여 각 담당 법관들에게 제출하는 대안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때의 공유가 한 조사관의 선입견이나 불충분한 조사가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가사조사관의 팀제 운영이나 질적·양적 보완, 노하우와 전문지식 보강 등 보완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V

소년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가. 소년 사건 처리 원칙과 개요

(1) 소년사건의 이원화 구조

「소년법」 제1조는 소년의 반사회적 성향을 교정하고, 그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이원화된 처리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의 구분을 의미한다.

법원행정처(2025)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848건으로 집계됐다⁶⁴⁾. 이 가운데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294명으로 파악됐다. 소년이 비행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과 법원은 해당 소년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죄질, 그리고 과거의 범행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는 비행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라는 목적 아래,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소년의 특성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비행 사실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그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해당 절차는 사건의 접수부터 보호처분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사를 동반하며, 「소년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된다.

(2)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소년법」 제2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한정된다. 보호사건의 대상자는 다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포괄적으로 ‘비행소년’이라 칭한다.

범죄소년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 중, 범행 당시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고, 보호처분 시점에서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조 참조). 이 경우,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그 외에는 소년형사재판의 대상이 된다.

64) 대법원(2025). 2025 사법연감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조). 이들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을 반복하거나, 음주 후 소란을 일으키거나 유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성향을 가진 자로서, 그 성격 및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을 지칭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세 유형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보호처분 절차 및 조치가 달리 적용된다.

(3) 소년형사사건과의 비교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뿐 아니라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소년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 절차에 준하여 처리되며(소년법 제48조), 다만 소년의 연령적 특성과 교육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리 방식이나 형벌 결정 등에 있어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소년법」 제58조는 소년의 심리 방식에 대한 특례를, 제59조 및 제60조는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종류 및 집행 방식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성인범죄자와는 다른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년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보호적 사법의 원칙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입법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처분으로서, 소년의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보호 재판은 처벌보다는 회복과 재사회화 중심의 사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소년보호관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 상담 및 선도 프로그램 참여,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 등을 병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소년의 행동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화된 개입의 일환이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자의 보호역량 강화를 통해 소년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다.

(4) 조사 및 전문가 의견 반영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접수한 후, 소년조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소년의 범행 경위, 환경, 가족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이후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년부는 필요 시 심리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육자 등 전문가의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⁶⁵⁾.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심사 결과 및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및 의견서도 심리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5) 소년의 보조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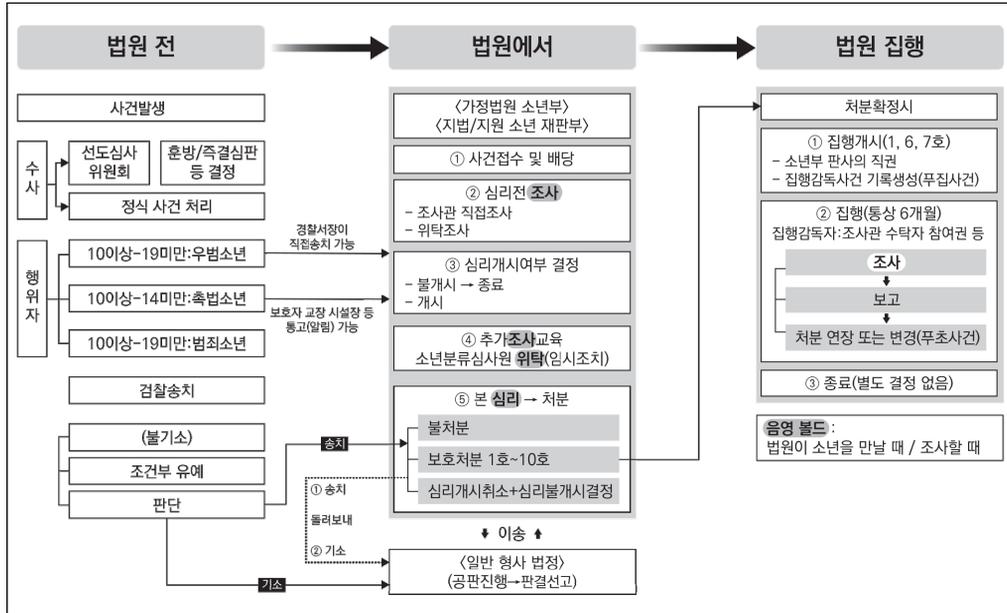
소년은 재판 과정에서 보조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인은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 및 처우 결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조인은 법적 자격 제한이 없으나, 보호자 또는 변호사가 아닌 제3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소년법 제17조 참조).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조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되지 않은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선보조인의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⁶⁶⁾은 국가가 부담한다.

65) 법규정은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참여한 판사와 가사조사관,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모두 실제 지난 십 년 이내에 이 제도의 시행을 경험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66) 2025년 현재 1건의 소년보호사건에 배정되는 국선보조인 지급 예산은 세전 20만원 가량(세후 18만 2,400원 가량)으로 접견이나 상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비용조차 보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크다. 서울 경기권 법원을 제외하고 지역으로 갈수록 변호사가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을 지원하는 경우가 급격히 적어지기 때문에(주로 사회복지사나 종교계 종사자 등이 지원) 전국적으로 고르게 소년법에 대한 변호사의 국선보조 조력에 제약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나. 업무흐름도 및 구체적 절차



[그림 6] 소년사건 절차 흐름도

소년법은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보호 중심의 사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사건의 송치 및 통고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찰서장, 검사, 법원은 해당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소년의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여기서 ‘통고’란,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적인 통지를 의미한다.

첫째,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① 검사가 직접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② 소년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소년형사부가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또한 보호소년의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둘째, 촉범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소년법 제4조 제2항), 이 외에도 보호자나 관계 기관장이 통고하는 방식 역시 허용된다(제4조 제3항).

셋째,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하게 송치 또는 통고가 가능하며(소년법 제4조 제2항, 제3항), 이는 수사기관을 반드시 경유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분되는 소년보호 사건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2) 신병에 관한 처리: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 ① 보호자 또는 적절한 위탁자에게 소년을 위탁,
- ②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위탁,
-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③의 경우를 ‘임시위탁’이라 칭하며, 이 조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정 기간 준수가 중요하다(제18조 제3항).

(3) 조사절차

조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심리 개시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보호처분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⁶⁷⁾되어 있다.

- ① 법원 내부 조사절차⁶⁸⁾: 조사관 조사, 전문가 진단, 심리상담조사, 시험관찰, 청소년 참여법정 등,
- ② 법원 외부 조사절차: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⁶⁹⁾, 보호관찰소 등을

67) 실무상 내부 조사절차보다는 외부 조사(특히 보호관찰소)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경우 이혼 사건 가사조사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조사가 현실적인 타협점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어서다. 특히 재범으로 인한 소년사건 회부 소년의 경우 대부분 보호관찰소에 의한 조사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68) 앞서 언급한 대로 조사관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의 경우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6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조사의 경우, 단순 폭력 사건 등 수강명령(2호 처분)이 병과될 필요가

통한 조사.

이러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은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4) 심리 절차

소년부 판사는 조사 결과를 포함한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사건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심리개시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소년법 제17조 제1항). 단,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소년법 제17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 준용된다(소년법 제17조 제6항).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지정할 수 있다.

- (i)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ii)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조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 (iii) 기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1) 불처분결정

소년의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처분 없이 종결할 수 있다: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충분하고, 비행 내용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경우 등.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교육도 일정부분 병행하면서 이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편이다.

또한, 기존에 다른 비행으로 이미 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어 새로운 보호처분이 불필요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검사에게 송치

범죄소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7조).

사실관계를 다투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며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사건 접수 후 소년이 19세 이상임이 밝혀진 경우.

민약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송치된 것이었다면,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제51조).

3) 보호처분⁷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된 각 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한다. 이들 처분은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제32조 제2항), 필요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수강을 명할 수 있다(제32조의2 제3항).

70)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소년법 제32조 제1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다. 소년사건 처리 관련 주요 조문

(1) 소년법 주요 조문

<p>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p> <p>- 가정법원 판사의 재량적 판단 중요</p>
<p>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조사관은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소년법」 제9조),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2조).</p>
<p>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p>
<p>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p>- 보조인을 통하여 소년의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가능⁷¹⁾</p>
<p>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거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p>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p> <p>- 이를 통하여 소년의 상황 다양한 경로로 파악 가능</p>

71) 다만, 실무적으로 국선보조인과 사선보조인 간의 간극이 발생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사선변호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선임되어 사건을 파악하고 변호인 의견서 또는 관련 증거 등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제출할 수 있으나, 국선보조인의 경우 대개 수사를 지나 첫 번째 심리 기일이 열린 이후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년재판의 비공개 원칙(법 제30조의2 등)에 따라 국선보조이라 해도 재판부를 통해 기록 열람이나 복사가 매우 제한되므로 통상의 형사사건 피고인 국선변호와 비슷한 역할을 기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p>제30조(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p> <p>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p> <p>- 기록의 관리 및 검토 과정에서 소년에 대한 자세한 조사, 책임자 명기 등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p>
--

(2)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대법원재판예규 제1865호

<p>제5조 (국선보조인 선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정신·심리전문가의 보조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2호의 정신·심리 전문가 등 명부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p> <p>②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호의 법률전문가 명부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다만, 변호사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더라도 보조인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소년법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p>
<p>제8조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가정법원·지방법원은 소년부 판사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교육청, 경찰서, 위탁보호위원, 위탁받는 기관(법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처분 관련) 및 위탁집행기관(법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처분 관련)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소년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 실무상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실은 형식화에 그치고 있음</p>
<p>제10조 (위탁받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년부 판사는 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다만,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대안교육기관 및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 기관 위탁과 심사의 근거와 연결</p>
<p>제12조 (집행감독사건) ① 소년부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다른 보호처분이 병합되었는지 불문한다)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1심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p> <p>⑤ 소년부 판사는 규칙 제33조제1항의 위탁보호위원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조사관에게 그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집행감독 과정에서의 법원의 개입 근거와 연결</p>

(3) 기타 참고 조문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633호)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대법원재판예규 제909호)
일부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할 때의 송치결정 송부방법(재형 85-2) (대법원재판예규 제24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소년사건 조사 제도의 종류와 역할

소년보호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접수되면, 다음 절차로서 조사단계에 이르게 된다. 조사는 주로 소년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년의 생활환경조사라는 기능적 성격을 갖는다.

조사는 소년부 판사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며, 조사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소년 조사관이 판사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송치 또는 통고된 소년, 보호자, 참고인 등을 심문하게 할 수 있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육자 등 전문가의 진단 및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조사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가 가정법원의 절차 상 놓인 소년에 대한 법원의 개입 및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므로, 법원이 소년을 대면하거나 소년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는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원 조사관에 의한 직접조사

소년부 판사가 법원 소속 소년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리면, 법원은 소년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게 된다. 소년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건 경위, 반성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진술한다.

해당 조사는 소년의 진술 외에도 보호자의 양육 태도와 선도 의지에 대한 진술 청취를 포함하며, 이는 보호처분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2) 청소년꿈키움센터 및 보호관찰소 위탁조사

소년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나 보호관찰소에 위탁되는 경우, 약 3~5일간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소년의 태도, 반성 정도, 개선 가능성, 성장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호자 또한 양육 방식, 보호능력, 선도의지 등을 평가받는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위탁결정서와 함께 가정법원 소환장을 발부한다. 이 위탁기간 동안의 조사내용은 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되며,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소년의 태도 및 반성 정도
- 개선 가능성
- 성장 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 관계
- 사건 동기 및 사후 정황
- 보호자에 대한 조사 결과

(3) 보호관찰소 조사

4호 또는 5호 보호처분을 이미 받은 소년이 재비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 소년은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결정전조사 안내문'이 송부되며, 보호관찰소는 기존 보호관찰 자료 및 새로 실시되는 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평가를 수행한다.

소년과 보호자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가정 방문조사 또는 전화면담을 통해 보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보호자의 통제력, 보호능력,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보호자와 소년의 동시 출석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

소년이 중대한 비행을 저질렀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부 판사는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3~4주

(최대 8주까지 연장 가능) 동안 심층적인 조사 및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

해당 조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 비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영장이 발부된 경우
- 보호관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곧바로 호송차를 이용하여 현장 이송되며, 위탁 사실은 학교에 별도 통지되지 않지만,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위탁 기간 동안 소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층조사를 받는다:

-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 및 상담
- 일상생활 태도(기상, 취침, 식사, 청소 등)에 대한 관찰
- 교육프로그램 참여도(예: 분노조절, 자기통제 교육 등)
- 상벌카드(칭찬카드·꾸중카드) 누적 기록
- 타 소년과의 상호관계, 사건 후 태도 변화 등

이 모든 정보는 분류심사보고서로 작성되며, 해당 보고서는 소년의 교정 가능성, 보호 필요성, 관계성,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문서로,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추가로, 분류심사원에서는 매일 생활일지가 작성되며, 이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상호업무지침」 제32조 제2항에 따라 생활지도일지(별지 제2호 서식)로 관리된다.

나. 심도있는 조사라도 처벌을 위하여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는 일종의 침익적 결정을 예정하고 이루어지므로 양육환경조사나 아동보호사건 조사보다도 법원 주도적인 조사가 많은 영역이다. 임시조치를 통하여 아동의 거처를 가정에서 기관이나 시설로 옮기면서까지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소년 사건 조사의 특징이다.

조사의 내용도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이혼 사건의 경우 부부 중심으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소년 사건은 해당 소년을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동의 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업과 일상생활, 친족을 포함한 아동이

속한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조사된다.

그러나 소년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는 이 조사결과는 소년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소년법에 근거한 처분만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뿐이다. 소년 사건의 매우 높은 수준의 비밀유지의무와 비공개 원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아동을 위한 법원의 개입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행 사실 자체를 많이 묻기보다는 이 아이가 왜 이런 상황에 되었고 어떤 가정 환경에 자라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정말 전반적으로 다 보거든요. 소년 보호 재판 자체가 애를 처벌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잘 돌아와서 원래대로 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해서 어떤 친구들이랑 사귀고 공범은 누가 있는지 또 또래 누구랑 어울렸는지 그 이후에 부모님의 대응은 어땠는지 이 아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떤지 부모님은 또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지 억울해하는 건지 아니면 뭘 이 계기를 삼아서 낮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등등 되게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현직 가사조사관 A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돈 주고도 그런 전문가(법원 내 가사조사관)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소년 조사관님들은 다 피드백이 워낙 좋았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그 조사관님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만큼 아주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 현직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다.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의 부재

소년보호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대법원예규에 근거가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거나 그나마도 형해화된 상황이다. 정작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기관장이 모여서 어떻게 협의할 지를 정하는 거대담론보다 개개의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다.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도 없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소년 사건 진행의 엄격한 밀행성 때문에 수반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가령, 만 13세, 중고거래 사기 공모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심리전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가출·귀가불이행이 지속되자, 소년부가 소년분류심사원 4주 위탁을 결정하였다. 심사원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도착했으나, 그 보고서 안에는 Wee센터 상담 기록,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아동 방임 관련 모(母) 상담 기록, 지역아동센터의 장기 관찰 기록 등 핵심 생활·관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경우 판사는 심사원 내 단기 관찰결과에 따라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라. 비공개 원칙에 따른 조사 결과 참고 제약

위기 가정의 경우 이혼과 자녀의 소년보호, 가정보호나 아동학대가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판사들의 각 담당 사무분장이 다르고 이를 조사하는 조사관이 다르다 보니 상호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중복 조사를 하거나 종합적 고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작은법원 지원급에서는 판사의 사무분담이 중복되어 있고 주로 1명의 조사관이 이혼, 가정보호, 아동보호, 소년사건 등 모든 조사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별 제약 없는 조사결과의 공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그걸(다른 사건 관련 자료) 떼와야죠.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열람 제한된 경우가 좀 많아서 그 당사자는 또 하지 못할 수는 있긴 하겠네요.”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무슨 주민센터나 이런 데 위기 가정이다 뭐 이 정도를 알려줄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소년법과 연관돼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소년 재판 자체가 비공개인데 쉽지는 않아요.”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일단 조사만 돼 있으면은 그 조사는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분류 심사원이나 결정전 조사 퀄리티도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중복해서... 몇 개월 동안에 몇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조사가 너무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저는 조사 보고서를 좀 공유하면 안 되겠냐... 데이터가 쌓여야지 이 사람들의 과거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하나씩 중복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다른 관련 사건이 있다고 해서 열람 권한은 저희도 없어요. 기록 열람을 할 수는 없어서 다만 만약에 조사 명령이 다른 조사관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 조사관을 인터뷰 하죠. 그분의 조사 보고서 자체는 (보기가) 어려워도 (직접) 물어봐서 더 내가 조사할 때 더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참고 사항들 이런 것들 점검을 하죠. 아직도 종이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로 볼 수 없거든요. 전자로도 볼 수 없고 하나씩 이미 보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판사님이 다른 재판부의 기록을 보고 싶거나 조사 보고서도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문서 송부촉탁 해서 보시기도 하세요. 같은 가정법원 내에서라면 그거를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타 재판부 판사님이 하실 수는 없고. 아직 소년 형사 사건이 아직 종이 기록이어서 이걸 그 기록 찾아서 가져오지 않는 한은 사실 그게 찾기가 사실 쉽지 않죠. 전자면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기 쉬워 텐데 지금 이 종이 기록 상태에서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현직 가사조사관 A

마. 처분 이후 아동에 대한 감독과 지원이 어려움

4호와 5호 처분 등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소년의 경우 이후 삶의 회복을 위해 적절하고 적합한 보호관찰이 매우 필요하나, 보호관찰 실수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효성 있는 소년 보호관찰이 생소하고, 재범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만 3178명으로 2023년(2만 1857명)보다 6%(1321명) 늘었다. 하지만 소년 보호관찰 업무 담당자가 부족하여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⁷²⁾. 집행 감독 제도가 있기는 하나, 아동의 현재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적음. 법원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아동의 현재 거주지나 재범 위험요소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조차 법에 근거가 없어 타 기관에서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소년이 보내질 기관 자체가 매우 적고, 지원 비용도 적어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 가정을 떠나 시설에서 살게 될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의 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때가 적지 않다.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믿고 보낼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없다는 게 제일 한계인 것 같고...”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예산도 많지 않고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아마 인가받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시골이었으니까 주변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일단은 (시설) 수가 적고. 맨날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눈치 엄청 보시고 자리 없고 거기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사고 쳐서 내보내야겠다고 보낼 데가 없는데 선생님들 맨날 그거 눈치 보고”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님들이) 기관에 빌면서 하시고.. 가끔 일한 경험으로 너 6호(시설) 가겠구나 싶은 때가 있거든요. 판사님이 재판하시다가 일주일 미루실 때. (6호 시설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 현직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72) 2025년 6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수는 228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9년 37명이 증원된 결과이다. 2025년 6월 기준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관리 인원이 54.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32.4명) 수치를 크게 넘는 수치이다.

출처 : 1인 평균 관리 54.9명...업무 과다 일상된 소년보호관찰관(2025. 10. 10.),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CM7N2QZj>

“예산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걸 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독을) 전문적으로 하게 하는 게 좋겠죠.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기관도 몇 개 없고 그 사람들조차도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자르기도(위탁취소) 되게 힘든데요.”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성인 보호 관찰하고 소년의 보호관찰 1인당에 들어가는 시간의 차이는 커야 되잖아요. 좀 적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원이 법원 조사관이 없으면 보호 관찰관이라도 좀 소년부를 따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바. 소년범이 아닌 형제자매의 위험 인식해도 개입의 근거 부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소년의 동거 형제자매도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다소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를 소년을 둘러싼 환경 조사 결과를 통하여 종종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사건에 대한 심리와 처분은 모두 재판에 회부된 해당 소년에 대하여만 법원이 개입할 수 있기에 해당 형제자매의 복리와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라면 저희가 상담 보내거든요. 가족 상담으로 보내서 동생도 끼워서서 (상담) 하기도 해요. 심리 상담이 있거든요.” - 현직 가사조사관 A

관련사례 : 부 사망 후 편모 가정(아들 2명). 모친 생업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컸고, 장남은 오토바이 절도 사건에 방조로 연루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됨. 모는 삶에 지쳐 양육 의지가 낮았고, 차남도 비행 중임을 확인. 법원은 1호 처분으로 평소 가족과 교류가 있던 지역 목회자 가정에 감호를 위탁하였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및 차남의 의사 확인을 통해 형제가 모두 해당 위탁 가정에 살도록 하였다(물론 결정문은 해당 소년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음). 또한 담당 판사는 이 형제가 위탁가정에서 살면서 공동으로 지켜야 할 조건으로 형제가 모두 흥미를 보이는 구기종목 활동에 등록하여 훈련에 빠짐없이 참여할 것을 병기하였다. 이후 형제는 일정한 생활리듬을 갖추고 비행 또래와의 접촉이 주는 등 성행이 개선되었다. (현행 1호 처분에 구체 조건을 덧붙이고 역할과 점검 방식을 문서로 분명히 하면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

사. 가사조사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

가정법원이 별도로 있는 지역은 가사조사관 제도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3인지원이나 4인지원 등 판사의 숫자 자체가 적은 지역 법원의 경우 1명의 조사관이 이혼, 아동보호, 가정보호, 소년사건 등을 구분 없이 다 조사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⁷³⁾. 본원 지원 교류제도가 있고 간헐적인

교육이 있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인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사 조사관 인프라가 열악한 법원의 경우 가사조사관은 주로 이혼사건 조사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으며 소년사건 등은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다.

“가정법원 단위 아니고서는 지방법원 지원은 아마 1인 조사관 체제고 판사님들도 사실 그런 상황 이어서.. 조사 명령이 그만큼 없겠죠. 사실 조사가 다 돼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건이 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조차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보호 아동 보호까지는 손도 못 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보호관찰소든 뭐 다른 기관 통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니까 아마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 현직 가사조사관 A

“서울가정법원은 뭐 사람도 많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만약 상담을 보내고 싶어요. 상담 기관이 많아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지방 아무리 이런 제도가 있어도 보낼 데가 없어요. 소년보호 아동 보호 가정보호를 분류해서 보조인을 뽑는 데는 서울 가정밖에 없거든요. 지역은 소년보호로 다 뽑아서 소년보호 보조인한테 사건을 다 주는 거죠.” - 현직 가사조사관 A

3. 개선방안

가. 가사조사관 확충 및 처우개선

현재 고등법원 단위로 뽑는 가사조사관 선발과정을 대법원이 통일적으로 운영하며 초기 역량강화에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사관 임용 이후 6개월동안 법원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후 각 고등법원급으로 흩어져 본원 지원간 교류 이외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 지역 법원에 대한 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73)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에 불과하며,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전국 57개 법원 중 속초·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등 6곳에는 조사관이 전혀 없고, 인근 법원에서 1~2명이 순회 파견되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사자와 조사관 모두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다.

출처 : “가정의 아픔 외면 말라” 가사조사관 3배 증원 절실(2025.10.24.),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345>

나. 소년 집행감독의 실질화

소년사건에서 가정법원의 개입은 집행감독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검사가 하는 것(형사소송법 제460조)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처분 결정 후 집행지휘권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 결정 이후에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이 실효성 있고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보호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보호처분 등에 관한 집행 지휘권을 행사한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보호 처분 중 1호, 6호, 7호의 보호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각 처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7조 제1항 단서).

1호 처분에 대한 집행 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위탁기관과 위탁보호위원이다. 기관에 아동이 위탁보호되는 숫자가 제한적이므로 대부분은 아동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위탁보호위원⁷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탁보호위원이 아동을 만나 아동의 현재 상황을 살피고 법원의 처분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말 중요한 분들이 위탁 보호위원이에요. 관찰하시고 아이들을 밀도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법원에서 보시고 엄마 아빠랑 좀 갈등이 있거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그러면 위탁 보호 결정을 하시는데 SPO 분들이 많이 하세요. 사회복지사 분들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집에서 좀 방치되어 있고 청결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되고), 조금 큰 친구들은 경찰분들이 많이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돼요.” - 현직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4호나 5호 처분에 대한 집행감독은 보호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호관찰의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에 특화된 보호관찰 실무를 따로 마련하기는 인력이나 예산 상황상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보호 관찰 기간을 불성실하게 보낸 아동의 경우 보호처분 변경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구속력은 가지는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되는 집행감독 사건의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판사는

74)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과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뉘며,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장에는 통상 “귀하를 소년심판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감호할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⁷⁵⁾하고 있다. 이 조문에 근거를 두고 집행 과정 중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과 위탁받은 자 등과 함께 사례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지침 또는 실무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아동 반복 진술 방지 등을 위한 조사결과 공유 방안 마련

이혼 사건과 아동보호사건(아동학대) 또는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이 동시에 다른 사건 번호로 진행되는 경우 또는 이혼 사건이 종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소년사건이 개시된 경우 등 한 가정을 둘러싸고 가정법원 관할 사건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재 실무상 해당 절차 안에 가사 조사나 아동에 대한 조사 결과지는 재판부 간의 문서 송부촉탁(주로 기록 전부를 송부받을 때)이나 사실조회(주로 기록 중 일부 문서가 필요할 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아보고 참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소요되며 동일 아동에 대한 반복 조사를 막을 방법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향후 대법원 예규 또는 가사조사관 실무 관련 지침을 통해서 법원이 동일 가정에 대하여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판사가 조사명령을 하거나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에게 이와 관련된 가사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간이하게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법에 따라 심리 비공개원칙,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과 등사의 엄격한 제한, 검사의 항고권 배제 등 이혼 사건이나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과는 달리 더욱 비밀 유지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혼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아동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그리고 소년 사건의 경우 종이기록으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사조사관은 고등법원 단위로 선발되는 법원공무원으로서 훈련과 교육을 마친

75) <소년법>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후 관내 법원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가사조사관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되기 때문에 파일로 생성되는 자료이다. 가능한 방법을 마련한다면, 이를 법원 내부 구성원만 접근할 수 있는 코트넷에 저장하여 관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중 한 가정에 대한 복합적인 사건이 타 재판부나 재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참고용으로 재판부(소속 조사관 포함)에서 해당 가정에 대한 다른 가사조사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내부용으로만 열람하게 한다면 사법행정낭비를 줄이고 다각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민한 사항은 전화해라 저는 그렇게 (기록에) 남겨놓기는 해요. 전화하고 아니면 메일로 보내든가 그리고 그냥 나머지 부분은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조사보고서 같은 경우는 조사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동보호사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면서 가사사건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처럼 각 사건이 아동보호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각자 별개의 사건이지만 한 가족이 연결된 사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중략) 재판부가 각자 개별적이어서 각자 움직이고 있거든요.” - 현직 가사조사관 C

라. 처분 종류의 다양화 및 구체적 처분 가능성 확대

현재 열 가지의 소년보호처분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한 처분 종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실제 소년보호처분 다양화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⁷⁶⁾.

“9호(단기 소년원 송치)랑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랑 6개월 2년,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간을 1년짜리를 만들든지 기간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지금 소년부 아동보호 가정보호는 그냥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판기라고. 그러니까 그 처분이 그 가족에게 딱 적합한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성복에 맞는 것 같은 거죠. 자폐 성향도 있고 이런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자판기 안에 안 맞거든요. 그럼 사회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모아서 이 아이에게 맞는 사례관리에 가까운 맞춤형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판기처럼 몇 호 처분할 거냐? 이렇게 하고 있죠.” - 현직 가사조사관 C

76) 윤해성, 장석영, 한민경, 이정주, 강지명(2022).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규정 개정방안 연구: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처분의 다양화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주장이 있으나, 이 연구는 형중·처분의 외형적 다양화 논의를 확대하는 대신, 가정법원이 현재의 보호처분 틀 안에서 소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집행설계를 정교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특히 집행감독을 개시할 때 세부적인 - 그러나 아이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 특별 이행조건⁷⁷⁾을 일정부분 병기할 수 있도록 실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집행 감독 과정에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그 세부사항에 대한

77)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교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이행까지 고려하여 집행변경이나 취소신청 등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특별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은 그걸 당신이 위반했으니까 조금 더 처분을 ‘연장한다’ 이런 근거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보호 관찰 중에 보호 처분 변경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되는 듯 합니다. 판사님이 4호 5호 처분하실 때 기재하시거든요. 특별 준수 사항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서약서 쓸 때 뭐뭐 안 할지 써요. ‘야간 외출 제한’은 흔하고, ‘교육받을 때 뭐를 하라’고 하면 근거도 되니까. (중략) 보호 관찰소 관찰관님이 아이들을 확인하시다가 (특별 조건 이행)을 확인해요. 이를 근거로 보호 처분 변경 신청이 꽤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 현직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VI

보론 : 미성년후견사건에서의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친권의 부적정한 행사에 대하여 친권 상실만을 규정하던 기존의 극단적인 규정을 벗어나,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대한 국가 개입을 단계적·선택적으로 구분하여 완화된 제한형식을 입법하였다⁷⁸⁾.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처리절차의 단계별로 각 임시조치(동법 제19조), 보호처분(동법 제36조), 피해아동보호명령(동법 제47조)에서 친권의 제한과 일시정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신고 청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친권 상실 신고의 청구와 후견인 선임 청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동법 제18조, 제19조), 결국 이는 민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친권의 제한 등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와 최상의 이익 실현에의 공백이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아동의 복리실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성년후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한편, 시설미성년후견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하여 동법 제2조 제1호의 각목⁷⁹⁾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하며,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위의 내용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78) 김민지(2014),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17쪽

79) <시설미성년후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시설미성년후견법 정리〉

후견인의 사유	후견인이 되는 경로	후견인의 직무와 책임
고아인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 신청 • 관할 자치단체장이 후견인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따라서 민법 제938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제945조, 제949조의 직무와 권한을 보유함. • 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법적 감독권한이 미치지 않음. • 후견인의 감독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고아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이 소재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의 일시정지 등과 병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의 일시정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그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이 달라질 것임. • 후견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법적 감독권한이 미치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음.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는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권한을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전면적 미성년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아닌 “직무대행” 수준으로 그 권한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5항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는 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친권(후견권)의 상무(常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에 있어, 아동보호 심판규칙 제27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의 제한 등의 임시조치와 동시에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민법상의 미성년 후견인의 선정에 있어 가사비송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심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는 후견직무대행에 가까운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 근거법률과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거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한 미성년후견의 개시 사유⁸⁰⁾〉

근거법률	사유	보호의 성격
민법 제9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의 부재 •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의 일부제한과 일시정지 	민사법적 보호
시설미성년후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없는 경우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지만, 후견인이 필요하여 법원에 후견개시 청구를 하는 경우 	행정법적 보호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제19조, 제36조, 제47조 (+ 제12조)	아동학대 범죄가 있고,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임시조치가 있거나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이 있거나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서, 친권상실·친권의 일부제한·친권의 일시정지가 있는 사안 	형사법적 보호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그 후견사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미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954조).

한편,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데,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40조의6제1항).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민법 제940조의6제2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953조).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미성년

80) 제철웅(2016),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 자기 폐쇄적 민법연구 실태의 반성을 겸하여-,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397쪽 참고

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39조 및 제940조의7).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및 제940조의7).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미성년후견제도의 실무상 문제

(1) 후견인 선임상의 어려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 제한 등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친권 제한 등의 명령(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성년후견과 달리 아동에 대하여 포괄적 권한을 가지는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할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945조, 민법 제913조), 여기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의 의무라 함은 미성년자의 양육을 위하여 미성년자를 위협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잘 보살피 돌보고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쳐 인격을 길러주는 등의 역할을 뜻하며, 미성년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자,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성장과정 중의 존재로서 건전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양육이 필수적인 미성년자에 있어 후견인의 역할은 그 범위가 넓은 것은 물론이고, 그 책임도 상당하여 친인척 등을 제외하고 선뜻 미성년후견인을 자처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⁸¹⁾.

(2) 고아가 아닌 시설미성년후견인 지정 시에 친권의 정리 필요성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선임되지 않지만, 시설미성년후견법상

81) 같은 취지로, 윤우일(2020),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아주법학, 제13권 제4호, 41-42쪽

시설장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더라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제3조제3항). 이때문에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시설장이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몰래 이루어지는 친권자의 친권남용행위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친권자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시설의 장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에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절차를 이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문가 후견인의 한계

미성년자의 친권·후견권이 미성년자의 신상 전반에 미치는 이유는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와 함께 동거하며 양육하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적절한 지도와 교양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는 애초에 그러한 목적이 아닌 후견인에게 특화된 “전문성”을 이유로 선임된 것이므로, 동거를 하거나 양육·보호·교양의 의무를 행하기보다는 특정한 전문적 직무에 있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 후견인은 미성년자와 동거를 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실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있다면 전문가 후견인과 실제 양육자 간에 명확한 권리의무의 분배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정리하고, 전문가 후견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전문가 후견인 제도는 자신이 가진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때 그 본래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결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미리 가정법원을 통하여 충분히 조사되어야 하고, 이에 걸맞는 전문가 후견인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정한 업무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다른 부분의 보호에 상대적으로 미흡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문가후견인 1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전문가후견인은 자신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4) 재정 부담의 문제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에 대한 보수는 미성년자의 재산 중에서 수여되며(민법 제955조),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미성년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된다(동법 제955조의2). 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와 같은 보수와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 후견인은 사실상 자신의 비용을 들여 후견사무를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전문가 후견인 선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와 다름없는 막중한 의무를 부담하면서 재정적 부담까지 지게 된다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려는 자를 찾기도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양질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⁸²⁾.

3. 개선방안

(1)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소요

한편, 2021. 12. 21, 법률 제18615호로 개정된 시설미성년후견법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후견인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2) 같은 견해로 박상호·예철희(2010), 미성년자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정책연구, 제27집 제2호,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305쪽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는 일본의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일시보호시에, 친권자 등의 공백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형태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아동학대의 경우에 있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 병행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곧장 아동복지법 및 시설미성년자후견법에 따른 임시 후견(대행)의 절차를 상정하여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매뉴얼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무적인 안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미성년후견법상의 이상과 같은 임시 후견(대행)은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시설장이 적극적으로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므로, 해당 조문이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를 후견직무대행자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는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서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누구도 이러한 직무를 맡으려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오히려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특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역시 포함되며(아동복지법제4조, 동법 제22조 참조), 그 중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관할지역 내의 아동학대 신고체제를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피해아동의 친권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예의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명시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활성화하고, 후견권 공백의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2023년 발표된 정부의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⁸³⁾에서도, 유기아동의 경우 후견인을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자동지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3) 시설미성년후견법상 친권 및 후견관련 조치에 가정법원 개입의 필요성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 등에 보호되는 경우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이 해당 상황을 모두 파악하여 사법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한편,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소외는 이후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에게 있어 친권의 제한이 필요하거나 후견이 필요한 경우 등 보호공백 발생시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미성년후견법의 경우,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있어 후견인 지정을 신청의 영역으로 남기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후견인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공후견 정책

2023년 정부는, 지자체의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신청 미활성화, 유기아동 후견인 선임이 어려워 입양 등 보호조치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이유로 시군구청장의 후견인 선임 신청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⁸⁴⁾.

해당 정책의 내용으로, 유기 아동의 경우 후견인을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자동지정되도록 하고, 위탁부모에게 제한적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며, 아동복지·법률전문가 등을 공공 후견인으로 위촉하여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법원에 해당 공공후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청구하도록 하며, 후견감독인으로서 시군구청장이 선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 바 있다.

이상의 공공후견제도는 후견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공공후견인 양성 제도를 활용하여

83) 보건복지부(202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3쪽

84) 보건복지부(202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지정된 공공후견인을 정부의 비용으로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⁸⁵⁾, 보호대상아동 중 특히 아동학대 피해아동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친권 제한 또는 정지까지 검토하여 개입할 수 있는 경우에 공공후견인을 선정하도록 한다면 피해 아동의 친권 공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 공공후견인의 권한은 일상 생활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는 별도의 조사절차를 거친 후 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85)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 중 특정후견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VII

결론 및 향후과제

우리 법제에서 아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고 아동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혼의 양육권, 친권 관련 재판, 가정분리 및 복귀, 가정폭력 등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아동은 오히려 소외되어 있다.

또 어떤 가사사건에서도 보일 수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법원은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면 그 아동이 다시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발동했다는 재판부도 있었지만 그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힘들고 용감하게 아동을 위해 해낸 성과이다. 그러나 그렇게 놓친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아동은 어떤 삶을 견뎌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가정법원의 사건은 그 아동에게는 어쩌면 제도적으로 스크린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상과 같이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아동학대, 이혼, 가정폭력, 소년보호, 후견 사건에서 아동 관련 법령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동권리 보장과 통합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상적인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개정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실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개정법률안까지 연구하였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률안이 실제 운용될 때 필요한 부분을 짚어냄으로서, 제도가 잘 운용됨으로서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도모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제도들은 예산당국이 효율성을 문제삼아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서,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도출된 대안들은 충분한 예산을 통해 유의미하게 기능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국의 법체계와 운영 방식은 미국과 차이가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직접적 도입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⁸⁶⁾. 따라서, 아동을 위한 가정법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모든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가정법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86) 2022년에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발표된 “통합가정법원”의 모델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한편 아동학대, 가정폭력, 연인폭력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사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의미하였다. 통합가정법원 신설...‘가사전문 조사관 확충’ 필수적(2022. 7. 7.), 법률신문

이 연구에서 강조한 대안의 특징 및 향후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아동의 의사를 파악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법정대리인이나 법원이 아동이 아닌 다른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한 사정으로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생각하여 대안을 마련하였다. 물론 아동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기에, 절차보조인과 같은 제도, 가사조사관의 확충, 관련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아동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향후 과제로서 아동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 툴, 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관련자들이 아동의 의사를 파악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는 숙지과정을 어떻게 해당 직역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평가할지까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강조한 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소년보호처분 등 법원이 아동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조치, 처분의 다양화이다. 법원은 파악한 아동의 의사와 가사조사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의사를 파악하고 가사조사를 심도있게 한 후, 다시 기성복과 같은 솔루션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판사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아동을 바라보고 그런 속에서 내려진 어떤 결정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때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가정법원의 특성상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개선방안이다. 항상 모든 처분이 처벌과 연결되고 모든 사건을 8~10개 종류의 처분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해결보다는 처벌과 연결해서 문제가 반복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종류의 구체적 조치와 처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위탁기관의 발굴, 지역적 편차의 해소, 보호기관·상담기관·치료감호기관·지원기관 등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 특히 지역별 균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가 절실하다.

세 번째는 정보의 공유 부분이다. 가령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그 동생도 보호사건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혼사건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이 있는 등 여러 사건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매번 가정에 대한 가사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기존 조사를 토대로 추가조사를 하게 되면 좀더 풍부하고 판단이 더 나은 결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⁸⁷⁾. 또는 가사조사를 1인이 하기보다

87) 이와 관련하여 가사조사의 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실무상은 문서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를 통한 공식적 요청을 통해 참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가사조사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절차지연 및 중복적 조사를 방지하고 가사조사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며 해당

팀제로 운영하거나 공동으로 결론을 내려 의견서를 쓰게 된다면 조사관의 경력이나 선임견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더욱 아동보호에 적합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가사조사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능력있고 경력이 많은 가사조사관이 퇴직하지 않고 오래 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철저한 전문성이다. 아동문제에 대해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당국이나 정치적 입장들을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동의 특수성은 실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며, 그 의사를 파악하고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누구나 아동이었고, 아이를 키워봤다거나 아동을 만나보았다는 이유로 쉬운 듯이 말하나 결단코 매우 어렵고 섬세하며 전문적인 영역이다. 이에 법관, 가사조사관, 전문기관, 절차보조인 등이 아동에 대해 철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전문성에 합당한 수당이나 보수를 지급할 것을 과제로 강조하고 싶다. 약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일수록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제도 속에 안착하고 오래 종사하여 그 역할을 해주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는 그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이른바 ‘통합가정법원’에 대한 연구를 장기적 과제로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법체계, 법원, 관련 인프라의 상황을 보았을 때 단기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려워 이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과제로서 통합가정법원으로서의 법원체계 및 구조의 정립, 법원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차원을 달리하는 지원과 확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전문가의 육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2장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에서 살펴본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있어 판사의 직권 개시 규정은, ‘통합가정법원’의 향후 논의를 이끌어감에 있어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법원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관련사건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로서의 ‘통합가정법원’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장 제3절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었던, ‘법원

아동과 가정에 대해서 깊이있고 입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나 가사조사관이 선임견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아동과 가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공유가능하게 하거나 참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향후 대법원 예규 또는 가사조사관 실무 관련 지침을 통해서 법원이 동일 가정에 대하여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참조여부 및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변경, 재판부 및 사조사관의 실무상 경험에 기반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가사조사기법이나 가사조사관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내부의 사무분담, '일반 법원에서의 직권 개시 후의 가정법원 이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보호체계의 게이트웨이로서 가정법원의 사건 '인지'방안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추가적으로 이주배경아동, 장애아동, 트라우마가 심한 아동,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동, 중독이 있는 아동 등 특수한 상황의 아동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연구를 통해 법원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가정복귀, 양육권결정 등을 대비한 양육지원, 양육교육 등을 더욱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감독, 현황조사 등을 대비한 평가툴이나 판단방법에 대한 연구도 더 깊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소년 사건의 경우 그 배경에는 거의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인데, 이를 법원에서 발굴하거나 법원에서 아동이 이를 털어놓기가 쉽지 않는바, 이 배경 까지 조사하고 그 솔루션을 찾아 궁극적인 재발을 방지하고 교육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감독 및 지원까지 추적하는 종합적 프로그램도 법원이 사법심사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대법원(2023·2024·2025), 사법연감

보건복지부(2023), 아동학대주요통계

법원행정처(2023),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매뉴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성년후견인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가정법원의 촉법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가사소송법상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법원행정처

안문희(2018),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안문희(2019),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와 연계 담당자 운영방안**, 법원행정처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심리지원협회(2020),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청취 방안**, 법원행정처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2021), **가정법원 후견감독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22),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 법원행정처

윤해성·장석영·한민경·이정주·강지명(2022),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규정 개정방안 연구 :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승실대학교 산학협력단(2023), **한국형 가정법원 조사관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논문]

- 권재문(2012),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가정법원의 바람직한 기능- 미국 통합가정법원(UFC)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Vol 430.
- 김민지(2014),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 김상용(2008),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가족법연구** 제22권 3호
- 김상용(2013), 독일 아동청의 역사, 조직 및 임무,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 김상용(2018),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중앙법학** 20집 제3호
- 김혁(2023), 현행 국선보조인제도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35권 제1호(통권 제73호)
- 박상호·예철희(2010), 미성년자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정책연구**, 제27집 제2호
- 박주영(2010), 독일과 프랑스의 친권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33권
- 서종희(2020. 12.).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제도 모색-독일법을 참조하여: **법학논총**, 27(3)
- 윤우일(2020),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아주법학**, 제13권 제4호
- 이은정(2019), 피해아동의 분리 보호와 친권의 제한, **가족법연구**, 제33권 제2호
- 정희철, 박찬걸(2013),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성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 제철용(2016),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 자기 폐쇄적 민법 연구 실태의 반성을 겸하여-,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 차진경, 신현주(2012), 가정폭력 문제음주자의 특성분석을 통한 치료사법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허민숙(2020),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자녀면접교섭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 현소혜(2014), 가정폭력 개입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Vol 441.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2016), 아동보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해설
- 대전가정법원(2016),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

-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발동한 사례
 보건복지부(202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원혜옥 외(2018),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9),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 심포지엄 자료집
 류정희(2021), 통합적 아동학대초기대응체계 구축-사법과 복지의 이분법을 넘어, 아동권의
 보호학회 세미나 자료집
 서울가정법원(2023), 아동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과 분쟁해결, 서울가정법원 국제콘퍼런스
 자료집
 원혜옥 외(2023), 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년사법제도 개선 및
 보호체계 구축방안,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자료집

[기사]

- 살기 위해 자식 보호시설에 맡겨(2005. 9. 23.), 경향신문
 이혼고아 한해 1,000명 ... 급증세(2005. 9. 21.), KBS 뉴스
 친모로 몰랐던 원영이 학대... 면접교섭 관리 강화해야(2016. 3. 15.), 뉴스원
 가정폭력 시달려온 20대 여성과 아기 숨진 채 발견... 자살 추정(2017. 2. 6.), TBS 뉴스
 진짜 고아는 거의 없어요. 이혼·생활고에 시설 맡겨져(가정 해체로 부모 품 떠나는 아이들)
 (2019. 5. 2.), 세계일보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7.5명은 부모의 양육포기(2021. 5. 21.), 경향신문
 통합가정법원 신설... '가사전문 조사관 확충' 필수적(2022. 7. 7.), 법률신문
 한국 판사 1명당 연간 464건 사건 처리... 주요국의 2~5배(2023. 5. 22.), 동아일보
 법원예산은 제자리인데... 연600만건 접수(2024. 3. 28.), 법률신문
 53개 법원 중 7곳, 가사조사관 0(2024. 7. 3.), 법률신문
 1인 평균 관리 54.9명... 업무 과다 일상된 소년보호관찰관(2025. 10. 10.), 서울경제
 "가정의 아픔 외면 말라" 가사조사관 3배 증원 절실(2025. 10. 24.), 여성신문

부 록

- 부록 1. 대전가정법원(2016),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
- 부록 2.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발동한 사례
- 부록 3.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예
- 부록 4. 미성년후견사무 보고서 양식
- 부록 5. 소년사건 집행상황 보고서
- 부록 6. 보건복지부(202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 부록 7.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 부록 8. 안원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부록 9. 보고서에 대한 간담회 영상 큐알코드

부록 1. 대전가정법원(2016),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

2016. 12.

대전가정법원

1. 필요성

▣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례

● 사례 1 (가사재판)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이(5세)의 친권자, 양육자를 아버지로 해달라고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아버지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매우 심하게 반발하였다. 교육, 상담 등을 수차례 거쳤음에도 부모 모두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환경이 아이를 키우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친인척도 없어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고 부탁할 곳도 없다.

- 부모가 모두 아이를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므로 부모 중 누구도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함 ↔ 양육자는 부모 중 1인으로서만 할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적어도 아이가 부모 중 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필요도 있음

● 사례 2 (소년보호재판)

아이(15세)의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출하여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렵게 아이를 키웠다. 아이는 온갖 비행을 저지르다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고, 신병인수위원의 보호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아버지가 수익자를 아이로 한 생명보험금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연락이 없던 어머니가 나타나 법정대리인임을 이유로 생명보험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려고 한다.

- 이 경우 어머니가 아이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일단 인출하지 못하게 임시적으로나마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사례 3 (형사재판)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이(5세)를 학대하였다가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부모에게는 친인척이 없어 부모가 구속이 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 이상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함. 따라서 아이가 다른 곳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필요도 있음

▣ 위 각 사례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

● 민법상 친권의 상실 등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위 각 사례에서는 부모 이외의 자에게 자녀의 양육 등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데, 이에 관하여 민법에는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수단이 없음)
-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는 있음. 그러나 미성년후견인은 ① 친권자가 사망하였는데 달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②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등이 선고된 경우, ③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음(민법 제932조2)
- 그런데 [사례2], [사례3]에서는 부모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결국 친권의 상실 등이 선고되어야 함 → 친권의 상실 등에는 모두 자녀 또는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를 필요로 함 → 법원이 직권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음
-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없더라도 관련기록을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친권의 상실 등을 청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기록의 열람 등을 제한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의 취지상 적절한지 의문임. 설령 관련기록을 송부한다고 하더라도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하게 친권의 상실 등을 청구할지도 의문임

1)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세관을 아동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이가 다른 곳에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2)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 47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구의 청구도 없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발령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판사든 재판 중에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2. 사무분담의 조정

▣ 문제의 제기

- 현재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만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맡고 있어, 이를 맡지 않은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발견하여도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없음
-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서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이 적극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

● 1안

-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발견한 재판부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게 그 사례를 알려주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도록 독려하는 방법



- 사무분담의 조정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인지 기록을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³⁾ 다른 재판부의 의견만 믿고 사건을 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2안

- 사무분담을 조정하여 모든 재판부에서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
- 사건을 잘 아는 담당재판부가 그 진행경과에 따라 적절한 아동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재판부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진행하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사건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3안

- 판사의 사무분담만 조정하여 어느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후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사건을 이첩하여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
- 개시 이후에 전담재판부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진행하므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하지만,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시 이후에는 앞서 진행되는 사건의 경과와는 무관하게 아동보호조치가 내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음

▣ 결론

-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⁴⁾의 구현을 위해서는 2안이 바람직함

3)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기록을 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사건을 맡지 않은 재판부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의문이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아동의 보호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모두 기록검토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4) "통합가정법원"이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이 급증하고, 이러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가족(이른바 '단골손님')이 늘어나면서 심판대상을 '개별 법률문제'가 아닌 '가족 그 자체'로 보고 모든 가정문제에 대하여 한 재판부에 포괄적인 관할권을 부여한 법원을 말한다¹⁾한 가족에 한명의 판사(one family, one judge)]. 1994년, 1998년 미국 변호사회에서 이에 대하여 권고결의를 한 바가 있고, 현재 미국 대대수의



- 그러나 현재 각 재판부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처리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단계에서 바로 2안을 채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중간단계인 **3안**을 채택함이 상당함

3.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시 방법

▣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한 사례의 발견

- 어떤 재판에서든 아동이 관련되어 있으면 그 아동의 양육 상태가 어떠한지, 그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그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가사재판에서의 가사조사 등을 하면서 그 아동의 상황 등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과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사조사, 조정조치 등에서도 가사조사관이 그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재판부에 알려 재판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이 개시되면 행위자에게 악감정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당사자 사이의 소동이 단절될 수도 있으므로 직권개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음

▣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직권개시 전 확인사항

● 관할

-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 피해아동의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1항)이 관할
- 관할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진행 중 거주지, 현재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통합가정법원에 관하여는 Developments in the Law: The Law of Marriage and Family, 116 Harv. L. Rev. 2099-2101 (1996) 등 참조.



● 피해아동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미성년자’ 또는 소년법상 ‘소년’이더라도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할 수 없음
- 피해아동이던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각목에서 정한 범죄를 말함.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각목 중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죄(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가 포함되므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동보호가 필요한 사례는 상정하기 어려움

●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음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 임시로 피해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임시보호명령 발령도 검토해야 함



- 임시보호명령의 종류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음. 다만 그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임
- 임시보호명령 중 피해아동을 시설, 연고자 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7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어야 하고, 연고자는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8조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그 시설 명칭을 주문에 특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여 현재 피해아동을 맡을 시설이 있는지, 그 시설 명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함

● **사건번호**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미리 받아놓으면 됨

▣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직권개시**

●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사건 개시서의 작성**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권 사건 개시서**[전산양식 B6148]를 작성하여 접수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함[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특 2014-3, 이하 “예규”) 제4조 제3항]
- 직권 사건 개시서에는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함. 만약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상”으로만 기재해도 충분함
- 관련사건에는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발견한 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하면 됨(예를 들어 “대전가정법원 2016드단0000 이혼 등”)
- 사건명은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죄명을 기재하면 됨. 대체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⁵⁾

5) 참고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죄명은 다음과 같다.



대 전 가 정 법 원
직권 사건 개시서(피해아동보호명령)

피 해 아 동 ○○○ (-)
 주거
 등록기준지

행 위 자 ○○○ (-)
 주거
 등록기준지

관 련 사 건

피해아동에 관하여 다음의 사건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한다.

다 음

1. 사건명 :
 2. 개시 근거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20

판사 ○ ○ ○ ㉸

-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로 행위자가 어떠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는지 공소사실을 기재하듯이 기재하여 붙일 필요가 있음

[예시]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0. 0. ...에서 피해아동을 유기한 채 가출하는 등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아동복지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71조 제1항 제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제1의2호	" (아동에 대한 음행경요·매개 성희롱 등)
제2호	" (아동학대, 아동유기·밍임, 장애아동관람, 구결강요·이용행위)
제3호	" (양육양산급품취득, 아동규품유용)
제4호	" (곡예강요행위, 제3자인도행위)



● 임시보호명령6)

대전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	
사 건	20 동 처
피 해 아 동	○○○ (-) 주 거 등록기준지
행 위 지	○○○ (-) 주 거 등록기준지
주 문	
1.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아동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4.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에 보호(치료)위탁한다.	
5.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에게 가정위탁한다.	
6.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20	
판사 ○ ○ ○ _____ ②	

- 사건 부분은 미리 받은 사건번호와 직권 사건 개시서에 기재한 사건명을

6)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제1항은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직권에 의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직권개시시가 작성된 때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로 보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직권으로 개시한 인천가정법원 2015동처8호 사건은 직권개시 이후에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한 바가 있다.



함께 기재하여 표시해야 함("2016동처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주문 외의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 등록기준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불상'으로만 기재하면 됨)
- 보호위탁, 치료위탁 등을 하는 경우 행위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도 같이 발령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건의 이첩

- 직권 사건 개시서와 임시보호명령을 작성하던 사건을 곧바로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재판부에 이첩 →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재판부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송달 등을 실시하고,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사건을 심리

4. 향후절차

▣ 법관사무분담의 조정

- 사무분담의 조정과 관련하여 3안에 따라 일단 법관사무분담을 조정

▣ 관련 내용의 전파

- 가사재판 담당 판사님들에게 위 내용을 전파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개시를 독려

▣ 지방법원과의 협조

- [사례 3]과 같이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구속영장 담당판사를 가정법원 판사로 겸임하도록 하고,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구속영장 담당판사도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시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이유를 기재하더라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0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도만 기재하고 있다.



- 현 단계에서 사무분담 조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구속영장 담당판사가 관련 사건이 있음을 알려주어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연락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끝>

부록 2.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발동한 사례

Page 1 of 1

가사소년재판부커뮤니티 > 자료실

※ 경회원이상 게시판입니다.

작성일자	장창국 지방부장/판사실 제주지방법원(2018-08-17 오후 08:11:54)
게시기간	영구게시
제목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발동한 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는 가정폭력처벌법과 달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민사, 형사, 가사재판 중 학대 상황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절차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최근 제가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엄마가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자신도 아동학대한 사례

엄마는 아빠가 11살짜리 딸을 때렸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아빠는 아동보호 사건 심리기일에 '엄마가 딸을 때리는데, 자신과 이혼하고 양육권을 빼앗아가기 위해 과장된 신고를 하였고, 고소 취하 조건으로 협의이혼하고 양육권도 포기하였다.'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재 딸과 만나고 있다고 묻자, 아빠는 엄마가 이혼하자마자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살고 있다며 배신감 때문에 아이 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이혼 후유증이 심각해 상담위탁 처분을 하였고, 현재 보호자인 엄마에게는 자녀를 상담소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상담소에 가야 하나며 항의하였지만 저는 "상담사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문제가 있다면 계속 상담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말해 엄마는 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상담소 출석을 거부하고 상담사의 출석 독려에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저는 직감으로 곧 상황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사에게 우선 아빠의 이혼 후유증 극복 상담에 주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상황 변화가 왔습니다. 상담사가 아빠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심하게 맞아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한다. 어쩌하면 좋겠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저는 '동버' 사건으로 송치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게시하여 엄마를 소환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 엄마는 제혼한 남편과 함께 피해아동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당당하던 엄마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일단 상담 위탁 결정을 했습니다. 상담사가 2회기에 걸쳐 만난 아이는 예민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현재도 상담 진행 중입니다. 엄마는 피해아동과 함께 열심히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계부가 의붓딸을 성 학대하였으나 친모가 방치한 사례

어느 날 형사 합의부장님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을 성 학대하여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인데, 안타까운 것은 피해아동이 형사재판 중에도 계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친모와 피해아동이 처벌 불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아동이 계부와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해아동에 대하여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어쩌하면 좋으시 상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게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형사 합의부장님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전달받아(형사 재판부 실무관은 피해자 신원누설 금지 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24조 때문에 인적 정보 제출을 망설였습니다),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게시하고 바로 법원 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리, 달랑 2명인 제주법원 조사관 2명을 총동원하여 다른 조사 사건은 뒤로 미루고 직접 피해아동 집으로 출장 가서 가족을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은 계부를 용서해서 처벌 불원한 것이 아니라, 친모, 동생(친모와 계부 사이에 낳은) 생각에 그리 했다고 합니다. 친모는 '계부가 구속되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냐? 조용히 살고 있는 집에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항의를 하였지만, 조사관들은 친모에게 '그 태도는 아이 엄마가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피해아동의 심리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다행히 친모가 친딸의 상처를 알아듣고 심리 치료를 게시하였는데 문제는 회당 18만원인 심리 치료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조사관을 통해 제주YWCA에 문의한 결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과 상의하여 그곳에 상담 위탁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계부는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기일에는 보호자인 친모만 출석하였습니다. 친모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YWCA의 도움을 받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YWCA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file:///C:/Users/hanmi/AppData/Local/Temp/ASWE/00000001/202505301055646_7... 2025-05-30

부록 3.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예

소년보호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준수사항의 예(전산양식 B3701)]

<p>○○ 법원 제○ 형사부</p> <p>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p>
<p>사 건 20 고 피고인 ○ ○ ○</p>
<p>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p>
<p>일반 준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의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p>특별 준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예, 보호관찰기간 중 매일 20:00부터 08: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않을 것)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예, 피해자○○○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부록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예, 보호관찰기간 중 서울·경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않을 것)
 7. 일정한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예, 1주일에 이혼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심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11.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12.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13.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14.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1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16.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 기타 :

재판장 판사 ○ ○ ○

부록 4. 미성년후견사무 보고서 양식

전산양식 C2605-1 후견사무보고서(미성년후견)

전산양식 C2605-1	후견사무보고서 (미성년후견)		0000방원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보고대상 기간		20 . . . ~ 20 . . .	
기 본 사 항 ♣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기본 신상정보를 기재합니다.			
미 성 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거 소 지		주소변경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있음
⇒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기재주세요.			
미 성 년 자 2		미 성 년 자 3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연 락 처	☎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미성년자와의 관 계		주소변경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있음
⇒ 후견감독인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 주소변경이 있을 시 변경된 주소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상 보 호 ♣ 미성년자의 신상보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 해당되는 □에 √표하고, ()나 공란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거 소 지 변 경 상 황	<input type="checkbox"/> 거소지변경 없음 <input type="checkbox"/> 거소지변경 있음 ※ 1년간 미성년자의 실제 거소지 변경 사항을 아래의 관에 작성합니다.		
	변경 시기	변경 주소	
	거소지 1		
거소지 2			

부록

생활명태	미성년자의 거주 형태	미성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입소시설, 입원장소 등을 포함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주택,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소유 <input type="checkbox"/> 후견인 소유 <input type="checkbox"/> 기타(성명 : , 관계:)					
	동거인	성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월수입
				세		원
			세		원	
			세		원	
심신상태	※ 해당 <input type="checkbox"/> 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하고 아래 칸에 구체적인 상황을 작성합니다.					
	심리 상태	<input type="checkbox"/> 좋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좋지 않음 (구체적 사항:)				
	신체적 상태	<input type="checkbox"/> 좋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좋지 않음 (구체적 사항:)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학 력	_____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_____학년				
	출결 사항	<input type="checkbox"/> 출석 양호 <input type="checkbox"/> 결석 잦음 <input type="checkbox"/> 중퇴				
	교 우 관 계					
후견활동상	항목	내 용				
	<input type="checkbox"/> 생활유지	미성년자의 생활비용 충당방법을 적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재산 <input type="checkbox"/> 후견인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의 료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나 검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고 육	방과후 활동, 학원교육, 공부방, 과외 등을 받고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신상에 관한 특이사항 및 의견	후견지속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속 <input type="checkbox"/> 종료				
		사유				
	향 후 양육 계획					

미성년자 재산목록 요약				※ 미성년자의 보유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있음)에 √표 한 경우 아래 해당 항목에 자세히 작성합니다.	
● 후견인은 각 재산의 해당 유무와 건수를 표기한 후 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준비된 첨부서류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재산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원료 <input type="checkbox"/> 여정	국세청 제출 상속세신고서(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 포함)를 제출합니다.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		
		직극재산	해유부담	건수	첨부 서류
미성년자의 소유 재산		1.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지, 건물)
		2. 예·적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입출금 내역서(미성년자 계좌)
		3. 보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험증권 사본 <input type="checkbox"/> 보험가입확인서(보험사 발급) <input type="checkbox"/> 보험료납입증명서
		4. 증권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잔고증명서(증권사 발행) <input type="checkbox"/> 주식 및 펀드 거래내역서
		5. 기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보증금반환채권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차량 <input type="checkbox"/> 차량등록증 사본 • 현금 및 유체동산 (귀금속, 골동품 등) <input type="checkbox"/> 사진 • 대여금 <input type="checkbox"/> 대여금증서 <input type="checkbox"/> 영수증 등 사본 • 기타 재산 <input type="checkbox"/> 채권계약서 사본
		소극재산	해유부담	건수	첨부 서류
미성년자의 채무(및)		6. 보증금반환채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대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부동산 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대출내역 확인서(대출기관 발급) • 신용대출 <input type="checkbox"/> 신용대출내역확인서 • 보험대출 <input type="checkbox"/> 보험대출(약관)확인서
		8. 차용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차용증 등 증빙서류 사본
		9. 기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관련 증빙서류
		수입내역	해유부담	건수	첨부 서류
미성년자의 수입		10. 임대소득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연금 및 사회보장수급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연금 수령내역 (유족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입금되는 통장의 거래내역 사본 등)
		12.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3. 기타 수입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자영 수입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보험금 수입 <input type="checkbox"/> 보험금 수령확인서 • 기타 수입 (후원금, 예금이자, 저작권료 등) <input type="checkbox"/> 관련 증빙서류

부록

적극 재산

※ 적극재산은 미성년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의미합니다.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부 예 산	건수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상태
	1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input type="checkbox"/> 공시지가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가압류/가등권
	2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input type="checkbox"/> 공시지가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가압류/가등권

예 · 외 적 입 산	건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1			
	2			
	3			
	4			

보 험	건수	보험회사명	보험증권번호	월 납입액	가입연월
	1				20 . .
	2				20 . .
	3				20 . .

주 권 예	건수	보유주식명	보유량	평가총액 (1주 평가액 × 보유량)	평가기준일
	1				
	2				
	건수	펀드명	계좌번호	평가총액	평가기준일
	1				
	2				

기 타	자산항목		내 용		
	보 증 금 반 환 채 권 <small>(등록비용 전액세 보증금 등)</small>	소재지	보증금	임대기간	
	차 량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
	기 타 재 산 권 <small>(양도권, 역술권, 귀속권, 약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및 회원권, 저작권, 특허권 등에 대해 작성)</small>	기타 재산명		시가	

적극재산 총액

소극재산		* 소극재산이란 미성년자가 알아 할 채무(빚)를 의미합니다.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보증금 반환채무	건수	채권자	반환채무액	채무반환 예정일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일	금융기관	대출금	대출만기 예정일
	신용대출	대출일	금융기관	대출금	대출만기 예정일
	보험대출(약관)	대출일	보험기관 / 보험증권번호	대출금액	대출금상환 예정일
			/		
			/		
차용금	차용일	채권자	차용금액	차용금상환 예정일	
기타	내 용			금 액	
소극재산 총액					

수입내역		* 미성년자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공동소유일 경우 미성년자의 지분에 따른 실제 수입만 기재합니다. * 작성란 부족 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건명	월소득	개월	1년 임대소득	
		월 ()원	()개월	()원	
		월 ()원	()개월	()원	
연금 및 사회보장수급권	수급명칭	월소득	개월	1년 수급총액	
		월 ()원	()개월	()원	
		월 ()원	()개월	()원	
근로소득	회사명	월소득	개월	1년 수입총액	
기타 수입 (후원금, 예금이자, 저작권료 등)	건명	액수			
수입 총액					

부록

지출내역 ※ 미성년자의 지출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지출내역은 후견인이나 가족을 제외한 미성년자에 대한 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항 목	지 출 내 용		
	항 목	단위	금 액
정기지출 항 목	교 육 비	공교육비(등록금 등)	월()원 × 12개월 = ()원
		사교육비	월()원 × 12개월 = ()원
	식 비	월()원 × 12개월 = ()원	
	피 복 비	월()원 × 12개월 = ()원	
	용 돈	월()원 × 12개월 = ()원	
	의 료 비	월()원 × 12개월 = ()원	
	기 타 (통신비 등)	월()원 × 12개월 = ()원	
비정기지출 항 목			
지출 총액			

재산변동 상 황	적극재산		소극재산		수입내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보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예·적 금 <input type="checkbox"/> 증권등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input type="checkbox"/> 차용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보증금반환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임대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 및 사회보장수급권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변동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 □에 √표 하고, 변동사항을 아래의 칸에 작성합니다.					
향후지출 및 관리계획					

후 견 인 의
전 체 의 견

후견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신상 및 재산 상황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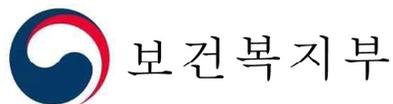
부록 5. 소년사건 집행상황 보고서

집행상황 보고서				
사건 번호	법원 20 푸	처분일 . . .	처분종료일 . . .	
행위개요				
보호처분 내용				
보호소년				
성 명				성 별
				남 □ 여 □
직 업			학 력	
주 소				
가족 사항	관계	성 명	연 령	주 소

부록 6. 보건복지부(202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2023. 4.



1. 추진 배경

-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약 12%)*는 부모 사망·장기간 소재불명·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

* '22년 조사 시 보호대상아동 20,505명 중 2,462명이 법정대리인 부재

- 이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입학·전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으나, 후견인 선임·지원체계는 미흡한 상황

2. 현황 및 문제점

① 지자체의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신청 미활성화

- 지자체장은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신청권자(그 외 검사, 아동 본인, 이해관계인 등) 중 하나이나, 실제 신청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시설장, 위탁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양육자는 서류준비 등 재판절차에 어려움을 느껴 선임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

② 유기아동 후견인 선임이 어려워 입양 등 보호조치 지연 발생

- 친권자를 알 수 없는 유기아동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입양 곤란
- 발견된 유기아동을 우선 양육시설에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보호조치 변경 없이 시설에서 장기 양육되는 경향

* "두 번 버려진 생후 7개월 건우, 후견인 없어 입양 대신 다시 시설로" (동아일보, 22.3.4.)

③ 양육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 권한과 책임에 부담

- 친권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 양육자가 실제로 필요한 권한*에 비해 부담이 큰 상황

* 의료서비스 이용,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학적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대리권

※ (해외사례)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후견인 선임 없이도 위탁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법정대리권 부여

④ 전문성 있는 공공후견인 양성 및 지원 부재

- 부모의 빚 상속, 정신장애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여 양육자가 후견인이 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원 및 연계체계 부재
- 치매 노인,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양성·지원 중이나, 보호대상아동은 아직 공공후견인 지원제도 미도입

⑤ 후견인 선임 이후 활동에 대한 지원·감독 체계 미흡

- 후견인의 권한 행사 및 활동*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거나 비용 ((예)아동 면담 시 교통비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지원 부재
 - * 법원에 후견인 취임신고 및 후견사무 보고, 각종 권한 행사 등
- 후견인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 분담을 위해 법원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선임이 법원 재량이어서 활성화 미흡
 - * '21년 미성년후견 인용 사건 877건 중 441건(약 50%)만 후견감독인 선임 ('22. 사법연감)

3. 추진방향 및 과제

① 시·군·구청장의 후견인 선임 신청 활성화 추진

- 시·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후견인 선임에 관한 구체적 신청 절차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양육상황점검(분기별 1회)을 통해 후견 필요 아동을 발굴하고, 사례 결정위원회*가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양육자, 공공후견인 등)해 선임 신청
 - * 아동의 보호조치·퇴소조치 등 아동복지·보호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기구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등 아동 관련 현장 전문가등으로 구성)
-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을 위한 요건·절차 마련 및 시·군·구 교육 실시 (지침 제작·배포 및 교육, '23.下~)

-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률 자문, 소송대리 등 재판절차 지원
 - 가정법률상담소·지방변호사회 등과 연계·협력체계 확립·운영

② 유기아동 후견인을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자동 지정

- 유기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아동 발견 즉시(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할(발견지)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③ 위탁부모에게 제한적 법정대리권한 부여

-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탁부모에게 필수적 범위* 內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한 부여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 입·퇴원·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 ▲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검토) 에 필요한 사항

◆ 위탁부모의 권한 관련 해외 사례

- (독일) 위탁부모는 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작은 친권(kleines Sorgerecht)*' 행사 가능
 - * 일상적 사무 결정·대리권, 사회보장급여 청구권, 긴급대리권 등
- (영국)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자는 친권이나 후견권과 무관하게 아동을 위해 합리적인 행위라면 무엇이든 가능
- (일본) 위탁 부모는 재판 없이도 신상에 관한 권한 일부 행사 가능

- 양육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시·군·구의 정기적 감독 실시 (분기별 양육상황점검시 병행 실시)

④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23.下, 시범사업)

- 아동복지·법률 전문가 등 대상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교육 및 후보자 양성(시범사업('23.下))
- 공공후견인 연계가 필요한 아동 발굴 시, 시·군·구에서 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 의뢰
 -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후보군에서 적절한 후보를 추천, 시·군·구청장이 보장원의 법률 지원을 받아 법원에 선임 신청

⑤ 후견인 활동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에 대한 법적 자문, 보수교육 제공, 월 활동비용 지원 등 실시 (시범사업('23.下))
 - 후견인이 가입할 수 있는 피후견 아동에 대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등 후견인 지원 방안 추가 모색 (연구수행, '24.)
- 임의기관인 '후견감독인'을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관할(주소지) 시·군·구청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4. 향후 계획

①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아동복지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추진('23.~)

② 보호대상아동 후견 실태조사 및 후견 필요 아동 발굴

-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3.上)
- 양육상황점검시 후견 필요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연계 ('23.下)

③ 공공후견제도 도입

- 연구용역 통해 공공후견인 사업 매뉴얼 개발 ('22.下 ~ '23.上)
- 후견인 후보자 모집·양성 및 시범사업 실시('23.下~)

부록 7.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1. 현직 가정법원 판사

가. 아동과 관련된 가사재판을 하면서 무력감 느낀 사건들이나 상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나. 가사조사 관련

- (1) 조사관들의 인사이동, 평가, 교육 등
- (2) 소년법 조사기록은 어디 정도까지 자세한지?
- (3)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간의 가사조사 기록은 공유되는지? 판사님이 보고자 한다면 가사조사기록들을 다 볼 수 있는지?

다. 소년보호사건 관련

- (1) 소년보호사건으로 만나는 소년의 형제자매에 개입이 가능한지?
- (2) 소년사건으로 들어온 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하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면 아동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 (3) 소년사건에서 조사를 더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만하면 충분하고 판사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지?

라. 아동학대 관련

- (1) 아동보호체계(아동학대 사건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의 중심이 지자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정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2)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가정법원이 적극적인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에 있어, 법원 내부적인 관할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는지?
- (ex. 아동학대 행위자의 형사재판 진행 중, 해당 재판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경우 등)

(3) 실제 다른 사건(이혼 / 입양 / 소년보호 / 가정보호)을 진행하던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건이 있는지? 있었다면 실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ex. 이혼 소송 중 부부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권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시)

(4)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가정법원의 재판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ex.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시설로의 보호가 아동복지법상의 행정처분인 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둘 다 가능한 체계)

(5)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가정법원의 친권의 제한 및 미성년 후견 지정의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6)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 판결 이후 가정법원의 집행, 감독 업무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집행, 감독 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마. 이혼 관련

(1) 절차보조인이 있다면 이혼재판에서 도움이 될지?

(2) 최근 면접교섭이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2. 현직 로스쿨 교수

가. 아동과 가정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

나. 통합 가정법원의 실현 가능성

다. 지자체가 후견인 풀과 위탁기관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법원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라. 법원의 집행감독과 지자체의 사례지원체계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마. 이 연구 관련 참고하면 좋을만한 해외 법제나 관련 중요사례 추천해주세요

바. 아동보호체계(아동학대 사건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의 중심이 지자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정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 현행 법제도 중 가정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한 조문으로,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있는데(판사의 직권 개시 가능),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만 국한해서 개시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중 아동의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 외 분리보호에 있어,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방향은? (ex) 보호조치시 원칙적인 사법심사 일원화 방식/ 현행과 같이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병행하되 불복시 가정법원의 관할로 일원화 / 아동학대범죄로서 가정외분리보호의 경우는 사법심사 원칙이되 그 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처분 병존 등)

자.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가정법원의 친권의 제한 및 미성년 후견 지정의 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차.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 위탁기관 감독, 가사조사관의 교육 등을 담당할 별개의 기관(공단과 같이 공공과 민간의 중간 조직 형태)를 두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독일의 아동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카. 이혼, 가정폭력 등 부부간의 갈등이 주로 심리대상이지만 사실상 아동이 피해를 많이 입는 사건에서 아동의 입장이거나 아동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정신적 질환이나 알콜중독, 무기력과 같은 상태이거나 양측다 양육을 원치 않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결국 이혼판결을 함에 그치는 사안 등을 생각해본다면 이와 같은 가정 사건 처리의 현실에서 이대로 아동을 방치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 제도의 중에 반영할 만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타. 위와 관련한 질문인데 교수님의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 중 특히 ‘면접교섭보조인’이나 ‘절차보조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3. 전직 가정법원 판사

가. 이혼 학대 가정폭력 소년범 등 아동 관련 가정법원 역할 및 한계와 관련하여 무력감 느낀 사건이나 사례들이 있었는지?

나. 집행감독이 실효적이었는지?

다. 보호관찰소와 법원의 협업관계 중 소년보호사건 관련 개선사항은?

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지나치게 학대피해아동에만 협소하게 운영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사사건으로 가는 오히려 피해가 큰 아동학대사건에서 아동이 더 제도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 피해아동보호명령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은?

바. 가정법원 미설치 법원에서 직권 피해아동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사. 법원 내부 안에서 아동 관련 산재되어 있는 각 사건별 정보공유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해져야 한다고 보는지?

아. 이혼이나 가정폭력은 사실 부부관계에 대한 분쟁이지만 실제로 아동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 면접교섭이나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심각합니다. 서로 자신의 영향력 하에만 두고 상대방을 배제하려고 하거나 반대

로 서로 양육을 안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려는 등 각종 의견대립이 있으며, 심지어 이혼을 하다가 아동학대로 서로 고소를 여러 건 하는 등 아동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분쟁만 격해집니다. 이에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절차 보조인, 면접교섭보조인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자. 소년법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한지?(가령, 보호처분의 세분화 등)

차. 소년보호사건으로 만나는 소년의 형제자매에 개입이 가능한지?

(소년사건으로 들어온 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하여 직권으로 피아보를 할 수 있다면?)

카. 소년사건에서 조사를 더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만하면 충분하고 판사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지?

타. 아동보호체계(아동학대 사건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의 중심이 지자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정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가정법원이 적극적인 직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에 있어, 법원 내부적인 관할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는지? (ex. 아동학대 행위자의 형사재판 진행 중, 해당 재판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경우 등)

하. 이처럼 가정법원의 역할, 기능, 권한을 넓히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방향으로의 개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4. 현직 가사조사관 A

가. 소년법 사건 조사는 어디까지 자세히 이루어는지?

나. 판사는 어디까지 자세히 참고하는지? 사례로 설명한다면?

다. 아동 관련 다른 재판부 조사관의 조사자료를 볼 수 있는지, 없다면 그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방안은?

라. 조사관들의 인사이동, 평가, 교육 등

마. 소년사건에서 조사를 더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만하면 충분하고 판사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가(권한을 부여하여)?

바. 전문조사관제도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는

사.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가정법원의 친권의 제한 및 미성년 후견 지정의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지 /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 판결 이후 가정법원의 집행, 감독 업무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집행, 감독 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 현행 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 가정보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 사건에 있어, 조사관들의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판결문 및 판사가 명령한 내용에 한정되는지,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넓힐 수 있는지), 판사가 집행사건에 있어 집행 사건의 조사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지?

아. 만약, 판사의 집행조사 명령의 내용을 이혼사건의 면접교섭 내용이나, 소년보호 사건에서 보호관찰을 명하며 판사가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하게 표준화, 구체화(예를 들어, 원가정 회복이나 부모 역할 재고를 위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 일시, 장소의 지정” 이나, “자녀의 학교 학부모 상담에 참여할 것” 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 아동보호체계 속에 있는, 지자체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시설과의 소통과 연계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지 / 어떤 보완이 더 필요할지?

카. 실제 다른 사건(이혼 / 입양 / 소년보호 / 가정보호)을 진행하던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건이 있는지 / 실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ex. 이혼 소송 중 부부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판사님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타. 혹시 가정폭력사건에서 조사를 많이 해보셨는지? 그런 경우 가족 전체가 폭력적이거나 하여 부모가 아니라 형제자매로부터 폭력피해를 입은 사안이나 부모를 때

리거나 하는 사안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경우에 대한 특징 및 처리결과 등.

파. 가사조사관에 대한 더 많은 교육과 여유가 필요하고, 반대로 일정한 경우 징계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점도 고민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하. 기타 가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 처우, 문제점, 개선안에 대한 의견들

부록 8. 안원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25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서영교 · 차지호 · 이춘석
오세희 · 최민희 · 이성운
박지원 · 김기표 · 정태호
박은정 · 박균택 · 김문수
의원(12인)

제안이유

「가사소송법」은 제정·시행(1991. 1. 1.)된 지 34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음.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가사 관련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의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춘 가사 관련 내용을 담고, 가사사

- 2 -

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전면개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제1편 총칙

1)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법의 목적에 기존의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외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여 목적 규정이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반영하도록 함.

2)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가) 가사사건 분류를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함.

나) 종전에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가사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을 가정법원 관장 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함.

3)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안 제6조)

지방법원은 제1심이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이고, 이들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민사사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4)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가) 가정법원에 사실조사나 필요한 검사 등을 하는 가사조사관을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정원·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가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5)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안 제16조)

가)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학·상담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4 -

다)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6)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 강화(안 제20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도록 함.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안 제31조)

가정법원은 이혼의 무효,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추가(안 제37조)

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함.

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다. 제3편 가사비송

- 1)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및 각칙 편제 정비(제3편)
 - 가)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 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나)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 2)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 가) 가사비송사건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나) 미성년자,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개시,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정지 등의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
- 3) 가사비송사건 재판의 방식(안 제67조)

가사비송사건의 실체에 관한 중국재판의 본질은 결정이고, 상급심의 재판형식도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국재판의 형식을 심판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 6 -

- 4) 가사비송사건 불복제도 정비(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즉시항고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합하여 법률에 규정함.
- 5)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구 규정 정비(안 제83조 및 별표 4)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의 범위를 사건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 6)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 제도 도입(안 제84조)

법원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후견사건 가운데 사회취약 계층뿐 아니라 가족의 방임, 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익실현에 공백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7)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 인정(안 제115조)

가사소송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8)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안 제117조)

가)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친권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성질상 화해에 적합하지 아니

한 일부 가사비송사건은 제외함.

나) 가정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제도 등 준용(안 제127조)

종전에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규정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가사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함.

2) 조정의 원칙 명시(안 제137조)

가) 조정기관은 조정을 할 때에 당사자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분쟁을 평화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나) 조정기관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함.

3)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안 제139조)

가정법원은 조정이 신청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련

- 8 -

사건으로 이송된 민사사건의 경우도 지방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함.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안 제141조)

가)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우 현상 변경 행위나 물건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처분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변경 제도를 신설함.

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

2)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46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함.

바. 제6편 벌칙

1) 감치명령 요건 완화(안 제152조)

종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 부양료·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2) 형벌 규정의 벌금액수 현실화(안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

- 가)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 나)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보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각각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재산조회 결과 등을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임.

법률 제 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 및 당사자 등의 책무) ① 가정법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사사건(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절차가 적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생활 보호의 원칙) 법관, 법원공무원, 그 밖에 직무상 지위로 인하여 가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람은 당사자와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사사건에 대한 심리(審理) 및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라 한다)

나.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이하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이라 한다)

2. 가사비송사건

가. 별표 2에서 정하는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이하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이라 한다)

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이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이라 한다)

3. 그 밖에 이 법에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으로 정한 사건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으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재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하는 사건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절차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 심리·재판한다.

제5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 지정)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①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민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소송(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호의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일 것

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遺留分)의 반환청구 사건

나. 「민법」 제839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당사자가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소송 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일 것

3. 제2호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 결과가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민사사건은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련 사건의 병합 등)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訴)로 제기할 수 있다.

1. 청구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경우
2. 1개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다른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1.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가 있을 것
2. 제1호의 사건과 제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일 것

④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제3항에 따라 병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전원에게,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병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병합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⑥ 가정법원은 제6조에 따라 이송된 관련 민사사건을 해당 가사사건과 병합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제8조(법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 본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거나, 사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
2. 법관이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법관이 당사자등의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경우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경우
5. 법관이 당사자등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6.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審級)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경우.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법원사무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2. 가사조사관
3. 조정위원

제10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결정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검사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제11조(가사조사관) ①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검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가사조사관을 둔다.

②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 정원, 업무 범위, 사실조사의 방법, 절차 및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당사자 등을 위한 지원) ①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생활환경이나 관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사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단체 등과의 연계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
3.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등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② 법원행정처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직을 둔다.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상담 권고)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전문 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전문 상담기관을 상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위원 또는 상담기관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본인 출석주의)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제54조의 비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①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이하 “절차보조인”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해당 절차의 특성, 미성년자의 나이와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절차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절차보조인은 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술을 보조하는 등 미성년자를 도울 수 있다.

⑥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절차보조인이 임무수행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2. 절차보조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절차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⑦ 절차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 절차, 수당 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절차구조) ①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의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敗訴)할 것이 분명하거나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절차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절차구조에 대한 재판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절차구조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7조에 따른 절차구조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실조사의 촉탁 등) ①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관서 등 행정기관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의료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와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촉탁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기관·단체 및 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진술할 수 없거나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다른 제소권자나 청구권자가 있는 사건의 수계에 관한 특칙)

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원고 또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나 청구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1. 사망

2.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만, 소송능력 또는 비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수계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계신청은 수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수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 또는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23조(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나이·직업 또는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영상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복사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침해되어 그 사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 등이 있을 때

④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 및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⑦ 가사사건의 기록 열람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위임 규정)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편 가사소송

제1장 통칙

제26조(적용 법률) ① 가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에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

285조, 제288조(자백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49조(같은 법 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0조(같은 법 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1조제2항, 제369조 및 제4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에는 「민사소송법」 제148조제2항·제3항 및 제2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은 다른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하는 경우에도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관할) ① 가사소송사건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관할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소송능력) 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원고로서 소의 제기, 그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반소에 대한 응소(應訴)를 포함한다] 및 항소 또는 항고만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민사소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29조(당사자의 추가·경정) ①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

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경정(更正)하는 것은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소송절차 공개의 예외) ① 재판장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사건 본인, 증인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법정대리인, 사건 본인, 증인, 절차보조인 또는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소송절차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속의 순위 또는 상속분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명,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1 제1호가목3)의 이혼의 무효 사건

2. 별표 1 제1호가목4)의 이혼의 취소 사건
3. 별표 1 제1호나목2)의 친생부인 사건
4. 별표 1 제1호나목6)의 인지청구 사건
5. 별표 1 제1호나목7)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6. 별표 1 제1호나목10)의 과양의 무효 사건
7. 별표 1 제1호나목11)의 과양의 취소 사건
8. 별표 1 제1호나목15)의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 ②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명단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직권조사와 이에 따른 협력의무) ① 가정법원이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4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제36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장 혼인관계 소송

제37조(관할)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혼인관계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정법원
 - 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나.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6.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제38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별표 1 제1호가목1) 및 3)에 따른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9조(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이혼취소의 소의 상대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별표 1 제1호가목1)·2) 및 5)에 따른 부부의 혼인의 무효나 취소,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2. 「민법」 제8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제41조(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 별표 1 제1호가목5)의 재판상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재판상 화해 및 청구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 소송

제1절 친생자관계 소송

제42조(관할) ①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사건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별표 1 제1호나목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은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3조(아버지의 결정 사건의 소의 당사자) ① 별표 1 제1호나목1)에 따른 아버지의 결정 사건의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를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소를 어머니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제기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인지무효의 소 등의 당사자 등)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인지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하고, 별표 1 제1호나목4)·5) 및 7)에 따른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하며, 별표 1 제1호나목6)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의 협의 권고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5조(유전인자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心證)을 얻지 못하였을 것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입양·친양자입양 관계 소송

제46조(관할) 별표 1 제1호나목8)부터 15)까지의 사건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7조(입양무효의 소 등의 당사자) 별표 1 제1호나목8) 및 10)에 따른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하고, 별표 1 제1호나목9)·11)·13) 및 14)에 따른 입양·친양자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파양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8조(재판상 파양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성년자 사이의 별표 1 제1호나목12)의 재판상 파양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재판상 화해 및 청구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

제49조(관할) ①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50조(비송능력) 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2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각 사건

2.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3 제1호의 각 사건,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양육비 지급청구 사건,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의 각 사건.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사건 중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에 관한 처분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사비송절차의 비송능력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중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절차가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바꿨을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절차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당사자의 소송능력, 자격 상실에 따른 소송절

차의 중단·수계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4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237조제2항 및 제238조를 준용한다.

제52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법률관계가 변경될 수 있는 자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정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지위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참가를 신청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결정과 제5항에 따른 참가결정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결정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의 참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

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5항의 참가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차에 참가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조(가사비송사건의 수계) ①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절차를 속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는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인등에게 절차를 수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차를 수계할 자,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3조제2항, 제235조 후단, 제237조제1항 후단, 제238조, 제239조 후단, 제240조 후단, 제242조, 제243조 및 제247조를 준용한다.

제54조(비송대리인) ① 변호사 또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가사비송사건의 비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당사자

가 되는 경우에 그 직위상 해당 사건에 관한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③ 가사비송사건의 비송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비용의 부담) ①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절차의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한 사건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준용규정) 가사비송사건 절차의 비용 부담과 담보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청구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결정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건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청구가 당사자 외의 사건 본인의 신분관계나 그 밖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청구 연월일
 6. 가정법원의 표시
 - ④ 말로 결정을 청구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4항의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이하 “청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58조(재판장 등의 청구서 심사권)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1. 청구서가 제57조에 어긋나는 경우
 2.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재판장은 청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명령으로 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청구서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서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9조(청구서 부분의 송달 등) ①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서 또는 청구조서의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또는 청구조서의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2 제1호에 따른 후견에 관한 사건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그 청구가 있었던 사실 및 청구 취지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청구의 취하)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7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청구 취하의 효력이 있다.

1. 제67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후에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다음 각 목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본안(本案)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審問期日)에 진출한 경우

가. 별표 3 제1호다목의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

나. 별표 3 제4호나목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청구의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

2. 상대방이 출석한 심문기일에 제3항 단서에 따라 말로 취하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날

3.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심문기일에 제3항 단서에 따라 말로 취하하였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

⑦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1조(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취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청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가목의 사건 중 「민법」 제9조제1항 및 제959조의2 0제1항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청구
 2. 별표 2 제1호다목의 사건 중 「민법」 제12조제1항 및 제959조의2 0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개시의 청구
 3. 별표 2 제1호마목의 사건 중 「민법」 제14조의2에 따른 특정후견의 청구
 4. 별표 2 제1호바목의 사건 중 「민법」 제9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청구
 5. 별표 2 제1호서목의 사건 중 「민법」 제959조의15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청구
 6. 별표 2 제7호차목의 사건 중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청구
 7. 별표 3 제2호다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8. 별표 3 제2호라목의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청구
- 제62조(청구 취하의 간주) ① 청구인(청구의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심문기일을 정하여

청구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정한 심문기일이나 그 뒤에 열린 심문기일에 청구인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심문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심문기일 또는 그 뒤의 심문기일에 청구인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는 “상소”로, “청구인”은 “상소를 제기한 사람”으로 본다.

⑤ 제61조에 따라 청구의 취하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사건의 병합) 여러 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제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1개의 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신청할 법원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64조(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65조(진술 청취의 방법) 가정법원이 이 법 및 대법원규칙에 따라 당

사자, 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그를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절차보조인의 보고 등 적당한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진술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의식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증거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探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③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99조제2항, 제349조(같은 법 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0조(같은 법 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1조제2항 및 제369조는 제외한다.

④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심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7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終局裁判)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한 법관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한 법관이 기명날인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사건 본인
2. 주문(主文)
3. 이유
4. 법원

③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서에는 제2항제3호의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결정의 고지 및 효력발생시기) ① 가정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4장제4절을 준용한다.

② 결정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이 고지를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69조(결정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결정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제70조(가집행)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미성년 자녀의 인도에 관한 결정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 판결로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71조(재판의 취소·변경) ① 가정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청구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당사자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다.

제72조(항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을 준용한다.

제73조(즉시항고) ① 제67조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즉시항고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결정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당사자가 여럿일 때에는 최후로 결정을 고지받은 당사자를 말한다)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

⑤ 즉시항고는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74조(항고법원의 재판) ①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재항고) 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②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2장을 준용한다.

제76조(검사에 대한 통지) 가정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준용규정) ① 가사비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추가·경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48 -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152조부터 제160조까지 및 같은 법 제1편제4장제3절을 준용한다.

제2장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제1절 통칙

제78조(관할)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이 법에서 관할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79조(심리 방법 등) ①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당사자와 관계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2절 후견에 관한 사건

제80조(관할 등) ① 별표 2 제1호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1호가목·다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결정, 같은 호 마목·바목·서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의 결정 및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의 결정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별표 2 제1호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해당 결정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을 말한다)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항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

2.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3.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의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피후견인이,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1조(정신상태의 감정) ① 가정법원은 별표 2 제1호가목·다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별표 2 제1호가목·다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2조(진단 결과 등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나 그 밖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별표 2 제1호마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의 결정을 할 경우에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2. 별표 2 제1호서목의 사건 중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결정을 할 경우에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후견에 관한 사건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별표 4 제1호, 제2호, 제19호 및 제22호의 사건에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심문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65조 및 제366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84조(국선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건 본인,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건 본인에게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더라도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건 본인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건 본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되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하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이라 한다)의 보수 및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의 자격, 선임 및 취소, 보수 및 비용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후견사무 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6조(후견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후견사무·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
2.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

② 가정법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에게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하면 피후견인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의 의무, 책임, 보수 및 비용 청구 등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제87조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제86조에 따라 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는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86조에 따라 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민법」 제95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8조(결정의 고지 등) ① 가정법원은 후견에 관한 사건의 결정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후견인(그 결정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 및 후견감독인(그 결정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즉시항고)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미성년후견에 관한 결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별표 2 제1호바목의 사건 중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결정: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결정: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

후견감독인

- 다. 별표 2 제1호가목·타목의 사건 중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결정 및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결정: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2. 성년후견에 관한 결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 가. 별표 2 제1호가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의 개시결정: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자, 같은 법 제959조의2제1항의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 나.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결정: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
 - 다. 별표 2 제1호가목·타목의 사건 중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결정,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결정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결정: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한정후견에 관한 결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 가. 별표 2 제1호다목의 사건 중 한정후견의 개시결정: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같은 법 제959조의2제1항의 임의후

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나.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결정: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

다. 별표 2 제1호카목·타목의 사건 중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결정,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결정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결정: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특정후견에 관한 결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별표 2 제1호마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의 결정: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 같은 법 제959조의2제1항의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나.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결정: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감독인

5. 임의후견에 관한 결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별표 2 제1호서목의 사건 중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결정: 변경이 청구된 임의후견감독인

나. 별표 2 제1호저목의 임의후견인의 해임결정: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

다. 별표 2 제1호처목의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결정: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

② 다음 각 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인 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가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11조에 규정된 자

2. 별표 2 제1호다목의 사건 중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14조에 규정된 자

3.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940조에 규정된 자

4.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결정: 「민법」 제940조에 규정된 자

5.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959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된 자

6.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959조의9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된 자

7. 별표 2 제1호서목의 사건 중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된 자

8. 별표 2 제1호저목의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된 자

제3절 부재자 및 실종에 관한 사건

제90조(관할)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별표 2 제2호나목의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91조(결정의 고지) ① 가정법원은 별표 2 제2호가목의 사건 중 재산 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의 결정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별표 2 제2호나목의 사건 중 실종선고를 취소한 결정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사건 본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92조(즉시항고)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사건 중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을 개임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별표 2 제2호나목의 사건 중 실종을 선고한 결정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건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실

종선고를 취소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절 성(姓)과 본(本)에 관한 사건

제93조(관할) 별표 2 제3호의 성과 본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94조(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부모와 자녀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1. 별표 2 제3호나목의 자녀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결정
2. 별표 2 제3호다목의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결정

제5절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건

제95조(관할) 별표 2 제4호의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건은 제37조제1호, 제3호, 제4호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96조(즉시항고) 별표 2 제4호의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절 친생자에 관한 사건

제97조(관할) 별표 2 제5호의 친생자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98조(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별표 2 제5호가목 및 나목의 친생부인의 허가결정 또는 인지의 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어머니의 전 남편과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은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

제99조(즉시항고) 별표 2 제5호가목 및 나목의 친생부인의 허가결정 또는 인지의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절 양자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건

제100조(관할) 별표 2 제6호의 양자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건은 양자·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01조(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별표 2 제6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사건에서 입양 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사람

2.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3.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4.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5. 양부모가 될 사람
6.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별표 2 제6호마목의 친양자 입양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1. 친양자가 될 사람
2. 친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술을 들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
4.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5. 양부모가 될 사람
6.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제102조(양육능력 등에 대한 조사) 가정법원은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2. 국세청장: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국가경찰관서의 장: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자료
4.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진료기록자료(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3조(결정의 고지) 가정법원은 별표 2 제6호가목·다목 및 마목의 입양에 대한 허가결정과 친양자 입양의 허가결정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와 법정대리인

제104조(즉시항고) 별표 2 제6호가목·다목 및 마목의 입양에 대한 허가결정과 친양자 입양의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제101조에 규정된 자(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외한다)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절 친권에 관한 사건

제105조(관할) ① 별표 2 제7호의 친권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7호가목의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사건은 제3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06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별표 2 제7호나목의 사건 중 친권자의 지정결정: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2. 별표 2 제7호마목 및 차목의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결정: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제9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07조(관할) 별표 2 제8호의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08조(결정의 고지)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결정에 대해서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8호가목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 허가결정: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그 상속인
2. 별표 2 제8호라목의 감정인의 선임결정: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그 감정인

3. 별표 2 제8호마목의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결정: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그 상속재산관리인 및 공동상속인
4. 별표 2 제8호바목의 상속재산의 분리결정: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그 상속인
5. 별표 2 제8호차목의 상속재산의 분여(分與)결정: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제109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별표 2 제8호바목의 상속재산의 분리결정: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된 자
2. 별표 2 제8호차목의 상속재산의 분여결정: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

제10절 유언에 관한 사건

제110조(관할) ① 별표 2 제9호의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9호가목의 구수증서(口授證書) 유언의 검인 사건은 제1항에 따른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외에 유언

자 주소지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제111조(결정의 고지) 가정법원은 별표 2 제9호라목 및 자목의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해임 결정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그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2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별표 2 제9호가목의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결정: 이해관계인
2. 별표 2 제9호가목의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 청구를 기각한 결정: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된 자
3. 별표 2 제9호라목에 따른 사건 중 유언집행자의 선임결정: 이해관계인
4. 별표 2 제9호자목의 유언집행자의 해임결정: 유언집행자
5. 별표 2 제9호차목의 부담이 있는 유언의 취소결정: 수증자(受贈者),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3장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제1절 통칙

제113조(관할)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14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2절을 준용한다.

제115조(반대청구) 가사소송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원고 또는 청구인의 청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6조(심리 방법 등) ①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 전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그 밖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화해 등) ①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성립한 화해를 심문조서에 적었을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은 제외한다.

② 가정법원,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등의 송부, 이의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및 제226조부터 제2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재산명시) ① 가정법원은 별표 3 제1호가목·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및 같은 표 제4호나목의 부양료, 재산분할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의 신청,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목록을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재산조회) ① 제118조에 따른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회사등, 그 밖의 단체 등에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회사등, 그 밖의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 절차, 조회 비용, 조회 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의 결과를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제120조(당사자) 별표 3 제1호의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의 결정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절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

제121조(관할)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제113조에서 정한 가정법원 외에 사건 본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1. 별표 3 제2호가목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127조에서 같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2. 별표 3 제2호나목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
3. 별표 3 제2호다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사건
4. 별표 3 제2호라목 중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

제122조(당사자) ① 별표 3 제2호가목의 사건 중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사건의 결정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자녀 및 검사도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의 결정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 사건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도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③ 별표 3 제2호가목의 사건 중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된다. 다만,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여서는 청구할 수 없다.

1. 면접교섭권의 처분: 「민법」 제837조의2제1항·제2항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 상호 간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거나 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2.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민법」 제837조의2제3항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 상호 간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별표 3 제2호다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및 같은 호 라목 중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사건의 결정은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⑤ 별표 3 제2호라목의 사건 중 친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의 결정은 청구 당시 친권 또는 친권의 일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대행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3조(즉시항고) 별표 3 제2호다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및 같은 호 라목의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 「민법」 제925조에 규정된 사람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절 부양에 관한 사건

제124조(즉시항고) 별표 3 제3호의 부양에 관한 처분(친족 사이의 구상청구를 포함한다)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 이해관계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25조(당사자) 별표 3 제4호의 상속에 관한 사건의 결정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6조(즉시항고) ① 별표 3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기여분의 결정과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 이해관

계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권자 중 1명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결정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편 가사조정

제127조(준용 법률) 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가사조정에서의 당사자의 추가·경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28조(조정 전치주의)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결정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5)의 재판상 이혼 사건 및 같은 호 나목12)의 재판상 파양 사건(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성인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호 나목16)의 상속권 상실 사건
2. 별표 1 제2호의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3. 별표 3 제1호의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4. 별표 3 제2호가목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5. 별표 3 제2호나목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

6. 별표 3 제3호의 부양에 관한 사건

7. 별표 3 제4호의 상속에 관한 사건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9조(관할) 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조정사건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조정기관) ①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은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131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1. 미리 고등법원장,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 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2.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는 일

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제132조(조정담당판사의 지정) 조정담당판사는 고등법원장,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

제133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제130조제1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2. 제130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130조제4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제134조(조정 신청 방식) 조정 신청 방식에 관하여는 제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5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6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조정의 목적인 청구
2. 제1호의 청구와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가사소송사건 및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② 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이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제137조(조정 원칙) ① 조정기관은 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할 것
2. 분쟁을 평화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3.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② 조정기관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8조(조정외 성립 및 효력)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 판결 또는 확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제136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 청구의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민사사건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을 수 있는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정법원이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0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1.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제1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경우

제5편 이행의 확보

제141조(사전처분)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결정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보호, 감독과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②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1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급박한 경우 단독으로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제148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은 집행력을 가진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에 관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의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⑨ 제7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담보를 제공하게 하면서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

2.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

3.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명령

제142조(가압류·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141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6조제1항에 따라 이송된 이후의 관련 민사사건과 제139조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판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관련 민사사건을 포함한다)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87조를 준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제143조(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한 후 양육비가 감액된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⑦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⑧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4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5항의 명령을 양육비채권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⑨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⑪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과 제6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결정, 담보제공방식,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담보의 취소 및 담보물변경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⑨ 제2항과 제6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148조제1항과 제152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5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결정, 사전처분결정,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 의무

2. 미성년 자녀의 인도 의무

3.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결정, 사전처분결정,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하거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을 말한다)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제2항에서 정한 가정법원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1. 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의무의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2. 그 외의 의무의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④ 제3항제1호의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은 관련 이행명령 사건이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련 이행명령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병합결정 및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148조제1항과

제152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6조(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① 이 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민사집행법」 제3조제1항의 집행법원은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 또는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된다.

②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이행명령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이행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집행법원은 제2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녀의 나이 및 의사능력 유무
2. 자녀의 의사, 건강 및 심리상태
3. 자녀의 양육상황
4. 당사자와 자녀 사이의 상황 및 집행에 따라 자녀가 영향을 받는 정도

④ 집행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引渡)를 집행할 때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자녀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편 벌칙

제147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① 제15조에 따른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제15조에 따른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을 결정으로 구인(拘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부과한다.

제148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1항, 제143조제1항, 제1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45조제1항의 명령이나 제1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하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제45조제1항, 제143조제1항, 제1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45조제1항의 명령이나 제1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 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49조(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부과한다.

제150조(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51조(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① 제1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52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44조제6항에 따른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148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53조(즉시항고) ①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4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248조제2항·제3항 및 제250조제2항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5조(감치를 명하는 재판절차) 제148조제2항과 제152조에 따른 감치를 명하는 재판절차와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6조(비밀누설죄) ①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과정이나 조정장·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숫자를 누설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157조(보도 등 금지 위반죄) 제23조에 따른 보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제118조에 따른 재산목록, 제119조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를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미성년자의 진술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가사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실조사 등에 대한 당사자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진술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4조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가사비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②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법정기간의 진행이 시작된 경우에 그 법정기간과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비송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가사비송사건의 비송대리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사전처분의 집행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14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행해진 사전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국선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3조(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신청된 미성년 자녀의 인도청구 집행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금전의 임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금전 임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금전을 임치한 경우의 의무 이행 간주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 신청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26일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 제1790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가사소송법」(법률 제1790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단서 중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을 “성·본 계속사용허가결정”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심판이”를 “결정이”로, “심판서”를 “결정서”로 한다.

②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③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사소송법」 제2조”를 “「가사소송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사소송법」에 따른 다류(類) 가사소송 사건”을 “「가사소송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취소심판”을 각각 “취소결정”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⑤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성년후견종료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정후견개시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정후견종료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특정후견의 심판)”을 “(특정후견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심판 사이의 관계)”를 “(결정 사이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제690조 후단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804조제2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819조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836조의2제4항 중 “심판정본”을 “결정정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가사소송법」 제41조”를 “「가사소송법」 제69조”로 한다.

제848조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871조제2항 전단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893조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929조의 제목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를 “(성년후견 결정에 의한 후견의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성년후견개시결정”으로,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959조의2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제959조의4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959조의11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959조의20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및 제2호 중 “판결·심판·결정·명령”을 각각 “판결·결정·명령”으로 한다.

제31조의2 단서 중 “판결·심판·결정·명령”을 “판결·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을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결·심판·결정·명령”을 “판결·결정·명령”으로 한다.

⑧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호가목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⑨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심판절차”를 “결정절차”로 한다.

⑩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6항제1호 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및 제44조”를 “「가사소송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별표 2 제8호아목 및 제107조”로 한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심판청구”를 각각 “결정청구”로 한다.

⑫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가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가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가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가사소송법」 제15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⑭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용심판”을 “인용결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⑮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55호, 시행 2025. 7.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인용심판”을 “인용결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⑯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53호, 시행 2025. 7.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용심판”을 “인용결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용심판”을 “인용결정”으로 한다.

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⑱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⑲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가사소송법」 제141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42조에 따른 가처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를 “「가사소송법」 제145조, 제148조제1항 및 제152조”로 한다.

제14조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27조 중 “「가사소송법」 제62조”를 “「가사소송법」 제141조”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하거나 준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거나 준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사소송사건(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유형		사건 내용
1. 가족관계 가사소송 사건	가. 혼인관계 사건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무효 4) 이혼의 취소 5) 재판상 이혼 6)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나. 부모와 자 녀 관계 사 건	1) 아버지의 결정 2) 친생부인 3) 인지의 무효 4) 인지의 취소 5) 인지에 대한 이의 6) 인지청구 7)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8) 입양의 무효 9) 입양의 취소 10) 파양의 무효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16) 상속권 상실
2. 재산관계 가사소송 사건	가. 약혼의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 나.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 다.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 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마. 피인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별표 2]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사건 내용	근거 규정
1. 후견에 관한 사건	
가. 성년후견개시의 결정과 그 종료의 결정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
나.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다. 한정후견개시의 결정과 그 종료의 결정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
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특정후견의 결정과 그 종료의 결정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
바.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40조의6제1항,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
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민법」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제959조의10 및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6조제3항·제940조
자.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민법」 제939조(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 및 제944조(같은 법 제94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임의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민법」 제947조의2제2항(같은 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47조의2제4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임의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민법」 제947조의2제5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파.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민법」 제949조의2(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민법」 제848조제1항 및 제950조제2항(같은 법 제948조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거. 피미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48조제2항,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너.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	「민법」 제955조(같은 법 제940조의7, 제948조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

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더. 후견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 허가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러.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정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민법」 제959조의4
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민법」 제959조의8
버.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정	「민법」 제959조의11
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민법」 제959조의15제1항·제3항·제4항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
어.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민법」 제959조의16제2항
저. 임의후견인의 해임	「민법」 제959조의17제2항
처.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민법」 제959조의18제2항
2. 부채자 및 실종에 관한 사건	
가. 부채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나. 실종의 신고와 그 취소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3. 성과 본에 관한 사건	
가. 성과 본의 창설허가	「민법」 제781조제4항
나.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민법」 제781조제5항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민법」 제781조제6항
4.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건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
5. 친생자에 관한 사건	
가. 친생부인의 허가	「민법」 제854조의2
나. 인지의 허가	「민법」 제855조의2
6. 양자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건	
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민법」 제867조
나.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	「민법」 제871조제2항
다.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67조
라.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과양청구에 대한 허가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
마. 친양자 입양의 결정	「민법」 제908조의2
7. 친권에 관한 사건	
가.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
나.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
라.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54조
마.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09조의2제6항
바.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민법」 제921조(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민법」 제927조
자. 새로운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27조의2제2항
차. 미성년후견인 지정 후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31조제2항
8. 상속에 관한 사건	
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나.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
라. 감정인의 선임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
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민법」 제1040조제1항
바. 상속재산의 분리	「민법」 제1045조
사.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47조
아.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53조
자. 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
차. 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
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민법」 제1004조의2제7항
9. 유언에 관한 사건	
가.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	「민법」 제1070조제2항

나.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민법」 제1091조제1항
다. 유언증서의 개봉	「민법」 제1092조
라.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96조
마.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민법」 제1097조제2항
사.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민법」 제1104조제1항
아.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민법」 제1105조
자. 유언집행자의 해임	「민법」 제1106조
차. 부담이 있는 유언의 취소	「민법」 제1111조

[별표 3]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사건 내용	근거 규정
1.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
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민법」 제829조제3항
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	
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3조
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및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민법」 제922조의2
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
3. 부양에 관한 사건	
부양에 관한 처분(친족 사이의 구상청구를 포함한다)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
4. 상속에 관한 사건	

가. 기여분의 결정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
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13조제2항

[별표 4]

후견에 관한 사건의 결정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제83조제1항 관련)

사건 내용	진술을 들어야 할 자
1.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결정 및 특정후견의 결정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
2. 성년후견종료·한정후견종료·특정후견종료의 결정	가.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나.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다. 피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3.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4.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5.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6.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선임	가.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나.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인이 될 자 다.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인이 될 자 라.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인이 될 자
7.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변경	가. 피미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나.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될 자 다. 피한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될 자 라.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이 될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에 대해서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
8.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9.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 피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 나.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다.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자라.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자
10.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가. 미성년후견인, 피미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감독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 나.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 다.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감독인 및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자 라. 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감독인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자
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2.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임의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임의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4.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가.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p>· 특정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p>	<p>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 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인 및 한정후견감독인 다.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감독인 라.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임의후견감독인</p>
<p>15. 미성년후견감독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p>	<p>가. 피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 나.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 다.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p>
<p>16.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정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p>	<p>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p>
<p>17.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의 명령</p>	<p>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p>
<p>18.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정</p>	<p>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p>
<p>19.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p>	<p>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자 및 임의후견인이 될 자</p>
<p>20.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p>	<p>피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 그 변경이 청구된 임의후견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자</p>
<p>21. 임의후견인의 해임</p>	<p>피임의후견인 및 그 해임이 청구된 임의후견인</p>
<p>22.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p>	<p>피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인</p>

부록 9. 보고서에 대한 간담회 영상 큐알코드

1. 아동학대, 무조건 분리가 답일까? 가정법원이 할 수 있는 진짜 보호



2. 이혼 가정폭력 사이 아이는 어디에 있나?



3. 소년 사건 보호를 넘어 회복으로, 가정법원 소년 보호 사건과 회복



통합적 관점에서 본
가정법원 아동 사건 실무의 개선과제
- 사건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발 행 일 2025년 12월
발 행 처 장애인권법센터
연 락 처 062-372-5562
인 쇄 업 체 (주) 두루행복한세상
전화 1644-0728 (代)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